

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 · 세금 · 법률가이드



국세청 · 뉴욕총영사관

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 · 세금 · 법률가이드

2012. 7

국세청 · 뉴욕총영사관



머리말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 뿐 아니라, 미국의 한인들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나 교포들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창업 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미국에서 창업 및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실무 지침서를 지난해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업체 설립, 운영, 세금보고 등 창업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업의 정리 및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그리고 인력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미국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및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재외동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책자 발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신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분들과, 바쁜 가운데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외부전문가분들, 현장감 넘치는 조언을 제공해 주신 한인기업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 7월

국제조세관리관

김 승 희



머리말

미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들은 사업체 설립 및 운영, 세금신고, 상거래 등 미국 법체계를 알지 못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한·미 FTA협정이 2011년 한·미 양국 국회에서 비준되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으로써, 양국간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한·미 FTA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현시점에서 양국의 사업 및 세금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는 “한인들이 미국 법률·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세청과 뉴욕총영사관이 실질적인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2011년 최초로 발간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사업체의 종류 및 설립절차, 사업의 인수, 사업의 정리, 미국의 각종 세제, 상거래, 부동산거래 및 임차, 인력관리,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투자 및 각종 비자 등 한인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이론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실제사례, 실무적인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책자에서는 그동안 신설, 개정된 법규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정리, 부동산거래 및 임차, 인력관리 등 미국 사업에 중요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들을 연구, 집대성하면서 한인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신념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준 국세청, 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들은 물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값진 집필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주신 뉴욕현지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님들, 미국진출 한국기업 및 한인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자에 담긴 여러 내용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로 시작하는 한인들에게 미국사업의 종합지침서로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7월

뉴욕총영사 **김 영복**

본 책자는 미국의 창업·세금·법률에 관한 공개된 법령자료를 기초로 민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뉴욕총영사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유효기간을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
|---------------------|----|
| 제1장 사업조직의 종류 | 03 |
| 개인사업체 | 04 |
| 파트너십 | 06 |
| 주식회사 | 07 |
| LLC | 10 |
| 제2장 개인사업체의 설립 | 15 |
| 개인사업체 설립절차 | 15 |
| 조닝에 관한 사항 | 17 |
| 인허가에 관한 사항 | 19 |
| 제3장 파트너십의 설립 | 25 |
| 파트너십 설립절차 | 25 |
| 파트너십 협약 | 26 |
| 파트너십 지분 | 28 |
| 파트너십 운영 | 29 |
| 파트너십과 세금 | 33 |
| 제4장 주식회사의 설립 | 39 |
| 주식회사의 인적 요건 | 39 |
| 주식회사의 물적 요건 | 41 |
| 주식회사 설립절차 | 46 |
| 제5장 LLC의 설립 | 53 |
| LLC 설립절차 | 54 |
| LLC와 세금 | 56 |
| LLC의 장단점 | 57 |

| | |
|-------------------------------|------------|
| 제6장 사업의 인수 | 61 |
| 사업인수 방식 | 61 |
| 소규모 사업인수 절차 | 65 |
| M&A절차 | 67 |
| 주의사항 | 70 |
| 회계 및 세무처리 | 74 |
| | |
| 제7장 사업의 정리 | 81 |
| 파트너십의 정리 | 81 |
|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정리 | 82 |
| 주식회사의 정리 | 83 |
| 파산 절차 | 84 |
| | |
| 제8장 미국의 세제 | 89 |
| 세금의 종류 | 89 |
| 납세의무자 | 97 |
| 세제의 특성 | 101 |
| | |
| 제9장 개인소득세 | 107 |
| 납세의무자 | 108 |
| 신고유형 및 세율 | 112 |
| 세액계산 | 113 |
| 신고 및 납부 | 122 |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126 |
| | |
| 제10장 법인세 | 133 |
| 납세의무자 | 133 |
| 세액계산 | 135 |
| 신고 및 납부 | 149 |
| 연결납세제도 | 152 |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153 |

| | |
|--------------------------------|------------|
| 제11장 재산 제세 | 159 |
| 양도소득세 | 160 |
| 상속세 | 164 |
| 증여세 | 167 |
| 재산세 | 171 |
| 국적포기세 | 172 |
| 해외 금융계좌 보고 | 175 |
| 해외 금융자산 보고 | 177 |
| | |
| 제12장 원천징수 | 181 |
|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 181 |
|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189 |
|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납부 | 195 |
| | |
| 제13장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 201 |
| 정상가격 | 202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204 |
| 이전가격 조정절차 | 212 |
| 이전가격 관련 쟁점 | 214 |
| 고정사업장 | 216 |
| 지점세 | 222 |
| | |
| 제14장 지방세 | 229 |
| 개인소득세 | 230 |
| 법인세 | 232 |
| 판매세 | 235 |
| 재산세 | 237 |
| 뉴욕시 사례 | 237 |

| | |
|--|------------|
| 제15장 상거래 | 245 |
| 계약 | 246 |
| 상품매매 | 250 |
| 제조물 책임 | 254 |
| 채권추심 | 257 |
| 분쟁 해결 | 259 |
| | |
| 제16장 부동산 매매(구입 및 처분)와 임대 | 265 |
| 서론 | 265 |
| 부동산 매매 계약 | 267 |
| 부동산의 임대 | 270 |
| | |
| 제17장 인력관리 | 275 |
| 미국의 노동법, 고용법과 한국법의 차이 | 275 |
| 인력관리와 관련해 갖추어 놓아야 할 서류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 | 280 |
| | |
| 제18장 미국 비자 | 287 |
| 방문비자 | 288 |
| 전문직 취업비자 | 293 |
| 주재원 비자 | 298 |
| 투자비자 | 303 |
| 영주권 | 310 |
| | |
| 제19장 미국투자 | 321 |
| 투자절차 | 322 |
| 투자형태 | 323 |
| 미국투자 관련 쟁점 | 330 |

제1장 사업조직의 종류



제1장 사업조직의 종류

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형태의 사업조직(Business Entity)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조직의 형태에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주식회사(C Corporation, S 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다.

어떤 사업조직이 최선의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없다. 다만, 사업조직의 형태에 따라 설립절차, 회계처리 방법, 납세의무, 투자자의 법적 책임 등이 각각 다르므로 사업의 성격, 투자 규모, 투자자의 수,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 국내 또는 해외 사업의 범위, 기업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조직을 선택하면 된다. 각 사업조직의 장단점은 제1장 마지막 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은 사업구조가 비교적 단순할 때 이용되는 사업조직으로 그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의 경우)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의 채무가 큰 이슈가 아닌 경우에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소송이 빈번하므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조직보다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업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거나, 투자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C Corporation, S Corporation) 또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 또는 LLC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에 비하여 설립이 약간 더 복잡하고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주주 또는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 이점이 있다.

어느 하나의 사업조직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설립이 용이한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으로 출발을 한 후,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투자자의 세금부담이 많아지거나, 또는 회사의 채무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 주식회사 또는 LLC로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미국에서 사업조직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관할하지 않고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미국 각 주에서는 설립이 용이하면서도 세금 면에서 유리하고 투자자의 책임도 적은 하리브리드(Hybrid) 형태의 사업조직을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개인사업체, 파트너십, 주식회사 대신에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주의 사업조직을 변경할 때는 세금문제를 따져보자.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에서 주식회사 또는 LLC로 사업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사업조직의 회계를 마감하거나, 새로운 사업조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개인이 법인에 건물을 양도한 결과가 되어 Capital Gain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면밀한 세무계획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체

가장 설립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조직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이다. 개인사업체는 개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조직을 세우지 않고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소, 변호사 사무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개인사업체는 별도의 설립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체 소재지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인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제2장의 ‘인가’, ‘인가에 대한 사항’ 참조) 구체적인 인가, 면허 또는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사업체의 단점은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지는데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 소유자 개인의 재산으로 사업상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

식회사 또는 LLC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자(소유자) 개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



사례

개인사업체 소유자의 무한책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A는 거래처 B에 외상매입금 \$50,000이 있는데, 사업의 실패로 이를 갚지 못하였다. A는 개인재산인 상가 1채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 B는 A의 상가를 경매하여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50,000을 받을 수 있다. A의 종업원 C가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운전 실수로 지나가는 행인 D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 D는 운전자 C와 회사 소유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A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피해자 D는 회사재산뿐만 아니라 A의 개인재산을 추적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A가 다른 10명의 주주와 함께 주식회사 형태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면 특별한 경우(예를 들어 A가 개인적으로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재산으로 외상매입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소유자와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Legal Entity)로 간주되므로 개인사업체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회수하든 회수하지 않든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사업체의 수익(Revenue)과 비용(Expense)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하면 되나,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현금주의(Cash Method)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체의 사업경비는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다만, 비용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적인 것과 회사 용도를 구분하여 별도로 은행계좌 및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체는 개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영속성이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파트너십

2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로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십, 주식회사, LLC 등이 가능하다.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 필요하므로 개인사업체와 비교하여 여러 파트너로부터 보다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부 파트너는 현금을 투자하고, 일부 파트너는 부동산, 상표권, 저작권, 기술, 또는 서비스를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다.

파트너십의 종류에는 (a)회사의 채무(Liability)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된 General Partnership, (b)1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된 Limited Partnership, (c)General Partnership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Tort)에 대한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제한하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이 있다.

GP(General Partnership)는 소수의 파트너가 비슷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LP(Limited Partnership)는 펀드와 같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소수의 파트너와 단순히 자본만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파트너가 결합하여 파트너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이 그 활동영역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종종 발생하고 그 배상 의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있어서 어느 파트너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파트너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파트너십 형태이다.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설립과 운영, 파트너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십 협약은 파트너십의 기본 규범이므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 파트너십 설립신고(Filing of Partnership Certificate)를 하고 파트너십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파트너십이 소재하는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인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파트너의 책임(Liability)에 있어서는 GP의 경우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진다.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파트너의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LP의 경우 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을 지나, Limited Partner는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LLP의 경우 각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가 저지르는 불법행위(Tort)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을 지게 되고, 다른 모든 책임은 GP에서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점이 다르다. 즉, 각 파트너는 자기가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홀로 책임을 지게 된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고 일종의 도관회사(Pass Through Entity)이므로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각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소득을 회수하든 회수하지 않든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파트너십에서 손실(Losses)이 났으면, 각 파트너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손실을 본인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수익(Revenue)과 비용(Expense)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하면 된다. 파트너십은 현금주의(Cash Method) 또는 발생주의(Accrual Method) 회계원칙의 선택이 가능하다.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선택하나,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경우, 재고재산(Inventory)이 있는 업종, 매출액이 \$5,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선택할 수 없다.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s)를 포함하여 파트너십의 사업경비는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파트너의 개인적인 용도, 파트너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파트너십의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법인이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격이 부여되지만, 법인은 법으로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법인(法人)으로 부른다. 여러 사람이 자본을 모아 크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과 관련

하여 또는 동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흔히 선택하는 사업조직이 주식회사(C Corporation, S Corporation)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보다 약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조금 더 소요된다. 회사의 이해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규제도 많이 받게 된다.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사 소유자(주주)와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Legal Entity)라는 점이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Risks)이 있다. 종업원이 실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동업자가 회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제품에 하자가 생겨 납품을 못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업을 부진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은 회사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나,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세금문제는 C Corporation이나 S Corporation이나에 따라 다르다. C Corporation의 경우 미국 내국세법(IRC) Subchapter C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며, 법인소득(Taxable Income)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주주에게는 과세가 없다. 다만,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을 주주의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주주가 개인, 파트너십, 주식회사, LLC인 경우 각각 다름)를 납부하여야 한다.

S Corporation은 별도로 존재하는 사업조직은 아니다. 주식회사 중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미국 내국세법(IRC) Subchapter S를 적용받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S Corporation이라 부른다. S Corporation은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십과 같이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법인이 손실(Loss)을 보는 경우 동 법인의 손실을 주주의 다른 소득과 상계시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주주에 대한 법인소득의 배분내역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례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C Corporation)의 세금부담 비교

개인사업체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A(Single Individual을 가정)는 2011년에 부동산임대로 인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 \$75,000이 있고, 무역업으로 인한 과세소득 \$75,000이 있다(공제사항 등은 무시). 이 경우 A는 2011년 전체 과세소득 \$150,000에 대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35,617(2011년 개인소득세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A가 무역업을 개인사업체로 하지 않고 주식회사(C Corporation)로 운영한다면 A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개인소득 \$75,000에 대한 개인소득세 \$14,875을 납부하고,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 \$75,000에 대한 법인세(Corporation Tax) \$13,750을 납부한다. 무역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2011년 전체 세금부담은 \$28,625이며,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경우의 \$35,617과 차이가 있다. 만약 2012년에 A가 법인으로부터 \$20,000 배당을 받을 경우 A는 이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C Corporation)의 경우 배당을 연기함으로써 법인소득이 개인소득에 귀속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으나,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로 한 번 과세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다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수익(Revenue)과 비용(Expense)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하면 된다.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s)를 포함하여 주식회사의 사업경비는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장부기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회계감사 등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보다 엄격한 규제 또는 감시감독을 받는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는 일반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조직으로서 가장 투명하면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조직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른 사업조직에 비해 외부인의 투자유치가 용이하게 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실한 사업조직일수록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LLC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회사조직이다. LLC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의 이점과 주식회사의 이점을 함께 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즉, 주식회사와 같이 구성원(Member)이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과 같이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의 소득으로 배분하여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회사 단계와 구성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LLC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LLC는 다른 사업조직에 비하여 한층 탄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세무목적상 구성원(Member)이 2명 이상인 LLC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과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1명인 LLC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과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LC 소득을 파트너십 또는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지분 또는 자산 소유비율과 다르게 이익(Profit) 또는 손실(Loss)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LLC는 사업조직으로 인정된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주별로 설립요건 및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 LLC가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또 LLC는 소유주간에 Operating Agreement 을 맺어 회사의 운영문제와 소득 분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이 계약이 복잡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참고

사업조직의 장단점

| 구 분 | 장 점 | 단 점 |
|-------------------------------|--|---|
| 개인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운영이 간편, 저렴함 · 사업소득을 투자자의 소득으로 신고함 · 해체가 용이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움 |
| General Partnersh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운영이 간편, 저렴함 · 파트너십 소득을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의견대립의 가능성 상존 |
| Limited Partnersh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Partnership의 장점 · Limited Partner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경영과 투자의 분리 가능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Partner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파트너십 이익배분 방법이 복잡함 · Limited Partner는 경영에 참가할 수 없음 · 설립절차가 복잡함 |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Partnership의 장점 ·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전문직 사업자에게 적합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Partnership의 단점 · 파트너십 이익배분 방법이 복잡함 ·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설립절차가 복잡함 |
| C Corpor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함 · 경영과 소유의 분리 가능함 · 기업공개가 가능함 · 회사운영이 단순하고 투명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설립절차를 밟아야하고, 법적 구속이 상대적으로 많음 · 법인 소득 및 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중과세 |
| S Corpor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Corporation의 장점 ·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주주의 소득으로 배분하여 과세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 수에 제한이 있음 · 다른 법인, 비거주자는 주주가 될 수 없음 |
| Limited Liability Compan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mber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법인 소득을 Member의 소득으로 신고 가능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음 · 주별로 설립 요건 및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음 · 설립절차가 복잡함 |

제2장 개인사업체의 설립



제2장 개인사업체의 설립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한 사람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업조직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체는 별도의 사업조직이라기 보다는 개인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상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체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진다. 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체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재산으로 사업상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사업체는 소유자와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므로 개인사업체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유자 개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회수하든 회수하지 않든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사업체는 간단하므로 장점도 있으나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권장되는 사업형태는 아니다. 또 개인 혼자 하는 사업이어서 외부자본의 투자를 받지 못하므로 큰 규모의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개인사업체 설립절차

개인사업체는 별도의 사업조직이 아니므로 특별한 설립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① 상호 등록(Registering Business Name)
- ② 납세자 등록(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 ③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취득
- ④ 인허가(Certification, License, Permit)

상호 등록(Registering Business Name)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호(Business Name)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람이 'ABC Grocery'라는 상호로 야채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면 'ABC Grocery'라는 상호를 등록해야 한다. 상호는 통상 사업장이 소속된 카운티(Clerk of the County)에 등록한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납세자 등록(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세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번호가 필요하다. 먼저 종업원(Employee)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납세번호로 사용하여 주정부에 납세자 등록을 할 수 있다.

1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 납세자 등록을 위해서는 IRS에서 발행하는 고용주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필요로 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 먼저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그 다음에 IRS로부터 EIN을 부여받아야 한다. EIN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식 SS-4(Application f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EIN 신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전화, 팩스, 우편으로 하며, 미국에 아직 주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즉, 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IRS로부터 EIN을 발급 받게 되면 그 번호를 사용하여 주정부에 납세자 등록을 한다.



참고 고용주 번호(EIN) 신청방법

| 구 분 | 주소 또는 전화번호 | 처리기간 |
|-----|--|------|
| 온라인 | www.irs.gov/businesses에서 가능 단, 외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 | 즉시 |
| 전 화 | 미국에서 : 800-829-4933 외국에서 : 215-516-6999 | 즉시 |
| 팩 스 | 미국에서 : 859-669-5760 외국에서 : 215-516-1040 | 4 일 |
| 우 편 | 미국에서 : EIN Operation, Cincinnati, OH 45999 외국에서 : EIN Operation, Philadelphia, PA 19255 | 5 주 |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정부로부터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또는 Seller's 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납세자 등록을 할 때 동일 서식 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판매세 면허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세 면허를 받게 되면 그 면허장을 사업장에 게시한다.

인허가(Certification, License, Permit)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각종 인가, 면허,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인가, 면허, 허가 등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고용, 노동, 독과점, 산업안전, 건설, 교통, 소방, 건설, 전문직업자격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인가, 면허, 허가 등은 주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카운티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한 인가, 면허, 허가 등의 사항은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뉴욕 주에서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뉴욕 주에서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주정부에서 사업면허(Business Permit)를 받고, 카운티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에서 'Food Service Establishment Permit'을 받아야 한다. 보건국은 Permit을 발급하기 전에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검사한다. 또한 재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Sales Tax 징수 및 납부를 위한 'Certificate of Authority to Collect Sales Tax'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 내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n Premises Liquor License'를 받아야 한다. Liquor License는 일정 구역 내에서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외에 환경 및 고용 관련 면허(Permit)를 받아야 한다.

조닝에 관한 사항

인구가 늘어나면서 무질서한 건축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하여 미국 모든 주는 한국의 도시계획구역 제도와 유사하게 땅이나 건물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는 조닝(Zoning)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닝법에 따르면 땅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획을 나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거

지역'(R) '상업지역'(C) '산업지역'(I) '농업지역'(A) 등이 바로 이러한 조닝법에 의해 생긴 구획이다.

조닝법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자가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조닝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류면허가 제한된 곳에서 술집을 오픈하려고 하면 카운티에서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업장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당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조닝 규정을 카운티 도시계획국(Department of Regional Planning)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참고로 California 주 LA 카운티의 상업지역 조닝 규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 ▷ Zone C-1(Restricted Business) : Zone C-H(Commercial Highway)에 해당하는 업종, 서비스업, 신상품 또는 골동품의 소매판매 등을 영위할 수 있다. 대지 최소면적 규정은 없고, 일반 상업용 건물과 병원은 실내면적 250SqFt당 1대의 주차공간, 일반 사무실은 실내면적 400SqFt당 1대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손님 3명당 1대의 주차공간, 최소 10대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 야외진열(Outdoor Display)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야외보관(Outdoor Storage)은 허용되지 않는다.
- ▷ Zone C-2(Neighborhood Business) : Zone C-1(Restricted Business)에 해당하는 업종, 대여점, 옥외광고, 양복점 등을 영위할 수 있다. 대지 최소면적, 주차장, 야외진열 및 야외보관 등의 요건은 C-1 조닝과 동일하다.
- ▷ Zone C-3(Unlimited Commercial) : Zone C-2(Neighborhood Business)에 해당하는 업종, 중고품 가게 등 거의 모든 업종이 들어설 수 있다. 대지 최소면적 규정은 없고, 주차공간 요건은 C-1 조닝과 동일하다. 자동차 판매상, 음식점 등의 경우 야외진열이 가능하고, 가게 뒤쪽으로는 야외보관이 가능하다.
- ▷ Zone C-H(Commercial Highway) : 공공건물, 금융기관, 공원 또는 체육시설, 일반 사무실, 전문 직종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소매업종은 영위할 수 없다. 대지 최소면적 규정은 없고, 은행, 우체국, 병원은 실내면적 250SqFt당 1대의 주차공간, 일반 사무실은 실내면적 400SqFt당 1대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 야외진열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야외보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 ▷ Zone C-M(Commercial Manufacturing) : Zone C-3(Unlimited Commercial)에 해당하는 업종, 제한적인 품목의 제작과 조립을 영위할 수 있다. 대지 최소면적, 주차장, 야외진열 및 야외보관 등의 요건은 C-3 조닝과 동일하다.
- ▷ Zone C-R(Commercial Recreation) : 놀이공원, 캠핑장, 테니스장, 골프장, 농작물 재배 등을 영위할 수 있다. 대지 최소면적은 5Acres이며, 주차장은 업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있다.
- ▷ Zone CPD(Commercial Planned Development) : 일정한 구역에 계획적으로 상가 등을 조성할 때 Zone CPD를 지정한다. 구역을 지정할 때 건축물, 진출입로, 인도, 조경, 간판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한다. 대지면적은 5,000SqFt이며, 주차장 요건은 Zone C-1과 동일하다.

인허가에 관한 사항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 규모, 종업원 수 등에 각종 인증, 면허,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식품위생, 환경, 고용, 노동, 독과점, 산업안전, 건설, 교통, 소방, 전문직업자격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주요 인허가는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라이선스다. 미국은 모든 영업장마다 카운티(County)에서 발급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업주는 사업장이 속한 카운티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카운티에서는 사업장 주소를 보고 그 지역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닝부터 확인한다. 예를 들어 주류면허가 제한된 곳에서 술집을 오픈하려고 하면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한다. 카운티는 라이선스 신청인의 비즈니스가 조닝에 맞아도 영업장 내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발급을 제한하기도 한다.

소방 퍼밋(Fire Department Permit)

카운티에 따라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는 소방국에서 발행하는

퍼밋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 소매상점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지만 불을 취급하는 업소는 발급받아야 한다. 소방 퍼밋은 모든 카운티가 요구하는 면허는 아니다. 소방 퍼밋이 필요 없는 카운티에서는 영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소방 점검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업체가 속한 카운티에서 소방 퍼밋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기 및 수질 오염 컨트롤 퍼밋(Air and Water Pollution Control Permit)

물질을 태워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하수구로 폐품을 처리하는 업종은 대기 및 수질 오염 컨트롤 퍼밋을 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컬정부에서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업주들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이러한 퍼밋을 필요로 하는지 환경청(EPA)에 문의해 봐야 한다.

사인 퍼밋(Sign Permit)

미국은 카운티에 따라 업소의 사인(간판)을 규제한다. 카운티에서는 사업체 간판의 크기나 밝기, 위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간판 설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철거하는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카운티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가게가 입점한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헬스 퍼밋(Health Department Permit)

식당이나 음식을 파는 도매상과 소매상들은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헬스 퍼밋을 갖춰야 한다. 카운티 보건국은 퍼밋 신청을 접수받으면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업소에 나와 업소의 위생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위생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가게를 열 수 없다.

연방 라이선스(Federal License)

대부분의 경우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 그러나 육류 가공업체나 라디오·TV방송사, 투자컨설팅 회사, 금융기관 등은 이 면

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라이선스 발급을 관리한다.



주의

사업을 개업하기 전에 인허가 사항을 미리 챙기자.

갑(甲)은 전세계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풍을 감지하고 뉴욕시에서 영어학원을 개업하기로 하였다. 다른 학원들의 영업형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을 강사로 고용하여 소그룹으로 영어회화 강좌를 여는 것을 파악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학생신분을 주는 I-20을 발급할 수 있는 학원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갑은 적당한 건물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갑은 학원을 운영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학원시설은 장애인 출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소방안전을 위하여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이 임차한 장소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갑은 학원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학원인가 없이는 I-20을 발급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갑이 운영하는 학원은 불법학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제3장 파트너십의 설립



제3장 파트너십의 설립

파트너십(Partnership)은 2명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Partner)가 공동으로 사업을 소유하면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다. 소위 2인 이상의 동업이라고 보면 된다. 개인이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다른 파트너십, 주식회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신탁회사(Trust) 등도 파트너십의 파트너로 참가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종류에는 (a)회사의 채무(Liability)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된 General Partnership, (b)1명 이상의 General Partner 및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된 Limited Partnership, (c)General Partnership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Tort)에 대한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제한하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이 있다.

파트너십 설립절차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에 Certificate of Partnership(또는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Certificate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제출하여 설립신고를 마쳐야 한다. 파트너십 설립신고 시 신고하는 사항은 파트너십의 명칭과 주소, 파트너십의 설립목적, 파트너의 성명과 주소 등이다.

일반적인 파트너십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아래 ③, ④, 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개인회사의 설립’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 ① 파트너십 명칭 결정
- ② 파트너십 설립신고(Filing of Partnership Certificate)
- ③ 납세자 등록(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 ④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취득
- ⑤ 인허가(Certification, License, Permit) 취득

General Partnership에서 각 General Partner는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즉,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파트너십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파트너의 재산으로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Limited Partnership에서 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을 지나,

Limited Partner는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에서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가 저지르는 불법행위(Tort)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을 지고, 다른 모든 책임은 General Partnership에서와 같이 무한책임을 진다.



사례

General Partner와 Limited Partner의 책임한계

갑은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펀드매니저이다. 갑은 한국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펀드'를 만들고자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을과 병은 자산가로서 갑의 능력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 K펀드는 Limited Partnership 형태를 채택하여 갑이 General Partner가 되고, 을과 병은 Limited Partner가 되었다. K펀드는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0,000,00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K펀드의 모든 자산이 \$10,000,000에 미치지 않아 갑은 개인재산을 팔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했고, 을과 병은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파트너가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트너의 신분(개인/법인)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십인 경우 그 파트너십에서 다시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십 협약

파트너십은 대개 가까운 친족, 친구 또는 지인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십 초기에는 대체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순조롭게 출발하나, 사업이 무르익다 보면 파트너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물론 파트너십 협약이 없다 하더라도 파트너십의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은 없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파트너십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Uniform Partnership Act(UPA) 또는 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RUPA)를 채택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십 협약 및 UPA(또는 RUPA)를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파트너십 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파트너십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파트너 사이의 합의사항을 규정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파트너십의 명칭, 존속기간, 설립목적, 파트너의 투자지분, 이익과 손실의 배분방법, 파트너에 대한 보상, 파트너십 지분의 회수, 파트너의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 방법, 파트너의 신규 가입 및 탈퇴, 파트너십 지분의 이전, 파트너십의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이다. 파트너십 협약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UPA(또는 RUPA)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주의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을 철저하게 작성하자!**

우리는 주위에서 “형제나 친구 사이는 동업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는다. 동업(파트너십)을 잘못 하면 형제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한다.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서면으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담아 파트너십 협약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파트너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 주요 파트너십 재산의 구입과 처분 문제, 파트너십의 수입·비용·소득의 배분 문제, 신규 파트너의 참여 문제, 기존 파트너의 탈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지분조정 문제, 파트너십을 해체할 경우 잔여 재산 및 채무의 분배 문제, 그리고 중요한 상황변동이 있을 때 파트너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파트너십 지분

파트너십에 있어서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에 상응하는 파트너십 지분(Partnership Interest)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십 지분은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Profits) 또는 손실(Losses)을 파트너 사이에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

파트너십 지분은 각 파트너가 꼭 동일할 필요는 없고, 또한 매년 고정될 필요도 없다. 파트너별 투자액, 파트너십 운영에서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파트너 사이의 합의에 따라 파트너십 지분을 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첫해에 각각 지분 50%로 파트너십을 설립하였는데, 그 중 한 파트너가 파트너십 운영과정에서 기여도가 많아 다음 해부터 60% 지분을 가지기로 파트너십 지분을 조정할 수도 있다.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는 현금, 부동산, 기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 기술, 노동력, 서비스 등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한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설립하는 경우(각각 50% 지분 취득)에 있어서 한 파트너는 창업자금 \$200,000과 매년 임차료 \$30,000을 부담하기로 하고, 다른 파트너는 요리기술이 있어서 주방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할 수도 있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경우 각 파트너는 투자하는 자산 또는 서비스 등의 가치에 비례하는 파트너십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느 파트너가 무엇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파트너십 지분을 취득할 것인지의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되고, 동 합의내용은 파트너십 협약에 규정하면 된다.

파트너십 이익의 분배

파트너십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 사이의 협약에 의하여 각 파트너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파트너에게 분배할 수 있다. 파트너십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파트너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업확장, 설비 투자,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에 유보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파트너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십 이익

을 분배하기 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파트너는 나중에 파트너십 이익을 분배할 때 미리 인출한 몫에 상응하는 만큼 적게 분배를 받게 된다.

파트너십 지분의 이전

파트너십을 운영하다 보면 파트너의 일부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파트너십에서 추방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파트너십을 떠나는 파트너의 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문제가 대두된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a)파트너십을 해체하고 파트너 사이에서 파트너십 지분을 분할하는 방법, (b)기존 파트너가 떠나는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c)외부의 제3자가 떠나는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파트너십 협약에서 정하면 된다. 떠나는 파트너는 본인의 파트너십 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파트너십에서는 떠나는 파트너가 외부의 제3자에게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기존 파트너가 적절한 가격으로 동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트너십 운영

파트너십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a)각 파트너의 파트너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문제, (b)파트너 중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파트너십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c)파트너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문제 등이다.

파트너의 권한과 책임

(1)General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파트너는 동일한 권한으로 파트너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파트너십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으며, 파트너십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 또는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한 파트너의 지분이 더 크다고 의사결정권이 비례하여 커지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투표권이 주식수에 비례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파트너십의 이름으로 사업행위를 할 수 있다. 파트너십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또는 거래행위를 일상적인 것과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여 일상적인 것은 각 파트너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파트너의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하도록 파트너십 협약에서 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무엇이 일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파트너십 협약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각 파트너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파트너별로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 또는 사업상의 거래행위에 대한 권한을 각각 다르게 파트너십 협약에서 정할 수도 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운영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파트너십 장부 및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어느 한 파트너가 한 의사결정 또는 사업상의 행위는 외부관계에 있어서 파트너십과 다른 파트너에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어느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사업상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거부할 수 없다.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 또는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파트너십 재산으로 부족하면 파트너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어느 한 파트너가 권한을 위배하여 다른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른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파트너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 사업형태이다.



사례

파트너십 협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파트너의 책임

갑, 을, 병은 공동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파트너십의 개념에 익숙지 않은 이들은 별다른 서류작업을 하지 않고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경영에는 모두가 참여하였으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갑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어느 날 갑은 식당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큰 냉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판매회사와 접촉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을 안 을과 병은 냉장시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여 구매에 반대하였다. 냉장시설 판매회사는 음식점 이름으로 발행한 인보이스가 결제되지 않자 갑, 을,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결과 갑, 을, 병은 General Partnership의 Partner로 인정을 받아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2)Limited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에서 파트너십 운영은 General Partner만이 담당할 수 있으며, Limited Partner는 경영에 참가할 수 없다.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파트너십의 이익은 투자금의 비율대로 나누어 갖게 된다. 따라서 헤지펀드(Hedge Fund)와 같이 자본금을 모아 투자를 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익금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Limited Partnership을 많이 활용한다.

파트너십의 채무 또는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을 지나, Limited Partner는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에서 상호 또는 이름을 정함에 있어서 Limited Partner의 이름을 파트너십 이름에 넣을 수 없다. 이는 제3자가 Limited Partner를 General Partner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Limited Partner가 외부의 제3자에게 공공연히 파트너십을 표방하거나 파트너십 이름으로 사업행위를 한다면 유한책임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General Partner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질 수도 있다.

(3)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에서 파트너의 권한과 책임은 General Partnership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에서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가 저지르는 불법행위(Tort)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을 지게 되고, 다른 모든 책임은 General Partnership에서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지는 점이 다르다. 즉, 파트너는 자기가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홀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Partnership을 설립할 때 많이 활용한다. 그 이유는 전문직 사업자들이 분야별 전문지식·기술을 결합하여 Partnership 전체의 역량을 높이면서도, 그 활동영역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의무가 종종 발생하고 배상의무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어느 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파트너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너의 다른 사업과의 관계

파트너 중 일부가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동 파트너의 사업이 파트너십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또는 사업 지역 등을 제한하는 것을 파트너십 협약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가 행한 사업상의 행위가 파트너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파트너십을 위한 것인지 혼동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파트너가 공공연히 파트너십을 표방하거나 파트너십 이름으로 사업행위를 했다면 파트너십에 효력을 미친다.

파트너십 분쟁의 해결

파트너십을 운영하다 보면 파트너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분쟁으로 인하여 파트너십이 깨지거나, 파트너끼리 극단적인 소송을 벌여 서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파트너십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견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파트너십 협약에서 반드시 정해 놓아야 한다.



사례

파트너십 협약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의 어려움

갑과 을은 파트너십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갑은 자본을 대고 을은 음식점 운영 경험이 있으므로 경영을 맡기로 하였다. 파트너십 지분은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갑과 을은 파트너십 협약을 미

처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음식점의 경영은 잘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갑은 을이 음식점 경영을 독단적으로 한다고 여겨 경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였고, 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음식점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갑과 을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갈라서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가 없었다. 갑은 음식점을 팔아 그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기를 원했으나 을은 음식점을 혼자 떠맡아 계속 경영하기를 원했다. 갑과 을은 음식점의 가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갑과 을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법정에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

파트너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어떤 경우는(경미한 사항) 파트너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어떤 경우는(중요한 사항) 파트너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그 지분에 상응하는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십 내부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파트너 사이에 감정이 상해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가기에 앞서 반드시 조정이나 중재를 거치도록 파트너십 협약에서 규정하기도 한다.

파트너십과 세금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은 없으며,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하여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은 IRS에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파트너십(Domestic Partnership)과 \$20,000 초과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이 있는 외국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은 매년 4월 15일 까지 Form 1065(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에 따라 IRS에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를 하여야 한다. 보고하는 정보는 파트너십의 소득 내역, 공제 항목(Deductions), 매출원가 내역(Cost of Goods Sold),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파트너별 지분 내역(Partner's Distributive Share Items), 파트너별 투자 및 지분의 회수내역 등이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Form 1065의 Schedule K-1 서식에 따라 파트너별로 소득 및 공제 항목, 세액공제 및 감면, 파트너십 지분의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작성하여 각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IRS에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파트너에게 배분함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파트너십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트너십 지분과 다르게 귀속되는 항목은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다.

파트너의 납세의무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각 파트너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트너의 신분 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십인 경우 그 파트너십에서 다시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의 사업소득(Business Income) 항목(Income 항

목 중 12번)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Schedule C에 기재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가 이를 회수하든 회수하지 않든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한다. 파트너십에서 현실적으로 파트너가 지분을 회수하는 것은 파트너의 소득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자기의 몫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사례 파트너십 이익의 회수 및 세금신고

A와 B는 파트너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였다. A는 현금 \$30,000 투자 및 주당 36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B는 현금 \$20,000 투자 및 주당 2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 A의 파트너십 지분은 60%, B의 파트너십 지분은 40%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에 파트너십에서 \$100,000의 이익이 발생하여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A에게 \$60,000, B에게 \$40,000을 분배하였다.

2011년에 파트너십에서 \$150,000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50,000은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쓰기로 하고, \$100,000만 파트너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B는 개인 사정으로 자금이 급하여 파트너십에서 \$20,000을 인출한 적이 있다. 2011년에 A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60,000($\$100,000 \times 60\%$), B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20,000($\$100,000 \times 40\% - \$20,000$)이다.

세금신고에 있어서는 파트너십 소득을 각자의 파트너십 지분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A는 2010년에 \$60,000($\$100,000 \times 60\%$), 2011년에 \$90,000($\$150,000 \times 60\%$)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B는 2010년에 \$40,000($\$100,000 \times 40\%$), 2011년에 \$60,000($\$150,000 \times 40\%$)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소득을 회수하는 것은 파트너의 개인소득과는 관계가 없고,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자기의 몫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은 없다.

파트너십 지분의 매각에 대한 세금

파트너십 지분은 투자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파트너십 지분을 이전한 파트너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Basis)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Capital Gain 또는 Capital Loss를 인식하게 되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파트너십 지분을 이전한 경우 파트너십은 Form 8303(Report of a Sale or Exchange of Certain Partnership Interests)에 따라 파트너십 지분의 이전 내용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회사의 설립

미국 회사법은 단일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는 주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Corporation 또는 Business에서 ‘Starting a Business’를 선택), 주정부 내의 담당부서(Department of Treasury 또는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문의하면 된다.

어느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뉴저지 주에서 새로 법인 설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뉴저지 주정부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허가 신청(Filing of Authorization)’을 하면 된다. 미국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주정부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미국 내국세법 규정에 따라 S Corporation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법인 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인적 요건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人的) 요건은 (a)설립인(Incorporators), (b)주주(Shareholders), (c)이사(Directors), (d)임원(Officers), (e)종업원(Employee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에 있어서 위 각자의 역할은 다르나, 어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겸할 수도 있다.

설립인(Incorporators)

설립인은 법인 설립업무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법인에 투자할 사람과 자본금을 모으고,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및 사규(Corporate Bylaws)의 작성, 법인 설립신고,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구성 등의 업무를 한다. 설립인은 여러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이 대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주주(Shareholders)

주주는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주주는 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는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Dividend)의 형태로 소득을 회수한다. 주주는 법인의 활동에 일상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며, 매년 주주총회를 통하여 법인을 통제한다. 주주총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사 선임, 정관 및 사규의 개정, 중요 거래에 대한 승인, 법인의 해산 등을 결정한다.

이사(Directors)

이사는 법인을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법인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개최하여 주식 발행, 자금 조달, 중요 자산의 구입 및 매각, 경영진 선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사의 숫자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명 이상이면 족하나, 일부 주는 최소한 3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사의 수는 법인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또는 사규(Corporate Bylaws)에서 정한다.

임원(Officers)

임원은 법인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원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종업원을 지휘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법인의 임원(Officers)으로 대표자(President), 행정책임자(Secretary), 회계책임자(Treasurer)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표자(President)는 대내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며, 행정책임자(Secretary)는 법인의 장부 및 기록을 담당하며, 회계책임자(Treasurer)는 법인의 재정을 담당한다.

종업원(Employees)

종업원은 법인에 상시 고용되어 임금(Wages) 또는 보수(Compensation)를 받고 법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다. 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의 역할을 겸임할 수도 있다.



참고

주주에 대한 배당(Dividend)과 종업원에 대한 보수(Compensation)의 차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 법인에서 소득을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통상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방법과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얼마를 보수로 하고, 얼마를 배당으로 해야 할까?

임직원에 대한 보수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은 받는 자의 개인소득에 합산되는 점은 동일하다.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하므로 법인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나, 주주에 대한 배당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남는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배당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부분을 회수하는 것은 자본금의 회수이므로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물적 요건**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a)법인명(Name), (b)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c)사규(Corporate Bylaws), (d)자본금(Capital), (e)법인 기록부(Records Book)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물적 요소는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또는 설립 후에 갖출 수도 있다.

법인명(Name)

주식회사는 주주 또는 소유자와는 별개의 인격체(Legal Entity)이므로 반드시 이름 또는 명칭이 있어야 한다. 법인명에는 일반적으로 Corporation, Incorporated, Company, Limited 또는 그 약자 Corp., Inc., Co., Ltd.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법인명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 단어는 법인 명칭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예를 들어 United States) 잠정적으로 법인명을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정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저지 주의 예를 들면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또는 전화로 특정 법인명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법인명의

경우 법인 설립신고(Filing of Formation) 전이라도 예약을 할 수 있다. 법인명을 예약하거나 정식으로 법인설립 신고를 한 경우 동일한 법인명을 다른 법인이 사용할 수 없다. 뉴저지 주 밖에서 설립된 법인은 본래의 소재지에서의 법인명으로 뉴저지 주에 사업허가 신청(Filing of Authorization)을 하여야 하며, 뉴저지 주에 동일한 법인명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명(Secondary Name or 'Doing Business as' Name)을 정하여 사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부르기 쉽고 고객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별도의 법인명(Alternative Name) 또는 상호명(Trade Name)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법인명이 'AB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인 법인이 상호명을 'ABC Semiconductor'로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정부에 법인명 또는 상호명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미국 일부 주는 별도의 법인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의 **법인명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다른 법인의 이름 또는 상표권(Trademark, Service Mark)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인명을 정할 때는 중복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사전에 주정부에 법인명 사용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연방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다른 법인이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의 아니게 다른 법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등록된 법인명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법인명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 대표자 등)과 거래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법인의 제품, 거래 또는 채무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이 소송에서 법인은 명목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경우 평소에 정식 법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패소할 수도 있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미국에서 말하는 정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법인설립 등록을 할 때 포함되는 내용으로 법인 기본사항(Articles of Incorporation 또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사규(Corporate Bylaws)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의미의 정관은 법인설립 등록을 할 때 신고하여야 하며, 두 번째 의미의 정관은 별도로 신고 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법인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는 법인의 명칭(Name), 법인의 설립목적, 법인의 소재지, 법인설립 등록을 하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설립인(Incorporators)의 성명과 주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 법인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Legal Entity)이므로 마치 사람이 출생신고 내지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을 일반인에게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 모든 주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규(Corporate Bylaws)

사규(Corporate Bylaws)에는 법인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사규는 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주주·이사·임원의 선임과 이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사규는 별도로 행정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법인 내부적으로 비치 보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a)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Meeting of Shareholders)의 개최시기, 소집방법, 개최장소, 의결할 사항, 의결 정족 수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b)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구성, 이사의 선임방법, 이사의 권한, 이들에 대한 보상, 이사회의 의결방법 등 이사에 관한 사항, (c)임원(Officers)의 종류, 선임방법, 권한 등 임원에 관한 사항, (d)법인 정관의 변경, 사규의 개정, 주요 계약의 체결, 자산의 구입,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e)법인의 회계연도, 법인에 대한 감사,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이다.

사규의 제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주에 따라 다른데, 법인의 설립인(Incorporators) 또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제정한다. 사규를 제정할 경우 명문(창립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으로 그 제정경위, 내용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자본금(Capital)

자본금(Capital)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자, 즉 주주가 법인에 출자하는 재원으로 법인에 대한 주주의 지분(Shareholder's Equity)을 나타낸다. 법인에 대한 출자는 현금, 부동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서비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출자에 대한 증표로 주주는 법인으로부터 주권(Stock Certificate)을 받게 된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다.

법인설립 신고를 마친 후에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동 이사회에서 자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주권 발행을 승인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설립 신고를 할 때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최초에는 설립인(Incorporators)이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인설립 신고 이후에 이사회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자본금이 '0'인 법인을 인정하고 있고,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No-Par-Value Stock)의 발행도 인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과 투자자 간에 '주식청약서(Stock Subscription Agreement)'를 작성하게 되는데, 법인 설립단계에서는 설립인(Incorporator)과 투자자가 '설립 전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이 납입되면 법인은 주주에게 주권(Stock Certificate)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통상 비상장법인의 주권의 이면에는 동 주식이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고, 따라서 동 주식은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의

법인에 부동산 등 현물을 출자할 때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느 주주(출자자)에게 상가(부동산)가 있었는데, (a)상가를 양도한 후 현금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와 (b)상가를 직접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a)의 경우 상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있다. 그렇다면 (b)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상가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이전되므로 상가를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내국세법(IRC) §351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본인이 지배하는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보(이연)된다. 부동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자산으로 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는 위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a)자본금 출자에 의한 방법과 (b)금전대출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주로서 배당(Dividend)을 받게 되며, 금전대출을 하는 경우 채권자로서 이자(Interest)를 받게 된다. 배당이나 이자 모두 투자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법인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되는 반면에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익처분에 해당되어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 단계와 주주(투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된다.

또한 주주에 대한 배당은 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여 내부 유보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자본금의 경우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다. 반면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손익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고 법인이 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때 금전대출을 하는 것이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자본금이 '0'인 법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 때 얼마를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고, 얼마를 금전대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의

법인이 자본금은 없이 차입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한계가 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이 자본금 대신 차입금을 과도하게 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자본금에 비하여 차입금이 과도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자는 비용공제를 부인하거나 또는 유보(이월)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차입금이 많으면 외부투자자가 투자를 꺼려하게 되므로 자본조달에 방해가 된다.

법인 기록부(Records Book)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법인 기록부(Records Book) 또는 법인 영구철(Corporate Kit)에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사규(Corporate Bylaws), 이사회 회의록(Minute of Meetings), 주권(Stock Certificate), 법인 인감(Corporate Seal) 등이 있다. 이러한 서류의 양식은 정형화되어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 또는 문방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미국에서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주에 따라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아래의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선후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 ① 법인명 결정
- ② 설립인(Incorporators) 결정
- ③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작성
- ④ 법인 설립신고(Filing of Incorporation)
- ⑤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구성 및 이사회 개최
- ⑥ 사규(Corporate Bylaws) 채택

- ⑦ 법인 기록부(Records Book) 구비
- ⑧ 납세자 등록(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 ⑨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취득
- ⑩ 은행계좌 개설
- ⑪ 주금 납입 및 주식 발행
- ⑫ 인허가(Certification, License, Permit)

법인 설립신고(Filing of Incorporation)

법인은 투자자와는 별개의 인격체(Legal Entity)이므로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시하여 이해 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의 모든 주는 법인의 기본사항이 기재된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만들어 주정부 사무국에 법인 설립신고(법인 등록)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 설립신고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는 법인의 법적 형식(Legal Structure of the Entity), 법인의 명칭(Name), 법인의 설립목적, 법인의 소재지, 법인 설립신고를 하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설립인(Incorporators)의 성명과 주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 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이다.

통상 법인 설립신고를 할 때는 설립신고 대표자(Registered Agent)의 성명과 연락처를 서식에 기재하고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주정부는 법인 설립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되면 설립신고 대표자에게 법인 등록필증(Confirmation of Filing)을 발송해 준다. 법인 등록필증은 법인 설립신고를 했다는 증빙이며, 재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 등록필증을 발송할 때 주정부는 법인설립 및 사업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서식 및 안내서(Forms and Instructions)를 함께 보내준다.

뉴저지 주의 예를 들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은 위와 같이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만들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른 주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본래의 소재지에서의 법인명으로 뉴저지 주에 사업허가 신청(Filing of Authorization)을 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신고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법인 설립신고

를 하려면 소정의 수수료(Fee)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이 급한 경우 급행료를 내면 신속히 처리해 준다. 법인 설립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되면 설립신고 대표자에게 법인 등록필증(Confirmation of Filing), 그리고 납세번호 등록·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및 안내서(Forms and Instructions)를 발송하여 준다.

납세자 등록(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납세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번호가 필요하다. 법인은 별도의 납세번호를 필요로 하며, 연방 국세청(IRS)에서 발행하는 고용주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로 사용한다. EIN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식 SS-4(Application f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IRS로부터 EIN을 발급 받게 되면 그 번호를 사용하여 주정부에 납세자 등록을 한다. 미국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미 IRS에서 EIN을 발급 받은 법인은 당해 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EIN을 사용하여 당해 주정부에 납세자 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서 당해 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IRS에 EIN을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동 EIN을 사용하여 주정부에 납세자 등록을 하면 된다. EIN은 연방과 주정부의 세금업무, 은행거래, 행정기관 업무 등에 있어서 법인의 인식번호로 사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정부로부터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납세자 등록을 할 때 동일 서식 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판매세 면허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 주의 예를 들면, 주정부에 법인 설립신고(Filing of Incorporation)를 하게 되면 주정부에서 각종 서식 및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그 중에서 서식 NJ-REG를 사용하여 납세자 등록(사업자 등록, Business Registration)을 한다. 서식 NJ-REG에 기재하는 정보는 고용주 번호(EIN), 법인명, 상호, 주소, 사업개시일(Beginning Date for Business), 업종, 법인설립일(Date of Incorporation), 사업연도, 주주의 이름·주소·지분 고용에 관한 사항, Sales

Tax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정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뉴저지 주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이 별도로 판매세 면허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서식 NJ-REG에 Sales Tax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은행계좌 개설(Setting Up a Corporate Bank Account)

법인은 출자자 또는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구분경리가 되어야 한다.

은행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 설립신고 접수증(Filing Receipt), 법인 인감(Corporate Seal), 납세번호(EIN), 계좌개설권자의 신분증(Photo ID),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자금을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은행계좌를 만든 후에는 출자금, 대출금 등 법인 설립자금, 법인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자금 등의 입출금은 동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 있어서 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된다.

인허가(Certification, License, Permit)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각종 인가, 면허,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인가, 면허, 허가 등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고용, 노동, 독과점, 산업안전, 건설, 교통, 소방, 건설, 전문직업자격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인가, 면허, 허가 등은 주로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카운티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인가, 면허,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 Corporation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C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C Corporation이라 불린다. C Corporation은 법인의 과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한번 과세를 받고, 과세 후 남은 이익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면 주주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의 소득으로 다시 과세를 받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파트너십(Partnership)과 같이 법인의 소득(Profits) 또는 손실(Losses)에 대하여 주주의 소득 또는 손실로 귀속시켜 한번만 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S Corporation이다.

S Corporation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S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S Corporation이라 불린다. S Corporation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IRS 서식 2553(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작성하여 모든 주주의 서명을 받아 IRS에 신청하면 된다.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연방 세법에 있어서 S Corporation을 채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정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S Corpor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미국 내의 법인(Domestic Corporation)이어야 함
- ② 주주가 100인 이내이어야 함
- ③ 주주가 개인, Estate, 비영리기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국 내의 Trust이어야 함.
- ④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주주가 없어야 함
- ⑤ 한가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함
- ⑥ 은행, 보험, 국제거래업종 등 법이 정하는 일정한 업종은 제외됨
- ⑦ 사업연도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예 : Calendar Year 등)되어야 함
- ⑧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위의 요건을 검토하여 보면 한국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하여 미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S Corporation 자격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 Corporation의 이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LLC의 설립



제5장 LLC의 설립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비교적 새로운 회사조직 형태이다. LLC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의 이점과 주식회사의 이점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즉,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Member)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과 같이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의 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회사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LLC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LLC에 대한 출자자(Member)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개인, 법인, 다른 LLC, 외국법인 등도 LLC 출자자가 될 수 있다. 출자자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 투자하여 LLC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일부 업종, 예를 들어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LLC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LLC는 사업조직으로 인정된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주별로 설립요건 및 법률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 LLC가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기업공개불가능,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참고 한국과 미국에서 회사조직 선택의 차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전통적인 사업조직, 즉 개인사업체 또는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개인소득세 세율이 최고 38%, 법인세 세율이 최고 22%이므로 일단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이 세율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법인에게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므로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어느 정도 사업이 커지면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절세측면에서 주식회사 보다는 하이브리드(Hybrid) 형태의 사업조직, 즉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소득세 세율이 최고 35%, 법인세 세율이 최고 39%이므로 세율에서 주식회사가 불리하고,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많으므로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LLC의 경우 주식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세금 및 경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많이 활용된다.

LLC 설립절차

LLC 설립절차는 파트너십 설립절차 또는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대체로 유사하다.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서 발행, 출자자 총회 개최, 법인 기록부 유지 등에 있어서 주식회사보다 규제를 덜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미국에서 LLC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주에 따라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아래의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전후 관계도 달라 질 수 있다. 구체적인 LLC 설립절차는 파트너십 설립절차 또는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 ① LLC 명칭 결정
- ② 설립신고(Filing of Articles of Organization)
- ③ LLC 운영협약(Operating Agreement) 작성
- ④ 납세자 등록(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 ⑤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취득
- ⑥ 인허가(Certification, License, Permit)

LLC 명칭 결정

LLC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칭(Business Name)이 필요하다. LLC 명칭은 해당 주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회사 명칭에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Company, LLC, LC 등 법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LLC 명칭은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에 포함되어야 하며, 설립신고를 할 때 법인이 소재하는 주정부에 명칭을 등록한다. 주정부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LLC 명칭을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립신고(Filing of Articles of Organization)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 모든 주에서는

LLC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 설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LLC 정관에 등재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LLC 명칭(Name), 설립목적, 경영방법, 소재지, 설립신고를 하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존속기간 등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정한 양식(Form)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LLC 설립신고가 된다. 구체적인 양식은 해당 주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LLC 운영협약(Operating Agreement)

LLC 운영협약은 출자자 사이의 협약으로서,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 또는 법인 사규(Corporate Bylaws)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출자자의 권한과 의무, 출자 방법, 이익의 분배방법, 의사결정 방법 등 LLC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한다. LLC 운영협약은 출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LLC 운영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출자에 관한 사항, 출자자 지분에 관한 사항, 경영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이익 또는 손실의 배분방법, 세금 신고방법, 출자자 지분의 이전에 관한 사항, 새로운 출자자 전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출자자의 권한과 의무 등이다.

LLC 운영협약은 상당히 복잡한 계약으로서 작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회사법이라는 강행규범이 있어 회사운영의 많은 요소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LLC의 경우 강행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합의로 창조적인 운영이 가능함과 동시에 일일이 합의를 하여 계약에 써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 등록(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LLC는 출자자와는 별개의 인격체(Legal Entity)이므로 납세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납세번호가 필요하다. LLC는 납세번호로 연방 국세청(IRS)에서 발행하는 고용주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한다. IRS로부터 EIN을 발급 받게 되면 그 번호를 사용하여 주정부에 납세자 등록을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정부로부터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또는 Seller's 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납세자 등록을 할 때 동일 서식 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판매세 면허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인허가(Certification, License, Permit)

LLC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각종 인가, 면허,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인가, 면허, 허가 등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고용, 노동, 독과점, 산업안전, 건설, 교통, 소방, 건설, 전문직업자격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인증, 면허, 허가 등은 주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 또는 카운티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한 인가, 면허, 허가 등의 사항은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LC와 세금

출자자(Member)가 2명 이상인 LLC의 경우 세무목적상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과세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1명인 LLC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Disregarded Entity(Disregarded as an Entity Separate from Its Owner) 과세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Disregarded Entity는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종업원에 대한 과세 또는 소비세(Excise Tax)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모든 LLC는 첫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할 때 Form 8832(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를 사용하여 과세방법을 IRS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이 2명 이상인 LLC의 경우 파트너십으로, 구성원이 1명인 LLC의 경우 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된다.

파트너십 또는 Disregarded Entity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LLC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LLC의 소득은 구성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구성원의 소득신고 시 포함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C Corporation과 동일하게 LLC 자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며, LLC가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LLC의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함에 있어서 LLC는 파트너십보다 더 탄력성(Flexibility)이 있다. 즉, LLC의 이익(Profit) 또는 손실(Loss)을 투자자 지분(Membership Interest) 또는 자산 소유비율(Percentage of the Business Assets)과 다르게 투자자에게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LLC는 매년 LLC 소득의 내용과 그 배분내역을 Form 1065(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에 의하여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LLC는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택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회사 과세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출자자들의 개인소득이 많고, LLC의 소득을 기업에 유보하여 사업확장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매년 납부하는 것보다(2011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5%) 주식회사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예를 들어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나중에 LLC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하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LLC의 장단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LC의 장점은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Member)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주식회사보다 규제가 적어 경영의 유연성을 누리며, LLC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의 소득으로 배분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회사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사업활동이 빈번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투자자가 쉽게 노출이 되나, LLC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투자자가 노출되지 않고 LLC 뒤에 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인 이름으로 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노출되나, LLC 이름으로 하면 소유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도 등기를 이전할 필요가 없이 LLC 지분만 이전하면 되므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

할 때도 LLC가 편리할 수 있다.

LLC는 운영방식도 매우 유동적이며 편리하다. LLC의 운영은 파트너십처럼 출자자(Member)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배인(Manager)을 선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도 있으며, 주식회사처럼 아예 이사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권(Membership Interest)도 파트너십 지분처럼 운용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운용할 수도 있다.

LLC의 단점은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아니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회사규모가 크거나 출자자 수가 많은 경우 이해관계의 복잡성, 기업공개가 불가능,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사례

LLC의 장점을 활용한 사례

갑과 을은 자금을 합쳐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구매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갑과 을은 한 사람이 지분을 팔게 되더라도 남은 사람은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갑과 을은 LLC를 설립하여 상가건물을 LLC 앞으로 취득하면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LLC 차원에서 낼 필요가 없는 점, 갑과 을이 임대업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 점, 한 사람이 지분을 팔고자 할 때도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LLC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LLC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제6장 사업의 인수



제6장 사업의 인수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 창업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 사업을 인수하느냐의 고민에 빠진다. 창업을 하는 경우 권리금이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자의 법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다.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시설, 장비, 인지도, 종업원, 거래선, 고객 등을 인수받을 수 있어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새로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낯선 곳에서 새로 창업을 하다 보면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심지어는 손해만 보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사업을 인수하려면 기존 사업자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사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법적 관계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주의를 요한다.

사업의 인수를 매도자(Seller)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양도가 된다. 사업의 인수 및 양도를 기업의 범위로 확장하면 기업인수 및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이 된다.



참고 사업인수 Vs. 창업, 어느 것이 유리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가게자리가 제한되어 새로 얻기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 소매상, 사업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권리금을 주고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업주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창업하는 것이 좋다. 유행을 타는 업종, 도매상과 같이 업주의 인맥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기존 가게를 인수해서 사업을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업인수 방식

사업인수 방식에는 크게 보면 (1)자산인수(Asset Purchase) 방식, 즉 사업체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 (2)주식인수(Stock Purchase) 방식, 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이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기업인수 및 합병(M&A)을 통하여 사업을 인수한다. 합병(Merger)은 두 회사가 법적으로 합쳐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하여 A와 B 중 어느 하나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의 대가로 살아남는 회사로부터 현금, 주식, 현물 등을 받게 된다. 합병과 비슷한 것으로 기업결합(Consolidation)이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하여 C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방법이다.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 어떤 법적 형태이냐에 따라 인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또는 파트너십(Partnership)의 경우 자산인수 방식에 의하고, 주식회사(Corporation) 또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자산인수 방식과 주식인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인수 방식, 주식인수 방식, M&A를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느 방식에 따라 사업을 인수할 것인지는 사업의 특성, 거래 비용, 걸리는 시간, 세금 및 리스크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인수 방식

자산인수(Asset Purchase) 방식은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체의 자산만을 인수할 수도 있고,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인수할 수도 있으나, 사업을 인수한 후에 생기는 법적 책임,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만을 분리하여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인수 방식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어떤 사업조직이든 가능하다.

자산인수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자산을 인수할 것인지, 자산의 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거래가격을 지급함에 있어서 자산 평가액보다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즉, 권리금 또는 영업권)을 지급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된다.

자산인수 방식의 이점은 불필요한 자산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자산과 부채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예측하지 못한 부채로부터 손해를 보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에 담보권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자산인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복잡한 권리관계를 깨끗이 정리한 후에 자산을 인수할 수가 있다.

자산인수 방식은 불리한 점도 있다. 매도자(Seller)의 입장에서는 자산만 떼어서 팔면 부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므로 회사를 추후 청산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또한 자산인수 방식에서는 매매대금이 회사로 납부되므로 그것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하려면 주식회사의 경우 이중과세를 당하게 되므로 불리하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매도자는 자산인수 방식을 기피하게 된다.

매수자(Buyer) 입장에서 자산인수 방식이 어려운 점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각의 자산별로 명의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회사가 10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하면 10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반면, 주식인수 방식으로 하면 회사의 주인만 바뀌고 회사는 그대로 있게 되므로 명의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이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나 회사 이름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산인수 방식을 선택하면 무형자산이나 인허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사례 **자산인수 방식 사례**

A는 자동차용 볼트 및 너트 제조업(법인명 Auto Manufacturing Inc. A가 100% 주식 소유)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공장부지 2필지, 기계장치 3개, 원재료 등을 소유하고 있다. B는 자동차용 볼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A로부터 볼트 제조 공장부지 1필지, 기계장치 1개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A는 B에게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분리 매각한 후에는 자동차용 너트 제조업만을 영위한다.

주식인수 방식

주식인수(Stock Purchase) 방식은 매입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Corporation) 또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인수할 때 사용된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도 파트너십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 주식인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체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며, 내부적으로 회사 소유자만 바뀌게 된다.

주식인수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주식(또는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주식 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거래가격을 지급함에 있어서 주식 평가액보다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더할 것인지,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주식인수 방식은 사업체의 가치 또는 주가가격을 평가하는데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식인수 방식의 장점으로서는 그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이므로 주식평가 및 가격협상이 되면 주식만 거래하면 되고, 개개 자산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자산인수 방식보다 주식인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Carryover)이 많은 경우 자산인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하지만, 주식인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체의 실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나중에 이익이 생겼을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가치가 높은 자산 또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것을 기업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인수 방식으로 하여야만 동 자산 또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참고 **이월결손금은 현금이다.**

한국에 있는 A법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B법인을 인수하였다. B법인은 인수당시 \$10,000,000의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B법인을 인수한 첫해에 \$20,000,000의 흑자가 났다.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주식인수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를 각각 가정할 때 B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편의상 세율을 35%로 가정)는 다음과 같다. 사례에서 보듯이 이월결손금은 현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

$$(1) \text{ 자산인수 방식} : \$20,000,000 \times 35\% = \$7,000,000$$

(2) 주식인수 방식 : $(\$20,000,000 - \$10,000,000) \times 35\% = \$3,500,000$

다만, 사업인수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월결손금이 많은 부실법인을 헐값에 인수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세법 §382에서 사업인수 시 취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다.

주식인수 방식의 최대 단점은 잠재적인 부채와 위험이 함께 이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00,000의 값어치가 있는 비즈니스라고 판단하여 그 값을 주고 인수하고 보니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5,000,000이 발견된 경우 인수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인수자가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고 인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인수 협상을 할 때 드러나지 않은 부채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한 위험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소규모 사업인수 절차

사업을 처음 인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인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Agent)에게 맡겨도 되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는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에이전트한테 맡길 경우 터무니 없는 거래를 해도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전반적인 사업인수 과정을 파악해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인사업 인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오퍼 쓰기 :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려면 오퍼(Offer), 즉 인수 의향서를 써야 한다. 매수자(Buyer) 측 에이전트는 매수자가 원하는 조건의 오퍼를 매도자 측 에이전트에게 보낸다. 오퍼에는 인수하고자 하는 가격, 용자 여부, 용자와 관련한 조건(일정 기간 내에 용자를 받지 못하면 오퍼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 에스크로(Escrow) 회사의 선정, 에스크로 기간, 면허(License) 인수에 관한 사항, 사업인수 후 매도자로부터의 트레이닝(Training)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명시한다.

▷ 에스크로 개설 : 에스크로(Escrow)는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회사)가 사업인수 과정에 개입하여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마쳤을 때 매매대금 지급과 사업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매도자가 매수자의 오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로 에스ক্র로 회사가 선정된다. 그러나 매도자가 매수자의 첫 오퍼에 대해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보내게 되면 몇 차례의 오퍼가 오가게 된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상대방의 오퍼를 수락하면 그때 에스ক্র로 회사가 선정된다. 에스ক্র로 회사를 누가 선정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도자가 선택한다. 에스ক্র로 회사가 선정되면 매수인 측은 보증금을 에스ক্র로 회사에 보내 예치하여야 한다.

▷매상 확인 : 사업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매상 확인은 에스ক্র로를 개설한 후에 할 수 있지만 에스ক্র로 개설 전에도 할 수 있다. 에스ক্র로를 개설한 후에 매상이 '틀리다', '맞다'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면 에스ক্র로 개설 전에 미리 해도 된다. 에스ক্র로를 개설한 후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에스ক্র로 비용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에스ক্র로 개설 전에 매상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용자 신청 : 용자를 받으려면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에스ক্র로 회사는 매수자의 오퍼에 기초한 사업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한부씩 준다. 매수자는 이 서류를 갖고 용자를 진행할 에이전트한테 주거나, 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용자를 신청하면 된다. 용자를 받으려면 사업체 수입으로 용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므로 매도자의 세금보고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사업체를 인수할 때 대부분 용자를 받게 되며, 용자를 받지 못하면 사업체 매매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용자를 받지 못하면 오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관계 조사 :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여부는 카운티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여부는 주정부(Secretary)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권리관계 조사(Uniform Commercial Code Search)는 일반적으로 에스ক্র로 회사가 해주므로 매수자가 할 필요는 없다. 사업인수 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나중에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가게를 인수한 후에 사업체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저당권에 근거하여 매수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면허 인수 : 주류면허와 같은 면허(License)는 매수자가 인수 받아야 한다. 면허를 인수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류면허의 예를 들면 면허 양도기간이 대략 55일~65일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에스크로를 개설해야 한다.

▷ 매매 종결 : 매매가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권리관계 조사결과 하자가 없고, 은행 용자, 리스 승계, 면허 인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매매를 종결하기 위하여 클로징(Closing) 날짜를 잡게 된다. 클로징을 할 때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 인수에 필요한 서류 및 영업장 열쇠 등을 받는다.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료,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부동산세, 건물 관리비용 등을 정산하게 된다. 클로징은 보통 에이전트 사무실 또는 에스크로 회사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클로징이 되면 에스크로도 더 이상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

트레이닝(Training)을 시켜줘야 한다. 트레이닝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개의 경우 2주 정도가 보통이다. 그러나 사업체 운영이 복잡하다면 1개월 이상 트레이닝을 받을 수도 있다.

M&A 절차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 절차도 대체로 위에서 설명한 개인사업 인수절차를 따르나, 그 절차가 더 복잡하다.

기업인수 및 합병을 할 때는 거래 성사 전후에 무수히 많은 이슈가 대두될 수 있다. 기업운영에는 경영진 및 종업원 등 많은 사람이 관련되므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많은 경우 기업인수 및 합병이 매도자와 매수자만의 거래가 아니라 경영진 및 종업원이 가담하는 3자 협상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인수합병의 기술이자 성공의 관건이 된다. 기업인수 및 합병 절차는 크게 (1)실사, (2)매매 협상, (3)계약서 작성 및 이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차례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실사

M&A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고자 하는 기업의 상태에 대해 변호사 및 회계사를 고용하여 전문적인 실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재무 상태, 계약관계, 고용관계, 세금문제, 환경 등 각종 규제법 준수 문제, 지적 재산권 현황, 소송 현황, 보험관계, 자회사 현황, 고객 및 거래처 현황, 기업의 소유구조, 주주들의 권리의무관계 등을 꼼꼼하게 실사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인수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실사 결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산 인수 방식을 고집해야 한다.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 인수나 합병이 절차적인 간편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철저한 실사는 거래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협상에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바탕이 된다.

매매 협상

이론적으로는 실사가 종료되어야 매매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는데, 많은 경우 시간관계상 실사와 동시에 매매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사를 하기 전에 매도자가 제시한 기초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간략한 합의서(Letter of Int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를 작성하여 거래의 길잡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사부터 꼼꼼히 하는 것이 좋겠으나, 실제로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크게 매매의 합의,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부수 조항(Covenants), 클로징을 위한 선결조건(Closing Conditions), 손해배상의 약속(Indemnification)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매매의 합의라 함은 자산인수 방식에서는 어떤 자산을 얼마에 인수한다는 합의, 주식인수 방식에서는 주식 몇 주를 얼마에 인수한다는 합의, 합병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살아남고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는 무슨 대가를 받는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매도자가 기업의 상태를 매수자에게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매수자는 그 보증을 믿고 인수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반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면 매수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인수를 한 것이 되므로 추후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 결국 진술 및 보증은 양 당사자가 클로징 이후 일어날 책임 문제를 미리 해결하여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실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당사자가 서로 위험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매매가격을 조절하게 된다.

부수 조항(Covenants)은 위에서 설명한 매매의 합의 이외의 기타 합의를 말하는데, 비경쟁 협약, 비밀유지 약속, 클로징 전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약속, 클로징 후에도 특정 문제에 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력해야 한다는 약속 등을 포함한다.

선결 조건(Closing Conditions)은 매매가 완결되기 전에 꼭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승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승인을 받는 것이 선결조건이 된다. 회사의 자산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경우(예컨대 은행 저당권)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는 것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담보를 해제하려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결국 대출금 상환 및 담보 해제가 선결 조건이 된다.

손해배상의 약속(Indemnification)은 한 당사자가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거나 부수 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특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진술 및 보증 위반이나 부수 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어차피 계약 위반의 책임이 생기게 되지만 손해배상의 약속은 그러한 책임을 수동적인 배상 의무에서 적극적인 약속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준다는 약속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성사된 후에 세무당국에서 세무 감사를 하여 매도자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한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매도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매도자가 책임져야 하므로 손해배상의 약속에서 매도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매매 협상이 완료되면 보통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하고 클로징을 위해 선결조건을 해결하는데 전력투구하게 된다. 모든 선결조건이 구비되면 그 때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주식 또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과 클로징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결조건을 미리 다 구비한 후에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같이 한다. 이 방법은 주로 규모가 작은 거래에서 이용되며, 선결조건이 많거나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합병의 경우 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주정부에 합병증명서(Certificate of Merger)를 제출하여 거래를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기업 분리의 활용

기업 합병(M&A)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 분리가 있다. 기업 분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기업의 리스크(Risk)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여러 개의 영업장 또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적자가 나는 영업장(예를 들어 임차료가 과다한 영업장)이나 업종(예를 들어 제조물 배상소송이 많은 업종)으로 인하여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면 기업 분리를 활용하여 적자 부분을 적절하게 분리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파산(Bankruptcy) 제도를 활용하여 적자 부분을 청산할 수 있다.

주의사항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권리금, 자산 또는 주식 인수, 변호사 비용 등을 위하여 목돈이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사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법적 관계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본의 아니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새로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매상 확인 : 사업인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최근 1~2년간의 매상기록, 재무제표, 물품대금 청구서(Invoice), 세금보고 자료, 신용카드 및 현금 매상액을 입금하는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를 등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매상을

가능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 최근에 세일을 하는 가게인지, 현재가 계절적으로 매상이 많을 때인지, 또는 동원된 고객들로 인해 매상이 높은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 및 소유자에 대한 세금, 종업원 급여, 임차료, 용자금 이자, 공공요금(전기, 전화, 상하수도, 가스), 가게 개조비 등 사업에 지출되는 전체 경비와 매상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인수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 사업인수를 한 뒤에 매도자가 말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장사가 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매상에 대해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놓아야 한다.

주의 **변칙적인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종종 매도자가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인수가격보다 낮은 인수가격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치르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추후 매수자가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록된 낮은 가격으로 인해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불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 자산 평가 : 자산인수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주식인수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산의 종류에는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동산, 무형자산 등이 있으며, 각 자산별로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에 따라 시장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의 수량이 맞는지,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그리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하나하나 체크하여야 한다. 부동산, 기계장치, 무형자산과 같은 고가의 자산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재고자산의 경우 유행이 지나거나 노후화된 경우 팔리지 않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매도자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부풀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 리스 승계 :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사업장 리스(Lease) 조건이 나

빠르면 이익을 고스란히 임차료로 바치거나 영업 중에 쫓겨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한편 장사가 실통치 않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도 임차료는 계속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임차료는 어느 정도인지, 임차료 인상률은 매년 어떻게 되는지, 재계약은 가능한지, 재계약 시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특히 임차료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게 개조가 가능한지, 가게의 일부를 서브리스(Sub Lease) 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을 경우 어떤 페널티(Penalty)가 있는지, 가게를 그만둘 경우 원상회복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권리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리스계약을 승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하거나, 계약조건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조닝(Zoning) :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땅이나 건물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는 조닝(Zoning)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닝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종과 영위할 수 없는 업종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닝이 바뀌어 인수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얼마 안가서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운티 도시계획국(Department of City Planning)에 해당 지역의 조닝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의 **사업인수 계약은 신중하게 하자!**

A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장사가 잘되는 주유소가 반값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매도자 B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주유소를 매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용자와 관련한 조건(일정 기간 내에 용자를 받지 못하면 오퍼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생략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였다. A는 급한 마음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 \$500,000을 지급하였다. A는 은행에서 용자를 받는 과정에서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기존에 오염된 토지를 전부 복구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그 지역에서 주유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토지 복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이 막대하여 은행은 A에

대한 용자를 거부하였다. B는 약정일이 되자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A는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고,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계약금만 날리고 계약을 포기하였다. A는 B가 교묘하게 자신을 속였다는 심증을 가지고 소송도 고려하였으나, 투입되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때 별 실익이 없어 소송도 할 수 없었다.

▷비경쟁 협약(Covenant Not to Compete) : 사업을 인수한 후에 매도자가 인근에 가게를 다시 내고 경쟁을 한다면 기존 고객을 다 뺏기게 되어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것이 허사가 된다. 따라서 사업을 인수할 때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항(Non-competition Clause, Covenant Not to Compete)을 매매계약서에 넣고, 매도자가 동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제한구역이 너무 넓거나, 제한기간이 너무 장기간일 경우, 또는 제한 업종이 광범위할 경우 매도자의 생계권을 침해하게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종업원이 비경쟁 협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요리사 A를 영입하여 야심차게 고급음식점을 개업하였다. A는 유명한 요리사로서 최근까지 가까운 다른 고급음식점의 주방장으로 있다가 그만 두고 나왔다. 갑은 A를 2년 동안 주방장으로 고용하기로 계약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얼마 후 갑은 영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A가 최근까지 일했던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A는 전 직장을 그만둘 때 반경 5마일 이내에서는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취직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왔다.

▷우발적 채무 : 사업을 인수한 후에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체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저당권에 근거하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든지,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하자보상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자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매수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사업인수 계약

서에 인수인계하는 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우발적 채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매수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수인계하는 채무의 종류와 금액, 나중에 발생하는 우발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주의 **우발적 채무에 대한 조항을 사업인수 계약서에 넣자!**

A는 B로부터 C법인을 \$50,000,000에 인수하였다.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내용이 명확하고 인수가격이 적합하여 계약서에 우발적 채무에 대한 조항이 없이 회사를 인수하였다. 2년이 지난 후에 IRS로부터 세무조사가 나와 B가 회사를 운영할 당시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30,00,000이 법인 앞으로 부과되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자 A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회사를 인수한 결과가 되었다. 계약서에 우발적 채무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A는 B에게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회계 및
세무처리**

사업인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사업인수 방식이 자산인수 방식이나 주식인수 방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인수 방식은 자산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주식인수 방식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자산인수 방식

자산인수 방식의 경우 자산만을 인수할 수도 있고,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인수할 수도 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매수자는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Fair Market Value)로 평가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매매가격이 순자산(자산 -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권리금 또는 영업권(Goodwill)으로 처리한다. 매매가격이 순자산에 대한 시가 평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부(-)의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매수자가 매매가격을 어느 자산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세금계산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에 배분하면 동 자산을 판매할

때 자산 구입가격을 매출원가로 처리할 수 있고, 건물, 장비, 기계장치 등에 배분하면 감가상각을 통하여 감가상각기간(5년에서 7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토지에 배분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에 토지원가로 처리할 수 있고, 영업권에 배분하면 장기간(15년)에 걸쳐 영업권 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매도자의 경우 자산의 매매가격과 본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동 소득은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자산의 종류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이 되기도 하고, 양도소득(Capital Gain)이 되기도 한다. 일반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약간 다르다.



사례

자산인수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금문제

A(Buyer)는 B(Seller)가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을 인수하면서 자산만 인수하였는데, 매매 당시 B는 재고자산(주류), 설비(냉장고), 영업권(권리금)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B의 장부가액 및 A의 인수가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B의 장부가액 | A의 인수가격 | 양도차익 |
|-------|----------|----------|----------|
| 재고자산 | \$10,000 | \$20,000 | \$10,000 |
| 설 비 | \$20,000 | \$30,000 | \$10,000 |
| 영 업 권 | \$20,000 | \$30,000 | \$10,000 |
| 합 계 | \$50,000 | \$80,000 | \$30,000 |

사업인수에 따른 A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 |
|-----------|----------|----------|
| (차변) 재고자산 | \$20,000 | |
| 설 비 | \$30,000 | |
| 영 업 권 | \$30,000 | |
| | (대변) 현 금 | \$80,000 |

사업양도로 인하여 B는 총 \$30,000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재고자산 매출이익 \$10,000, 설비처분이익 \$10,000, 영업권 양도차익 \$10,000이다. 재고자산 매출이익은 일반소득이며, 설비 처분이익 및 영업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자산양도에 따른 B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 |
|----------|-----------|----------|
| (차변) 현 금 | \$80,000 | |
| | (대변) 재고자산 | \$10,000 |
| | 설 비 | \$20,000 |
| | 영 업 권 | \$20,000 |
| | 재고자산매출이익 | \$10,000 |
| | 설비처분이익 | \$10,000 |
| | 영업권양도차익 | \$10,000 |

주식인수 방식

주식인수 방식의 경우 내부적으로 주주가 바뀌는 것이므로 주식을 발행한 법인(즉 매매대상이 되는 회사)이 회계처리를 할 사항은 없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는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다. 매도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동 양도차익은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다.



사례 주식인수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금문제

A법인의 주주 B(개인)는 3년 전에 \$1,000,000을 출자하여 A법인을 설립 하였다. 한국의 C법인은 A법인의 주주 B로부터 A법인의 주식 전부를 \$2,000,000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하였다.

사업인수에 따른 C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 |
|-------------|-------------|-------------|
| (차변) 관계회사주식 | \$2,000,000 | |
| | (대변) 현 금 | \$2,000,000 |

사업양수에 따른 B(개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 |
|----------|-------------|-------------|
| (차변) 현 금 | \$2,000,000 | |
| | (대변) 주식 | \$1,000,000 |
| | 주식양도차익 | \$1,000,000 |

매매대상이 되는 A법인(주식발행법인)의 경우 거래가 없고 내부적으로

주주만 변경된 것이므로 특별히 회계처리를 할 사항은 없다.

다시 3년 후에 C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3,000,000에 처분하였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 |
|---------|-------------|-------------|
| (차변) 현금 | \$3,000,000 | |
| | (대변) 관계회사주식 | \$2,000,000 |
| | 주식양도차익 | \$1,000,000 |

제7장 사업의 정리



제7장 사업의 정리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체를 타인에게 매각하면 소유주의 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이 정리되는 것이다. 사업체를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면 소유주로서는 사업체를 법적으로 해체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으나 때로는 사업체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거나 겨우 지탱하고 있을 경우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이 되는데 이런 때는 타인이 사업체를 매수할 가능성이 낮다. 가망이 없는 사업을 지속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 비자발적인 파산절차에 접어들 수도 있으므로 아예 사업을 자발적으로 정리하여 손실을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사업체를 매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남는 자산을 사업조직의 소유주에게 분배한 후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조직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 사업체는 따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또 소유주가 자산을 100% 소유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업형태이므로 개인사업체에 있어서 사업의 정리는 곧 청산을 의미한다.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사업체에 속한 자산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모두 정리하여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주의 다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가 되면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정리

파트너들 간의 합의로 파트너십을 종료 (또는 해산, dissolution) 시킬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은 파트너 중 한 사람이라도 파트너십에서 탈퇴하면 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금치산, 한정치산 등의 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해도 파트너십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파트너십은 각각의 파트너의 능력과 사업참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단, 남아있는 파트너들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면 파트너십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파트너의 탈퇴 또는 유고로 파트너십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전통적인 법원칙은 경우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에 도입되는 파트너십 법은 위와 같은 경우 자동으로 파트

너십이 종료되지 않게 하고 남아 있는 파트너들이 탈퇴하는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여 파트너십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Limited Partnership에서는 보통 General Partner의 탈퇴, 사망, 파산 등의 경우 Limited Partnership이 종료될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가 문제되고 Limited Partner의 탈퇴, 사망, 파산 등의 경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튼 언제 파트너십이 종료되는지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파트너십협약에 이 문제를 자세히 규정해 놓는 것이 좋다.

파트너십이 종료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파트너십은 채무정리/자산배분 등 사업의 경제적인 측면을 정리하는 절차 (winding up)를 위해 지속된다. Winding up 절차는 파트너십의 자산을 모으고, 채무를 정리하고, 파트너간 지급의무를 정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일 파트너십의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파트너들의 개인재산으로 채무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무한책임).

General Partnership의 경우에는 따로 주정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으나 설립시 주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Limited Partnership 및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경우에는 파트너십의 종료를 알리는 certificate of cancellation 또는 certificate of withdrawal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주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LC는 파트너십의 장점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뽑아 만든 새로운 형태의 사업조직이다. 그러므로 LLC출자자(Member)들간의 관계는 파트너십의 파트너간의 관계와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LLC의 정리는 파트너십의 정리절차와 비슷한 점이 많다. 단,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한 출자자의 탈퇴, 유고, 파산 등이 LLC의 종료 또는 해산을 결과하지는 않고 LLC는 계속된다. 대다수의 주가 1인 출자자 LLC를 허용하는 점에 비추어서도 LLC는 파트너십과 달리 출자자의 탈퇴나 유고로 자동해산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출자자들 간의 합의로 언제든지 한 출자자가 탈퇴하거나 특이사정이 생기는 경우 LLC가 해산되도록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LLC는 operating agreement에 어떤 경우에 LLC가 해산되는지를 규정하게 된다. 이

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내용을 삽입하여 후일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LLC의 해산을 위해서는 주정부에 해산을 알리는 articles of dissolution, certificate of dissolution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주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Winding up 절차가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한다. LLC의 winding up은 파트너십과 달리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산을 유보한 후에만 멤버에게 잔여자산이 분배될 수 있다. 이는 소유주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LC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식회사의 정리

주식회사의 자발적인 해산/정리는 주주의 동의를 요한다. 즉, 주주 전원이 문서로 동의하거나 이사회 의결 후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가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가 주식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자산은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winding up도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산을 유보한 후에만 주주에게 잔여자산이 분배될 수 있다. 만일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자산을 분배하면 주주는 분배자산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사들도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의 해산도 주정부에 해산을 알리는 articles of dissolution, certificate of dissolution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주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주정부에 내야되는 franchise tax을 완납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해산의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된다. 또 IRS에도 통보 (Form 966) 하고 최종 소득 세금보고서 (연방, 주)를 제출하여 세무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고 State Sales/Use 관련 세무신고, Payroll 관련 세무신고, Worker's Compensation Final Report 제출 등 각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자산의 분배와 관련된 세무신고도 마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모든 계약관계 (종업원과의 고용계약관계 포함)를 정리하여야 하고 각종 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인허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정리하는 절차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사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보호와 소유주에 대한 재산분배 등이 관련

되어 법적인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어설픈 사업체를 정리하다 보면 각종 법률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사업체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중국에는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 사업체의 소유주는 파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대로 채권자들도 연합하여 가망성 없는 사업체를 파산절차로 이끌어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 의지하는 것은 사업의 정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이 청산으로 종료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절차이므로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파산법의 두가지 목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채권자들 간에 채무자의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함에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의 권리주장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각종 채권추심행위에서 해방될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은 파산보호신청 (bankruptcy protection) 이라 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와 결탁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파산법상 절차를 통하여 막을 수 있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개개의 소송을 통해 채권변제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산 상황에서는 관계된 자들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거의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자동으로 중지 (automatic stay) 된다. 즉, 개별적인 채권회수 소송은 모두 자동으로 중지되게 하여 파산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게끔 하려는 의도이다.

대표적인 파산 절차에는 연방파산법 Chapter 7하에 규정되고 있는 청산 (liquidation) 절차와 Chapter 11하에 규정되는 기업회생 (reorganization) 절차가 있다. Chapter 7하의 청산절차는 가장 기본적인 파산절차로서 채무자가 모든 자산을 파산관재인 (bankruptcy trustee)에 넘기고 파산관재인이 그 자산을 현금화하여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Chapter 7절차에서는 채무자 (즉, 사업체) 는 예외적인 채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무로부터 면제되므로 새 출발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법원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들에 대한 의무 (예컨대, 횡령금, 절도한 재물, 사기로 취득한 재물) 와 세금, 벌금등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개시 90일 이내에 여러 채권자 중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환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분배될 파산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의 개시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산이전이 fraudulent transfer가 되어 무효화될 수 있다. 예컨대 공정한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한 경우 등이다. 즉,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려는 행위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의 이익만 보호해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악용을 막는 것이다.

채무자가 Chapter 7 파산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고, 일단의 채권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채무자를 파산절차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를 파산절차에 몰아넣는 경우는 채무자가 대부분 파산절차 개시에 반대를 할 것이므로 법정싸움이 있게 된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채무자를 파산절차에 몰아넣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채권자들이 연합하여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비자발적 파산은 용이하지가 않다고 보면 된다.

Chapter 11에서 규정되는 기업회생 (reorganization)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계획 (reorganization plan) 에 따라 부채를 조정하여 주고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다. 즉, 구조조정된 사업체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서 사업체를 존속시키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Chapter 11하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대로 영업을 하면서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며 (debtor-in-possession) 회생계획을 입안하여 채권단과 협의하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구하게 된다. 회생계획은 채권단의 class (비

슷한 채권자집단) 별로 투표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반대하는 채권자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 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도 회생계획을 입안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채무자 (특히 그 경영진) 의 협조 없이 회생계획을 입안/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사업체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에 대하여 판사가 기업회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Chapter 7으로 전환하여 청산을 할 수도 있다.

파산법원에서 밟아야 하는 법적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을뿐 아니라 그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법상의 Chapter 11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로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Workout 이라고 한다. 또 Workout 이 용이치 않는 경우 (예컨대, 일부 채권자의 반대) 에는 채권자 대다수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합의하여 파산법상의 Chapter 11 절차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구조조정안을 통과시키는 pre-packaged bankruptcy 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체의 정리는 지급불능상태에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사업을 접는 경우와 지급불능상태가 되어 파산절차에 의지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으로 대변되는데 어느 경우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의 요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장 미국의 세제



제8장 미국의 세제

미국에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한국기업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에 부임한 임직원이 부딪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아리송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세제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세금이 있고, 이에 더하여 주정부별로 세제가 각각 다르므로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제를 가지고 있다. 국가 간의 법제도가 다르듯이 세제 역시 상이점이 많아서 한국의 세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혼동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미국의 세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금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세금효과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미국과 같이 과세관청의 권한이 강한 국가에서는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세무조사 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 세금의 종류, 납세의무자, 세제의 특성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장부터는 세금 종류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연방정부 세금과 주정부 세금으로 나눌 수 있다. 세목별로 나누면 연방정부 세금의 경우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사회보장세 등이 있고, 주정부 세금의 경우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이 있다. 위의 세금 이외에도 특정 소득, 재산, 거래, 소비, 행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연방 소득세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는 연방정부가 모든 시민과 거주자, 회사, 기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이에 해당된다.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없지만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의 소득은 순소득의 개념이므로 총소득에서 그와 같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개인납세자는 세법상 미국인(US Person)과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되며, 법인납세자는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과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구분된다.(내국법인은도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 소득세는 개인납세자에 대한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와 법인납세자에 대한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세법상 미국인(US Person)은 시민권자, 거주외국인(영주권자, 세법상 장기체류자), 내국파트너십, 내국법인, 일정한 상속재산(estate), 일정한 신탁재산(trust)을 말한다.



참고 거주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의 차이

세법에서는 개인납세자를 세법상 미국인(US Person)과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굳이 세법상 외국인을 나눈다면 (a)영주권자, (b)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 (c)단기체류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substantial present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외국인으로서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므로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중 비거주 외국인(단기체류자 등)은 미국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세법에서는 아래 (1), (2)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거주외국인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3)에 해당시 거주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다.

- (1) Green Card Test : 영주권자는 거주외국인이다.
- (2)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본다. (2012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①

2011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1년(체류일수의 100% Count), 2010년(1/3 Count), 2009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 (3) 다만, 위 (2)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거주외국인이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거주외국인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참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한다.

세법상 미국인(개인, 내국법인 등)의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세법상 미국인은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건 외국에서 발생했건 상관없이 전세계 수입원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따라 미국 납세자(엄밀히 표현하면 세법상 미국인임)는 종종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정부와 외국정부에 이중으로 납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연방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미국의 수입원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거주지 국가에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정부와 외국정부에 이중으로 납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미국에서 납부한 연방 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주재원 중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등)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다. 흔히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부동산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보너스 등을 한국에서 받는 경우), 임대소득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는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므로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금 또는 재산의 출처에 관계없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앞서 보았듯이 미국 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판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주(州) 소득세

미국 대부분의 주는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부과하고 있다. 주 소득세도 연방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과 거주외국인, 회사, 기타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주 소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조정을 하여 산정된다.

각 주는 해당 주 내에 충분한 관련요소(Nexus)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주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납세자에 대하여 관련요소 존재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일인데, 일반적으로 개인납세자는 자신의 거주지 주와 근로지 주에 모두 충분한 관련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떤 주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에서 일하는 개인납세자는(예를 들면 뉴저지 주에 거주하면서 뉴욕 주에서 일하는 경우) 두 주에 모두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 거주지 주에서는 근로지 주에서 납부한 주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Tax Credit)를 허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법인납세자에 대한 관련요소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마다 요구하는 최소한의 관련요소가 다른데, 대부분의 주는 해당 주 내에 종업원을 두고 고객을 유치하거나, 보관된 물품이 있거나, 혹은 판매행위, 배달행위, 주문행위 등 구체적인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 충분한 관련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른 주에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보통은 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일단 충분한 관련요소(Nexus)가 발견되면 과세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여러 주에 걸쳐 상거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별로 관련요소의 존재여부를 따져서 주별로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주별로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일일이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보통 3요소공식(Three Factor Formula)에 의해서 회사의 총 수입 중에서 주별로 해당되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3요소는 자산, 임금, 매출액을 말하는데,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어느 정도가 특정 주내에 있으며, 총임금 중에서 어느 정도가 특정 주 내에서 지급되었는지, 총매출액 중에서 어느 정도가 특정 주

내에서 얻어진 것인지를 따져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백분율로 특정 주에서의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한다.

법인에 대한 주 소득세와는 별도로 일부 주는 회사의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액의 지점세(Franchise Tax)를 부과한다. 지점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며, 해당 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의 **기업을 철수하는 경우 주정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업이 여러 주에 걸쳐 영업을 하다가 특정 주에서 철수하는 경우 반드시 주정부에 납세필증을 첨부하여 철수신청서(Withdrawal Application)를 제출하고, 철수증명서(Withdrawal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몇 년이 지난 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주정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주의 경우 법인 세적이 살아 있으면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법인 자산이나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철수신청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주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흔히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에 근무하러 온 사람들과 그들의 고용주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많은 외국인과 외국회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납부만 하고 혜택은 받을 수 없는 불공평한 세금이기도 하다.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자국에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다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데, 이러한 맹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사회보장세

단일화조약”(Social Security Totalization Treaty)을 맺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인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한곳에만 국민연금 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장세의 또 다른 특성은 종업원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며,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페널티(Penalty)가 부과된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 사회보장세가 있어서 역시 고용주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실업세(Unemployment Tax)를 고용주로부터 거두어 실업자 대책의 재원으로 삼고 있다. 실업세 역시 외국 회사의 미국 주재원이 실업수당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외국회사에게는 불공평한 세금이다.

그 밖의 연방세

연방정부는 일정한 수입품(輸入品)에 대해 관세(Customs Duty)를 부과하며, 이와는 별도로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물품세는 20세기 초까지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었으나, 요즈음에 와서는 소득세의 보조역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는 납세자가 생존하는 동안 이루어진 증여 행위와 재산을 지닌 채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연방 세금인데, 세율은 최고 35%(2012년 기준)이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이 일생 동안 세금 없이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는 한도는 증여와 상속을 합하여 \$5,120,000(2012년 기준)(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은 제외)이다.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5,120,000 공제(Exclusion)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거주외국인이 미국 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미국 내 재산을 둔 채 사망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증여세의 특징은 재산을 증여하는 자(Donor)가 납세의무자인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Donce)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연방 상속세의 특징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해 주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일정액 이상 소유한 채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Estate) 자체가 납세의무를 가지며, 상속재산 중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부분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주로 부유층에서 부(富)의 이전과 관련하여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세금이지만, 동시에 미국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도 반드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 밖의 지방세

재화 또는 용역의 소매행위 거의 전부에 대하여 주정부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소매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는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정부 판매세의 세율은 주마다 다른데, 세율은 최저 2.9%에서 최고 8.25%까지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서도 일정 세율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카운티, 타운 등 지방행정기관은 재산세(Property Tax)를 부과한다. 이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동산(Personal Property) 또는 부동산(Real Property)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동 재원은 경찰서, 소방서, 공립학교, 도서관 등의 유지에 사용된다. 재산세는 같은 주 혹은 카운티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행정기관은 사업목적상 보유하는 재고자산에까지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상시 보관해야 하는 기업은 그 보관창고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미국 세금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

연방정부 세금에 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얻을 수 있다.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 서식, 간행물, 용어 등을 입력하면 연방정부 세금과 관련한 모든 공개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주정부 세금에 대한 정보는 해당 주정부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Taxation 또는 Finance 분야를 검색하거나,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 서식,

간행물, 용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일반 법령에 관한 정보는 Cornell 대학교 법률정보연구소의 홈페이지(www.law.cornell.edu)에서 얻을 수 있다.

납세 의무자

가장 흔한 납세자 유형은 개인(Individual),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인데, 이외에도 상속재산(Estate)과 신탁재산(Trust)이 있다. 따라서 연방세법상 모든 납세자는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인가 법인인가 혹은 다른 제3의 유형인가에 따라 납세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조직을 설립할 때는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Individual)

가장 기본적인 납세자 유형은 개인(Sole Proprietorship 포함)이다. 개인이란 물론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개인납세자가 여러 명 모여 법인이나 파트너십 등 다른 유형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주주나 사주는 역시 개인이라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세금은 개인납세자로 귀착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 유형을 형성하면 일단은 이중과세를 자청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이중과세를 부담하면서도 많은 개인들은 세금 외적인 이유로 다른 납세자 유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려는 개인들은 과연 세금 외적인 이유가 충분한가를 반드시 살펴보고 납세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납세자는 연간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누구나 연례적으로 세금보고(Tax Return)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보고란 1년간 자신의 총소득이 얼마였고, 공제액수가 얼마였으며, 거기에 따른 세액이 얼마라는 것을 스스로 열거하고 계산하여 매년 IRS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합동단위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녀 셋을 둔 부부가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다섯 명의 개인납세자가 있는 셈이며, 자녀가 모두 독자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이 가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세금보고서는 최소 네 건이 되는 것이다.

개인 자격으로 벌이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투자로부터의 수입 등은 모두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단 개인납세자로 분류되면 그 개인의 사업내용의 복잡성에 상관없이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법이 확일적으로 적용된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우선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인가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인가를 구분한 다음 거주외국인이면 시민권자인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을 적용받으며, 비거주외국인이면 여러 가지 특별조항을 적용받는다.

파트너십(Partnership)

개인납세자가 공동으로 사업경영을 위해 모이거나 법인이 합작투자를 벌이기로 뜻을 합하면 파트너십이 형성된다. 상법상 파트너십이란 두 사람(자연인과 법인 포함) 이상이 이윤추구를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의 파트너십은 더 광의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연방세법에서는 파트너십을 자본의 연합, 그룹, 합동자금, 공동투자 등으로서 법인, 상속 재산 또는 신탁에 속하지 않는 모든 조직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과 자본의 합작을 위한 투자, 회사 설립 없이 부동산의 공동구입이나 관리를 위해 결성되는 자본연합(Syndicate), 지인끼리 모여서 경영하는 소규모 마켓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십의 예는 다양하다.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도 출자자(Members)의 유한책임을 보장하는 실체(Entity)이지만 대부분 파트너십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파트너십도 해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납세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파트너십은 그 세금보고서에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밝히고, 각 파트너의 몫이 얼마라는 것을 보고하게 된다. 파트너십 자체는 납세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 파트너가 자기 몫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순익에 대해 납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파트너십은 도관회사(Pass Through Entity)라고 일컬어진다.

파트너십에서 결손이 생기면 각 파트너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결손의 몫을 다른 수입원으로부터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

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세회피용 투자(Tax Shelters)의 많은 예가 파트너십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창업 초기에 결손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파트너십으로 시작했다가 사업체가 이윤을 내기 시작하면 법인(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결국 파트너십이란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파트너간의 자의적인 법률관계인 셈이다. 미국에서는 법률사무소와 회계사무소 등 전문직 자영업에서 파트너십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법인(Corporation)

가장 조직적인 납세자 유형은 법인(法人)이다. 법인이란 물론 법의 관념 하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적 인격체(Entity)이다.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별개의 납세자가 되며,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도 별개의 두 납세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연방세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정의에서 간단하게 협동체, 합자회사, 보험회사 등도 법인에 포함된다고만 규정하고, 시행세칙(Treasury Regulations)에서는 법인의 특성을 합동체, 이윤추구와 이윤분배의 목적, 계속기업(Going Concern), 중앙집권적 경영체제,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로운 전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세칙에서는 어느 조직체가 반드시 상기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지적한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 납세자 분류에서 법인으로 분류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중앙집권적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고 지분의 전매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수명이 무한하지 않고 주주가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회사의 설립은 각 주별 회사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데, 특이한 점은 어느 조직체가 해당 주 회사법에 따라 정식으로 법인 설립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방세법에서는 이를 법인납세자로 간주한다.

외국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연락사무소나 지점을 개설한 경우에도 법인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연방세법은 그 연락사무소나 지점을 법인납세자로 분류한다. 외국법인의 경우 미국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형태의

납세자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외국법에 의해 어느 사업체가 법인, 파트너십 등 특정한 형태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연방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납세자 분류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법과의 상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IRS는 납세자에 의한 선택원칙(Check-the-Box Rule)을 적용하고 있다. 이 원칙 아래서 외국 법인은 어떤 납세자 형태로 구분되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어느 사업체가 법인으로 분류되면 세법은 그 규모나 소유주의 내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즉 주주가 한명인 소규모 법인으로 부터 주주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다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연방세법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 설립한 회사도 주주가 자연인이건 모국의 본사이건, 혹은 회사의 규모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동일한 세법원칙이 적용된다. 세법은 소규모 회사와 특히 영세 주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본적인 세법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S Corporation이 이에 해당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S Corporation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회사의 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모두 주주에게 분배된 것으로 취급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며 회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순이익에 대해 납세하고 잉여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하면 주주가 또다시 이에 대해 납세하는 전형적인 이중 과세를 S Corporation은 면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 형태로 기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으나, 그에 대한 납세는 주주에게 직접 전가시키고자 할 때 S Corporation을 선택한다.

상속재산(Estate)

상속재산(Estate)이란 유산이라는 뜻으로 집합적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집합적 재산이 세법상 납세자로 인정되어 상속세(Estate Tax)와 소득세(Income Tax)의 납세자가 된다. 자연인은 사망과 동시에 납세자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Estate란 이름으로 유산이 집결되는데,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고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는 곧 존재이유가 없어져 소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유산의 규모가 크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또는 유산분배에 이견이 분분한 경우에 Estate는 수년씩 존재하면서 유산을 정산하거나 유산분배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Estate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신탁(Trust)

법률적인 의미로 신탁이란 공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혜자의 삼각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공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그 재산이 벌어들이는 소득 등을 수혜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신탁의 유형인데,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창출된 재산관리단위가 신탁재산(Trust)이다.

일반적으로 수혜자(Beneficiary)에게 분배되지 않고 신탁 내에 누적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이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신탁은 연소한 상속인을 위하여 또는 연로한 배우자나 부모를 위하여 고소득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문화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주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세제의 특성

미국 세제는 납세자를 신뢰하고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과세소득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하여 스스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제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세무행정은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높이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탈세가 훨씬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탈세자 적발을 위한 세무조사가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으나,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든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특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세무보고를 해왔는데 별일이 없었으니 그 방식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IRS는 일단 모든 납세자의 행동(특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세무보고를 하는 경우) 또는 비행동(세무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고

하지 않는 경우)이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향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납세자가 취한 행동이나 비행동을 검토할 기회가 생길 때 IRS의 입장을 밝힌다.

미국 세제의 특성 중 한국과 특히 다른 점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따른다는 점이다. 법인소득세는 물론이고 개인소득세에 있어서도 소득의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한국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연방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해당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출처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IRC §61(a)에서는 소득의 예로 15가지 유형의 다양한 소득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소득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평소에 세금신고를 별로 하지 않던 납세자가 갑자기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다 적발된 경우 포괄주의 과세방식의 특성상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

미국 세제의 또 다른 특성은 세무회계를 재무회계와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떤 거래가 재무회계 원칙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무회계 원칙으로는 소득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거꾸로 재무회계 원칙상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무회계 원칙상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세무회계의 경우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고, 재무회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특성에 대한 이해는 부당한 세금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두 회계원칙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무회계에서 소득 발생이 없다고 해서 거래를 성립시켰다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흔히 “Book-Tax Difference” 또는 “M-1”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납세자는 이 “M-1”을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재무회계 원칙과 미국 재무회계 원칙의 상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를 살핍으로써 동일한 거래가 미국에서 어떻게 기록되며, 전체 재무제표에 미

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현금주의 회계원칙이 폭넓게 적용된다. 이 원칙은 현금을 받을 때 납세하게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어떤 거래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금을 받을 때까지 이연한다. 예를 들면 할부판매, 동종자산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있어서 현금의 수수가 있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세금의 징수책임을 소득 지급인에게 폭 넓게 맡긴다는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IRS에 납부할 책임이 있다. 비거주외국인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IRS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외국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 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몰라서 소득 지급인이 엉뚱하게 납의 세금을 대신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소득 지급인에게 세금징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내용을 밝혀야 하는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무슨 명목으로든 일단 지급행위를 할 때는 우선 원천징수의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지급내역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는가를 항상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보고의무는 IRS로 하여금 누가 어떤 거래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특히 외국인과의 거래가 있을 때 더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은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9장 개인소득세



제9장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의 수입(Income) 중 5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으로서 미국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 근거하여 징수된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는 독자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들 지방정부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미국의 개인소득세가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크게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과세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 원칙을 따르나, 미국의 경우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내국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동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개인소득세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든 개인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주자(Resident)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에 여기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일부 소득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한국과 같이 별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하는 소득은 거의 없다. 그러나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얻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비거주외국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portfolio interest)와 일반적인 은행이자(은행이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세법상 미국인(US person)과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나뉘어진다. 세법상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거주외국인(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이 있다. 세법상 미국인은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외국인은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세법상 미국인 또는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이 있는 비거주외국인 등은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IRS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가족관계에 따라 독신(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Surviving Spouse) 신고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신고유형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세율, 공제사항 등이 다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 세액계산 구조는 한국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다. 먼저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소득(Gross Income)을 구한 후, 여기에서 소득공제(Deduction from Gross Income),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등을 단계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신고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세액공제(Tax Credit), 가산세(Penalty) 등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납세 의무자

미국 세법에서는 아래 (1), (2),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 거주자(보다 정확히 말하면 거주외국인)로 보나, 예외적으로 (3)에 해당시 거주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다.

- (1) Green Card Test : 영주권자는 거주외국인이다.
- (2)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본다. (2012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① 2011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1년(체류일수의 100% Count), 2010년(1/3 Count), 2009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 (3) 다만, 위 (2)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될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거주외국인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참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한다.

사례 거주기간 요건에 따른 거주자 판정

갑(甲)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2011년 25일, 2010년 330일, 2009년 330일 체류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가? 3개년도 가중(加重) 체류일수가 190일(25일+110일+55일)로 183일을 초과하나, 2011년 체류일수가 31일에 못 미치기 때문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못한다. 갑은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

을(乙)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2011년 170일, 2010년 30일,

2009년 30일 체류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가? 3개년도 가중 체류일수가 185일(170일+10일+5일)로 183일을 초과하고, 2010년 체류일수는 31일 이상이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을은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던 외국에 거주하던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즉, 미국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세법상 미국인은 Form 1040(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표준서식) 또는 Form 1040-EZ(간편서식)에 의하여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는 내국세법(IRC)이 부여하는 각종 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미국에 주재원 등으로 와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게 되어 세법상 거주외국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첫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첫해부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는 주재원 등은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즉, 미국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등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면, 각종 보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IRS에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계좌, 주식, 투자지분 등 해외의 모든 금융자산(Financial Asset) 가치의 합계액이 \$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에 IRS에 금융자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주재원 등 세법상 거주 외국인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보고를 이행해야 하여야 한다. 자금의 원천이 미국에서 번 것이든, 외국에서 번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보고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미국 진출기업 주재원의 납세의무

A는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183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 A는 한국에서 상가 임대소득(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임) 연간 8천만원(\$80,000, \$1=1,000원 가정)이 있고, 미국 직장에서 연간 \$70,000(7천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다. A는 상가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8백만원(\$8,000), 개인소득세 5백만원(\$5,000)을 한국에 내고 있다. A의 가족은 미국에서 A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A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법상 거주외국인에 해당된다.

한국 세법에서는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A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다. 이 경우 A는 이중거주자 지위(Dual Resident Status)를 가지게 되며, 한미조세조약 제3조의 규정(Tie-breaker Rule)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A의 경우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세계 소득 \$150,000(한국 \$80,000 + 미국 \$70,000)에 대하여 미국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A는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 \$5,000(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하여 미국 세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Nonresident)

시민권자, 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 등 세법상 미국인 이외의 자는 비거주외국인에 해당된다.

본 장 마지막의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비거주 외국인이 얻는 소득은 FDAP 소득(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0% 세율(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비거주외국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ECI에 대해서는 세법상 미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거주외국인이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ECI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조약에 의한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Form 8833)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고유형 및 세율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가족관계의 여건에 따라 독신(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Surviving Spouse) 신고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각 신고유형의 선택요건은 다음과 같다.

- ▷독신 : 미혼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부부합산 : 기혼자로서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부부별도 : 기혼자로서 부부가 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경우
- ▷가장 : 미혼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미망인 :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로부터 이후 2년간 적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반드시 부부합산신고를 한 경우로서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 선택 가능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세율은 위 5가지 신고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세율구간, 적용세율, 공제사항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신고유형을 선택하여야 세금부담이 유리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현재 개인소득세 세율(Tax Rate)은 10%, 15%, 25%, 28%, 33%, 35%로 6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세율구간을 조정한다. 구체적인 세율구조는 IRC §1 및 IRS 홈페이지(www.irs.gov)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2011년 귀속분 부부합산 신고자의 세율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참고

2011년 귀속 개인소득세 세율(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 과세표준(Taxable Income) 구간 | | Marginal Rate | 과세표준(Taxable Income) 구간 | | Marginal Rate |
|-------------------------|-----------|---------------|-------------------------|-----------|---------------|
| \$0 | \$17,000 | 10% | \$139,350 | \$212,300 | 28% |
| \$17,000 | \$69,000 | 15% | \$212,300 | \$379,150 | 33% |
| \$69,000 | \$139,350 | 25% | \$379,150 | - | 35% |

세액계산

미국의 개인소득세 세액계산 구조는 한국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다. 먼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농업소득, 위자료, 파트너십 소득 등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1년간의 소득합계를 구하고,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소득(Gross Income)을 산출한다.

총소득에서 공제항목(Deductions from Gross Income)을 차감하여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구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Deductions from Gross Income)에는 사업경비(Trade or Business Expenses), 위자료 지급액, 법정 연금불입액, 법정 이사비용, 법정교육비, 법정학자금 이자 등이 있다. 주로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성격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된다.

AGI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지방정부 세금, 재해손실, 의료비, 기부금, 모기지 이자, 재산세)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신고유형 및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35%)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Tax Credit), 원천징수세액(Tax Withheld), 중간예납세액(Estimated Tax Payments)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Penalty)를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Tax Payable or Tax Refundable)을 계산한다. 한편,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국내법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총소득(Gross Income)

총소득(Gross Income)은 공제 이전의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소득개념으로 미국 세법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Income)이라 함은 노동, 자본 혹은 양자가 결합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으로, 자산의 매매나 전환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함한다.

IRC §61(a)에서는 소득의 예로 15가지 유형의 다양한 소득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미국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된다. IRC §61(a)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 사용료, 수수료, 복리후생비, 이와 유사한 항목 등 서비스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Services, Including Fees, Commissions, Fringe Benefits, and Similar Items)
- ▷ 사업소득(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 : 매출액(Gross Receipts)에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를 공제하여 산출
- ▷ 재산양도로 얻은 소득(Gains Derived from Dealings in Property) :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재산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됨. 2012년까지 개인소득에 대해 15% 이하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면세(0%), 15% 초과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15% 단일 세율이 적용됨
- ▷ 이자소득(Interest)

- ▷ 임대소득(Rents)
- ▷ 로열티(Royalties)
- ▷ 배당소득(Dividends) : 국내법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됨. 2011년의 경우 개인소득에 대해 25% 이하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면세(0%), 25% 초과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15% 단일 세율이 적용됨(2012년도 동일 세율 적용)
- ▷ 위자료와 별거료 수령액(Alimony and Separate Maintenance Payments)
- ▷ 연금(Annuities)
- ▷ 생명보험과 양로기금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life Insurance and Endowment Contracts)
- ▷ 양로연금(Pensions),
- ▷ 채무면제이익(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 ▷ 파트너십 소득(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Gross Income)
- ▷ 사망자에게 발생한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 ▷ 상속재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Income from an Interest in an Estate and Trust)

IRC §61(a)에 열거된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을 들 수 있다.

-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득세 환급액(Taxable Refunds, Credits, or Offsets of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다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소득에서 제외
- ▷ 법정 개인연금 수령액(IRA Distributions)
- ▷ 농업소득(Farm Income)
- ▷ 실업급여(Unemployment Compensation)
- ▷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 ▷ 법정 장학금(Certain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일정 요건 갖춘 경우 제외)
- ▷ 상금(Prizes and Awards)
- ▷ 불법소득(Illegal Gains)
- ▷ S Corporation 소득(법인이 S Corporation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 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

한편, IRC §101~§149에서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및 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 ▷ 육체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액
- ▷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한 복리후생비 : 보험금 \$50,000 상당액에 해당하는 단체생명보험 보험료 납부액, 종업원을 위한 연금불입액, 업무용 숙박비 및 식비, 종업원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일정 요건을 갖춘 이사비 및 의료비 지원액 등은 종업원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 일정 요건을 갖춘 장학금
- ▷ 산업재해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참고

미국 거주자의 한국에 있는 주택과 관련한 세금의 처리

한국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집이 한 채 있고, 이민 또는 주재원으로 한국을 출국한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는 비과세가 아니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때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월세 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는 소득이므로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은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전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10,000 초과시) 및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50,000 초과시)가 있고, 동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총소득에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경비성격의 지출항목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데, 한국의 경

위에 있어서 소득공제와 유사하다. AGI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을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사업경비(Trade or Business Expenses)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중에서 사업소득(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을 산출할 때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로 공제된 것을 제외한 사업상의 경비를 공제. 동일한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산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Expenses of Producing Rental or Royalty Income) :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총소득에 합산할 때 관련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Above the Line Deduction 항목으로 공제(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는 경비를 공제한 후의 순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임).
- ▷법정 개인연금 불입액(Contributions to IRAs) : 전통적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만 공제되며, \$5,000(부부합산 \$10,000)까지 공제. 단, 50세 이상자는 \$1,000 추가 공제
- ▷법정 의료비 저축계좌 불입액(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 ▷이사비용 : 직장 때문에 50마일 이상 이사 시 소요경비
- ▷자영업자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1/2 상당액
-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료
- ▷자영업자의 연금불입액
- ▷위자료 지급액
- ▷학자금 대출 이자 : 대학교 이상 교육비 대출이자(연 \$2,500까지 공제)
- ▷저축계좌 조기해약에 따른 페널티(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과세표준(Taxable Income)

AGI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산출한다. AGI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Below the Line Deduction이라고 부른다.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등은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개인의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우발적 성격의 경비가 발생한 납세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1)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신고유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공제항목이 적은 사람에게 대하여 최소한의 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의 경우 표준공제액을 신고유형별로 보면,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및 미망인(Surviving Spouse)의 경우 \$11,600, 가장(Head of Household)의 경우 \$8,500,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5,800, 독신(Single)의 경우 \$5,800, 65세 이상 연로자 추가공제 \$1,150(결혼하지 않은 독신 연로자는 \$1,450) 등이다.

세금 보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부별도 신고자로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신청하는 경우,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 등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2)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개인의 경우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제금액이 적은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하고, 공제금액이 많은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게 된다. 주요 항목별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의료비(Medical Expenses)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간 AGI의 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 세금(Taxes)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을 공제. 다만, 연방정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사회보장세 등은 제외
- ▷ 이자(Interest) : (a)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1M,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0.1M까지 대출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 대출금의 조기상환 벌과금 등을 공제. (b)투자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주식이나 과세대상 채권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자로서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 한도 내에서 공제
- ▷ 재해손실(Casualty Loss) : 건별 \$100 초과 재해손실 금액에서 '재해로 인한 보상금(Casualty Gain)과 AGI의 10%'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공제
- ▷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 공익성 자선단체(교회,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은 AGI의 50%까지,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AGI의 30%까

지 공제(한도초과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 기타 공제 : 조세자문 수수료, 투자상담 수수료,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률 수수료 등 기타 항목별 공제를 합하여 AGI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



사례

의료비에 대한 세금혜택

의료비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서의 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 Deduction)이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건강보험료, 진료·치료·예방 등을 위한 비용, 치과치료비, 요양시설 비용, 간병인 비용, 의료기관까지의 교통비, 안경·진단기구·휠체어 등 구입비용 등이다.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비를 합한 후, 여기에서 AGI의 7.25%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또는 치아교정비, 헬스클럽 회비, 생명보험료, 상해보험료, 입원 시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Self-employed), 파트너십의 General Partner, 급여(Guaranteed Payment)를 받는 Limited Partner, 2%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S Corporation의 주주 등의 의료보험료는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보험료 지원액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의 경비로 의료보험료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회사 종업원에게 회사가 Cafeteria Plan(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는 종업원 복지혜택)으로 지원하는 의료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종업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물론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의료보험(High-deductible Health Insurance)에 가입한 근로자(Employees)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의료비 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에 불입하는 금액은 \$3,050(가족보험의 경우 \$6,150, 2011년 기준)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Above the Line Deduction). 또한 의료비 저축계좌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의료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3)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사람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1인당 공제금액은 \$3,700(2011년 기준)이며,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본인

▷배우자 : 부부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a)3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 아닌 경우 연도 중 계속 같이 거주하여야 함. (b)대상자의 생활비 중 50%를 초과하여 부담하여야 함. (c)대상자의 총소득이 1인당 인적공제금액(\$3,700) 미만이어야 함. 다만,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으로 전업학생인 경우(5개월 이상 재학)에는 총소득이 1인당 인적공제금액보다 커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d)대상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어야 함. (e)결혼한 자녀가 그의 배우자와 합산 신고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더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지 못함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납세자가 각종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세액계산 절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Regular Tax)이 최저한세 세율을 적용하여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최저한세(AMT) 제도이다.

당해 연도에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최저한세 세액공제(AMT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Tax Credit)

산출세액과 최저한세(AMT)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을 구한 후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우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배려하기 위한 공제로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이다.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육아비 공제(Child Care Expense Credit)
- ▷경로자 및 장애인 공제(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 납세자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저소득층인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
- ▷자녀 공제(Child Credit) : AGI가 일정금액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17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1,000까지 공제
- ▷입양비용 공제(Adoption Credit) : 입양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3,360을 한도로 공제
- ▷최저한세 공제(AMT Credit)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세액의 경우 미래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됨 (기간제한 없이 이월)
- ▷근로장려금 공제(Earned Income Credit) : 활동소득이 있는 부부합산신고 대상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국의 EITC 제도와 유사)



사례

교육비에 대한 세금혜택

교육비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가장 큰 것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세액을 공제하는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인데, (1)대학 교육비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 (2)평생교육비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2가지 종류가 있다. 동일한 교육비에 대하여 위 2가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Form 8863(Education Credits)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가 제한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기존의 Hope Scholarship Credit을 2012년까지 공제액을 높인 것으로서 인원 제한 없이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숙사비 및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학비(교재비 포함)에 대하여 학생 1명당 연간 \$2,5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부모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에 학교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Tuition Statement)를 받아와야 한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 연간 \$10,000(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합산)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간 \$2,000 한도).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를 하는 경우 및 비거주자 외국인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또는 전업 학생인 경우)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육아비용에 대해서는 AGI 수준에 따라 육아비용의 20%~35%에 대하여 육아비 세액공제(Child Care Expense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자녀 1인 \$3,000, 2인 이상인 경우 \$6,000이다.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로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자 지급액 중 연간 \$2,5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Above the Line Deduction).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도 AGI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혜택이 제한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평생교육비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와는 달리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가 한국과 대체로 유사하다. 먼저 연도 중에 원천징수(Withholding) 및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s)에 의하여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한 후에,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과소납부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소득발생 시점은 어느 연도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납세자는 현금주의 회계원칙(Cash Basis)을 적용한다.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 연

간 수입금액(Gross Receipts) \$5,000,000 이하 개인 사업자는 현금주의 회계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금주의 회계원칙에 의하면 소득은 현금 또는 다른 대가를 수령한 시점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현금 또는 다른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할 수 있으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발생주의 회계원칙(Accrual Basis)에 의하여 손익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현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금을 받을 때까지 미루어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할부판매, 동종자산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있어서 현금의 수수가 있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주의 수표 수취에 있어서 세금신고 연도

미국에서는 급여를 계좌로 이체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표(check)로 지급한다. 대금 지급수단으로 수표를 사용하거나,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는 개인의 경우 언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수표는 과세연도 이전에 수취하였거나 수취 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 현금화하거나 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극단적으로 과세연도 마지막 날 우편 배달부가 수표를 전달하려고 집에 갔으나 수취자 부재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s)

납세자는 본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을 추정하여 그 것의 1/4에 해당하는 세액을 네 번에 걸쳐(납부기한 :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원천징수 세액 및 중간예납 세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90% 이상 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00% 이상(AGI가 \$150,000 이상인 경우에는 110%)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 이하인 경우,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었던 경우 등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경우 개인소득

세 신고 시 세무신고서와 함께 Form 2210(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신고(Filing of Tax Return)

납세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Form 4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6개월간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신고기한을 연장했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법상 미국인은 Form 1040(표준서식) 또는 Form 1040-EZ(간편서식)에 의하여, 비거주자(Nonresident)는 Form 1040NR(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표준서식) 또는 Form 1040NR-EZ(간편서식)에 의하여 개인소득세 세금신고를 한다. 세금신고 시에는 각종 소득항목 및 공제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다양한 종류의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신고 서식 및 안내서는 매년 IRS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IRS 홈페이지(www.irs.gov)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신고는 전자신고(e-filing) 또는 서면에 의한 우편신고로 하게 되며, 우편신고의 경우 신고마감일까지 우편물에 접수일자 소인이 찍혀야 기한내의 유효한 신고가 된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0일 내에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때는 일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IRS는 각 주정부의 세무당국과 납세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연방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해당 주정부에도 주정부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개인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Form 1040X(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를 작성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또

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중 늦은 날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Form 1040X를 작성하여 위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 IRS는 (1)Accepted as Filed, (2)Disallowed, (3)Subject to Examination 중 하나의 답변을 하게 된다. Accepted as Filed는 수정신고를 IRS가 인정하는 경우이며, Disallowed는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로서 이 경우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통보한다. Subject to Examination은 IRS가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감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가산세(Penalty)

개인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거나, 과소하게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지연신고 : 지연 신고세액에 대하여 월 5%(25% 한도)
- ▷지연납부 : 지연 납부세액에 대하여 월 0.5%(25% 한도)
- ▷중과소신고 : 부주의, 중대한 누락 등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20%
- ▷부정신고 : 허위 혹은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월 15%(75% 한도)

부과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s)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IRS가 과소신고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신고서상 총소득금액을 25%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6년이며, 무신고 또는 사기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되지 않는다.



주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이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를 충분히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가 많아 신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굳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한참 후에 누락이 발견되면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신고를 하면 3년 내지 6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누락이 발견되어도 IRS가 더 이상 과세를 할 수 없다. 나중에 환급받을 사항이 생겼을 때 당초 신고를 하였어야 수정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기록이 남아 나중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사회보장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시민권자, 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 등 세법상 미국인 이외의 자는 비거주자(Nonresident)에 해당된다.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이 있는 경우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방식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와 세법상 미국인과 같은 방식(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은 FDAP 소득(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FDAP 소득은 이자소득(Interest), 배당소득(Dividends), 사용료소득(Royalties) 등과 같이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고, ECI는 사업소득(Business Income), 근로소득(Wages and Salaries) 등과 같이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이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미국과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한미 조세조약 참조). ECI에 대해서는 세법상 미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거주자가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ECI(사업소득 등)가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없는 등 조세조약 규정에 의거 미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사유를 Form 8833에 기입하여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CI가 있는 비거주자가 FDAP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른 비거주자 소득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은 FDAP 소득으로서 30% 세율(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미국과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비거주자가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 등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IRC 871(h), 871(i))

(2)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당연히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이므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세조약에 의한 예외는 위 참조

(3) 근로소득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먼저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은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이므로 비거

주자가 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근무를 어디서 했는가가 중요하므로 미국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미국에서 받았든 외국에서 받았든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미국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했다면 미국 근무당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에 의하면, 한국인이 미국에 183일 미만 근무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3,000 이하 급여를 받는 경우 미국에서 면세가 된다.

(4) 자본소득

비거주자가 일정 자산을 매각하여 자본소득(Capital Gain)을 얻은 경우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는 주식, 금융자산, 개인용 자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 다만, 미국 내 부동산 또는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양국간 조세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내 고정사업장과 연관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방식 또는 사업소득 과세방식에 따른다.

(5) 부동산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규정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20일 이내에 Form 8288(US Withholding Tax Return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크지 않은데도 확일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하다 보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을 ECI로 보아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원천징수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6) 부동산 임대소득

미국 내의 부동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ECI가 없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a)부동산 임대소득을 FDAP 소득으로 보아 비용공제 없이 총소득에 30%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고, (b)부동산 임대소득을 ECI로 보아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ECI가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과 ECI를 합산한 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세액계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와 미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한다.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세율이 규정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에는 최고세율(30%)로 원천징수를 한다. 현행 한미 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 로열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이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거주자의 세율과 동일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가장(Head of Household) 신고유형은 선택할 수 없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비거주자도 세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소득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세액공제(Tax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인적공제는 비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서 미국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따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FDAP 소득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ECI)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Form 1040NR(표준서식) 또는 Form 1040NR-EZ(간편서식)에 의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FDAP 소득과 ECI가 함께 있는 경우 두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장 법인세



제10장 법인세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 이하 법인세라 한다)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연방정부 세수 중 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이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는 독자적으로 주정부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주정부의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설립된 곳을 기준으로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과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구분되는데, 내국법인은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거나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이 있으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번째 달 15일(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IRS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의 법인세 세액계산 절차는 한국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다. 세무상의 총소득(Total Income)에서 총공제(Total Deductions),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s)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구한 후,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Tax imposed)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Tax Credits), 기납부세액(Tax Payments), 가산세(Penalty) 등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Tax Payable or Tax Refundable)을 산출한다.

납세 의무자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이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C의 적용을 받는데, 이러한 법인을 C Corporation이라 부른다. C Corporation의 경우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을 주주의 소득에 포함시켜 주주가 다시 과세를 받게 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내국세법 Subchapter S의 적용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을 S Corporation이라 부른다. 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법인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납세를 할 수 있다. S Corporation은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법인형태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는데, LLC는 C Corporation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Partnership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Partnership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법인소득을 출자자(Member, LLC에 대한 출자자는 주주라 부르지 않고 Member라 부른다)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납세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C Corporation과 C Corporation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한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세법상 미국인과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설립된 국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과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납세의무 범위가 다르다.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

미국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주법에서 규정하는데, 미국 각 주의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이다.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중 현지법인 형태는 내국법인(내국법인 중 외국인 투자법인)에 해당된다.

내국법인은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내국세법(IRC)이 부여하는 각종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이다.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 중 지점 형태는 외국법인에 해당된다.

외국법인이 얻는 소득은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과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FDAP 소득은 이자소득(Interest), 배당소득(Dividends), 사용료소득(Royalties) 등과 같이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고, ECI는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이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0% 세율(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이 수취인인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외국법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외국법인이 ECI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ECI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없는 경우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사유(즉, 고정사업장 미성립 사유)를 Form 8833에 기입하여 신고서(Form 1120F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CI가 있는 외국법인이 FDAP 소득이 있는 경우 ECI와 FDAP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액계산

미국의 법인세 세액계산 절차는 한국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다. 법인세 세액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세무상 총소득(total income)에서 세무상 총공제(Total Deductions),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s)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세율(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15%~39%)을 곱하여 산출세액(Tax Imposed)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세액공제(Tax credits), 원천징수세액(Tax Withheld), 중간예납세액(Estimated tax payments)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Penalty)를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Tax payable or tax refundable)을 산출한다.

과세연도(Tax Year)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된다. 법인이 설립된 후 최초로 세무신고할 때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IRS의 동의(Approval) 없이 과세연도를 바꿀 수는 없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일반 역년(Calendar Year)을 과세연도로 선택하나, 그 이외에도 다른 월말에 종료되는 과세연도도 선택할 수 있다.

총소득(Gross Income)

미국 세법에서는 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해당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Income)은 노동, 자본 혹은 양자가 혼합되어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며, 자산의 매매나 교환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함한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세 신고서식 Form 1120(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에서는 매출총이익(Gross Profit), 수입배당금(Dividends), 수입이자(Interest), 임대료(Rents), 로열티(Royalties), 자산 양도소득(Capital Gain Net Income), 사업용자산 처분손익(Net Gain or Loss from Sale of Business Property), 그리고 기타 소득(Other Income)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의 귀속 연도는 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이 발생하는(Received or Accrued)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발생주의 회계원칙(Accrual Basis)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받은 경우(선수수익) 그 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총이익(Gross Profit)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출총이익(Gross Profit)에 포함된다. 법인의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 즉,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임대소득, 로열티, 자산 양도소득, 사업용 자산 처분손익, 기타 소득 등은 Form 1120에서 매출총이익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Gross Sales) 또는 수입금액(Gross Receipts from Services)에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출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업 법인의 경우는 판매된 상품의 구입가격

(Purchase Price)에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 등 판매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제조업 법인의 경우는 매출제품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일반경비 등 직접 또는 간접의 모든 원가 및 비용을 포함한다.

(2) 수입배당금(Dividends)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받게 되는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산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자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자산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평가하여 배당금을 계산한다.

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이미 법인세를 지급하고 난 후에 남는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금을 받는 법인의 총소득에 다시 포함시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일단 총소득에 포함하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일정 배당소득공제를 별도로 하게 된다.

(3) 수입이자(Interest)

법인이 예금, 자금대여, 채권보유 등에 따라 받게 되는 수입이자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된다. 다만, 주정부, 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Municipal bonds)로부터 받는 이자는 면세된다.

현금주의 회계원칙(Cash Basi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는 이자를 수령할 때 과세소득으로 포함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Accrual Basi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는 이자가 발생한 때 과세소득으로 포함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이전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임대료(Rents)

자산을 대여하고 임대인(Lessor)이 받는 임대료, 임차인(Lessee)이 임대인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담액, 임대차 계약의 조기 해지로 임대인이 받는 보상금 또는 페널티 등은 임대인의 총소득에 포함된다.

(5)사용료(Royalties)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대여하고 받는 로열티(Royalties)는 총소득에 포함된다.

(6)자산 양도소득(Capital Gain)

법인이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자산 양도소득(Capital Gain)은 총소득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조정원가(Adjusted Basis)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조정원가는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Cost of Capital Improvements)을 가산하고, 이미 비용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경우 자산처분손실(Capital Loss)이 발생하면 자산매각이익 범위 내에서 상계(공제)하며, 그래도 자산처분손실이 남으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을 때 상계(공제)할 수 있다. 공제기간은 소급공제(Carry Back) 3년, 이월공제(Carry Forward) 5년이다.

(7)사업용 자산 처분손익(Net Gain from Sale of Business Property)

사업용 자산의 처분 또는 교환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총소득에 합산하거나 차감한다.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조정원가(Adjusted Basis)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조정원가는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Cost of Capital Improvements)을 가산하고, 이미 비용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사업용 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공제는 자산 양도소득과 달리 제한이 없으며, 당해 사업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상계(공제)한다.

(8)기타 소득(Other Income)

위에서 열거한 소득 이외의 소득은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 기타 소득의 예로는 상각채권 추심이익, 세금 환급액, 파트너십 지분 소득, 법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 채무 면제이익 등이 있다.

일반공제(Deductions from Gross Income)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Gross Income) 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공제(Deductions from Gross Income) 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에서는 공제항목을 임원보수,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광고비, 종업원 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활동 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임원 보수(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Pers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공개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0,000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Qualifie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IRS §162(m)].

(2) 종업원 급여(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Unfunded Deferred Compensation Plan)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서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3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휴가일(Accrued Vacation)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회계에 계상하고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

해외 주재원 지원비에 대한 세무처리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 임차비(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 유지비, 해외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IRS 세무조사 시에 회사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기록, 회사 차량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소득세 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다.

(3)수선유지비(Repairs and Maintenance)

자산을 수리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지출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자본비용(Capital Expenditure)으로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에 산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게 된다.

(4)대손금(Bad Debts)

기업의 사업상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공제가 가능하다. 회수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담보물의 가치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며, 단순히 회수노력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대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기업회계에서는 받을 채권의 일정비율을 대손충당금(Reserve for Bad Debts)으로 설정하고 비용으로 인식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부실채권을 상각할 때 공제가 가능하다.

(5)임차료(Rents)

법인이 부동산, 동산, 차량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 또는 리스료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Paid or Incurred) 것은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6)세금과 공과금(Taxes and Licenses)

당해 연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Paid or Accrued) 세금, 공과금 등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고용보험세(Unemployment Insurance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주 또는 카운티 등에 납부한 법인세, 외국에 납부한 세금, 재산세(Property Tax), 면허료(Licenses)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것은 공제할 수 없다.

- ▷ 연방 법인세
- ▷ 외국 납부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동 세액
- ▷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판매세(Sales Tax). 동 판매세는 재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할 수 없다.
- ▷ 다른 항목에서 공제된 세금
- ▷ 법률에 정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따른 벌과금(Penalty).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Penalty는 공제 가능

(7)이자비용(Interest)

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한 시점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우 부채로 계상하는 시점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과 관련된 이자비용의 경우 차입금이 자본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배당으로 간주되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Thin Capital Issue, IRC §385)

미국 내에서 과세의무가 없는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순 이자비용(이자비용-이자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가 있다.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이자비용은 차기 이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따진다[Earning Stripping Issue, IRC §163 (J)].

(8)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자본손실 공제, 배당세액 공제를 하기 전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 computed without regard to the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NOL and capital loss carry-backs, or the dividends-received deduction)의 10%를 한도로 공제된다. 당해 연도 공제한도 초과로 인하여 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한 것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서에 반영한 것 중 다음해 3월 15일 이전에 지급된 것은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9)감가상각(Depreciation)

감가상각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및 비품, 자동차 등의 사용에 따라 마모되거나 노후화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비용에 산입하는 과정이다.

감가상각은 사업용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자산을 처분 또는 폐기하거나 또는 자산 취득가액을 전부 비용화 할 때까지 하

게 된다. 상각기간(Useful Life)은 자동차, 컴퓨터 기기, 사무용 기계의 경우 5년, 사무용 가구 및 비품의 경우 7년,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7.5년,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39년이다.

상각방법은 통상 MACRS(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에 의하여 하게 된다. 한편, 법인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을 위하여 미국정부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산에 대하여 추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은 취득 후 즉시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말까지 신규로 \$500,000 이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첫해에 \$125,000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에 대한 상각은 Amort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3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면허권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180개월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10)감모상각(Depletion)

광물, 원유, 가스 등 지하자원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감모상각을 통해서 일정비율을 매년 비용에 산입한다. 감모상각은 IRC §613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데, 통상 지하자원의 매장량 및 채굴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다.

(11)광고비(Advertising)

사업과 관련된 광고비는 지급되거나 발생된(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에 비용에 산입한다. 광고비에는 회사의 매출을 당장 증대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과 회사 또는 상표의 장기적인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출이 포함된다.

(12)연금, 이윤분배 플랜 출연금(Pension, Propit-sharing, etc., Plans)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의 연금, 이윤분배 플랜에 출연하는 금액은 실제로 출연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비용으로 산입된다. 법인은 매년 7

월 31일까지 Form 5500(Annual Return/Report of Employee Benefit Plan)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3)종업원 복리후생비(Employee Benefit Programs)

종업원을 위하여 보험, 건강, 복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금액, 기타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은 종업원 복리후생비는 실제로 출연 또는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비용으로 산입된다.

(14)기타 공제(Other Deductions)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은 각종 법인의 지출은 기타 공제에서 공제한다. 환경 복구비, 재해 복구비, 산림 복구비, 철거비, 청소비, 변호사 비용, 전문가 자문료, 보험료, 여비, 식비 및 접대비(지출금액의 50%만 공제), 사업상 증여(1인당 \$25까지 공제), 공적 성격의 연회비, 유틸리티(Utility) 등이 이에 속한다. 법규 위반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벌과금, 면세 소득에 관련된 비용, 로비 자금, 골프장 연회비 등은 공제할 수 없다.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s)

특별공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공제되는 항목이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공제(Deductions from Gross Income)는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공제하는 것이나,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s)는 정책적 목적에서 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비용 또는 지출과 관련 없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1)국내 제조활동 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국내 제조활동 공제는 (a)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제조활동으로 인한 매출총이익(국내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기타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b)당해 법인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 중 적은 금액의 9% 상당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공제는 종업원 급여 총액(W-2)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IRC §199)

(2) 이월결손금 공제(Net Operating Loss Deduction)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상 영업손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2년 소급 공제 또는 2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IRC §382).

(3) 배당소득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이미 법인세를 지급하고 난 후에 남는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금을 받는 법인의 총소득에 다시 포함시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일단 총소득에 포함하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배당소득공제를 별도로 하게 된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공제가 허용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지분율 20% 미만인 경우 배당수익금액의 70%, 지분율 2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배당수익금액의 80%, 지분율 80% 이상인 경우 배당수입금액 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IRC §243).

(4) 창업비 및 개업비 공제

사업체를 새로 설립하든,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든 초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세법에서는 창업비(Organizational Expenditures) 또는 개업비(Start-up Expenditures)로 분류하고 있다. 창업비와 개업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세법에서 공제를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

창업비라 함은 법인 설립에 따른 지출을 말하는데, 법인 등록비, 창업자 보수, 변호사 비용, 기타 설립 부대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개업비라 함은 법인 설립 후부터 영업을 개시 전까지 지출되는 경비를 말하는데, 실내장식비, 홍보비, 영업장 청소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창업비와 개업비는 각각 법인이 영업을 개시하는 해에 \$5,000까지 비용

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180개월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IRC §248, §195). 창업비와 개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상각방법 등에 대하여 Form 4562(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조정(Reconciliation of Net Income)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세법의 규정, 즉 세무회계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과 비용 항목과 세무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다를 수 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에 의하여 회계상 소득과 세무상 소득이 다른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의 부표인 Schedule M-1(자산규모 \$10M 미만) 또는 M-3(자산규모 \$10M 이상)에 의하여 한다.

세무조정 종류에는 (a)익금 산입(Addition to Revenue)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수익인 항목을 수익에 가산하는 것(과세표준 증가), (b)손금 불산입(Subtraction to Expense)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비용이 아닌 항목을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과세표준 증가), (c)익금 불산입(Subtraction to Revenue)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수익이 아닌 항목을 수익에서 제외하는 것(과세표준 감소), (d)손금 산입(Addition to Expense)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비용인 항목을 비용에 가산하는 것(과세표준 감소)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

총소득에서 일반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특별공제 등을 순차적으로 하면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산출되고,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2012년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참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Taxable Income) 구간 | | Marginal Rate | 과세표준(Taxable Income) 구간 | | Marginal Rate |
|-------------------------|-----------|---------------|-------------------------|--------------|---------------|
| \$0 | \$50,000 | 15% | \$335,000 | \$10,000,000 | 34% |
| \$50,000 | \$75,000 | 25% | \$10,000,000 | \$15,000,000 | 35% |
| \$75,000 | \$100,000 | 34% | \$15,000,000 | \$18,333,333 | 38% |
| \$100,000 | \$335,000 | 39% | \$18,333,333 | - | 35%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이 각종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세액계산 절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Regular Tax)이 최저한세 세율을 적용하여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최저한세(AMT) 제도이다.

당해 연도에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최저한세 세액공제(AMT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계산방식은 IRC §55 및 Form 4626(Alternative Minimum Tax - Corporations)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액공제(Tax Credits)

산출세액(Tax Imposed)과 최저한세(AMT)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세액을 구한 후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한 공제로서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이다. 법인세의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공제(Deduction)를 받을 수도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Form 1118(Foreign Tax Credit - Corpora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내법인(Domestic Corporation)에게 허용된다.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에 대한 외국납부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2)연구개발비 세액공제(Credit for Increased Research Expenditures)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로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그 지출액의 20%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준비율은 기업이 창업한 후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5개 사업연도까지는 3%,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연도별로 계산산식이 다르므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대신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14%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하는 방식이다.

(3)고용촉진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퇴역 군인, 청년 실업자, 학생, Food Stamp 수혜자 등 고용을 지원해야 하는 집단(Targeted Groups)에 속한 개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적격자를 400시간 이상 고용하는 경우 첫째 봉급 중 \$6,000까지(여름방학에 일을 하는 학생의 경우 \$3,000) 그 40%(\$2,400까지)를 고용촉진세액공제로 공제한다. 고용촉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0시간을 고용해야 하며, 고용시간이 12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인 경우는 세액 공제율을 25%로 한다.

신고 및 납부

미국의 경우 한국과 대체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유사하다. 먼저 연도 중에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에 의하여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한 후에, 다음 해 초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과소납부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s)

당해 사업연도 납부 예상세액이 \$500 이상인 경우 법인은 매 분기별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연간 세액이 \$200,000을 초과하는 법인은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EFTPS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은 Form 8109(Federal Tax Deposit Coupon)를 이용하여 쿠폰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참고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납부세액 계산방법

| 납부기한 | 납부세액 계산방법 |
|---------|---|
| 4월 15일 | 직전 연도 결정세액 또는 3월말 결산결과를 1년 단위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세액의 25%를 납부 |
| 6월 15일 | 3월말 결산결과를 1년 단위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세액의 50%에서 이전 선납세액을 차감한 잔액 납부 |
| 9월 15일 | 6월말 결산결과를 1년 단위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세액의 75%에서 이전 선납세액을 차감한 잔액 납부 |
| 12월 15일 | 9월말 결산결과를 1년 단위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세액의 100%에서 이전 선납세액을 차감한 잔액 납부 |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중간예납을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정기 법인세 신고 시에 환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차기 사업연도의 선납법인세로 돌릴 수 있다.

세금신고(Filing of Tax Return)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다음 해 3월 15일까지)에 법인세 신고서식 Form 1120(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을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미납세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 법인 소득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신고는 전자신고(e-filing) 또는 우편신고로 하게 되며, 우편신고의 경우 신고마감일까지 우편물에 접수일자 소인이 찍혀야 기한 내의 유효한 신고가 된다.

법인이 신고기한 이전에 연장신청서 Form 7004(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Certain Business Income Tax, Information, and Other Returns)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는 신고기한의 연장이며, 납부기한의 연장은 아니므로 세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세금을 부족하게 납부하게 되면 이자 및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연장신청을 한 후에 세무신고서 제출은 연장신고기한 이내에 한다.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법인이 당초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때는 일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Form 1120X(Amended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를 작성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 늦은 날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Form 1120X를 작성하여 위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고,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 IRS는 (a)Accepted as Filed, (b)Disallowed, (c)Subject to Examination 중 하나의 답변을 하게 된다. Accepted as Filed는 수정신고를 IRS가 인정하는 경우이며, Disallowed는 수정신고를 인정치 않겠다는 통보로서 이 경우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같이 통보한다. Subject to Examination은 IRS가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감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한편, IRS는 각 주정부의 세무당국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므로, 연방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해당 주정부에도 주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산세(Penalty)

법인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거나, 과소하게 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지연신고 : 지연 신고세액에 대하여 월 5%(25% 한도)
- ▷ 지연납부 : 지연 납부세액에 대하여 월 0.5%(25% 한도)
- ▷ 중과소신고 : 부주의, 중대한 누락 등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20%
- ▷ 부정신고 : 허위 혹은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월 15%(75% 한도)

부과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IRS가 과소신고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신고서상 총소득금액을 25%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6년이며, 무신고 또는 사기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

동일한 기업의 지배 하에 있는 그룹회사는 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연결납세(Consolidated Tax Return)라고 한다. 연결납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룹회사는 모회사(Parent)가 소유하는 지분이 80% 이상인 자회사(Subsidiary)이어야 하며, 외국에 소재한 회사, S Corporation 등은 연결납세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연결납세의 주체가 되는 모회사는 반드시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이어야 한다.

연결납세 제도

연결납세를 선택하고자 하는 모회사는 첫해에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Form 851(Affiliated Schedule) 및 자회사로 부터 받은 Form 1122(Consent to Be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Return)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결납세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며, 중단하기 위해서는 IR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결납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회사는 연결납세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회사 중 일부를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연결납세를 할 수는 없다.

연결납세를 하게 되면 연결납세 대상 관계회사간의 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not recognized until the subsequent sale/event occurs). 연결납세 대상 관계회사간의 배당(Dividends by Members)도 내부거래로 취급되어 제거된다. 세액공제(Consolidated Tax Credit) 금액은 연결기준으로 산정되며(determined on a consolidated basis), 적자법인의 손실(Loss)은 흑자법인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연결납세 대상 각 법인의 세무상 익금과 손금을 산정한 후, 연결과정에서 관계회사간의 거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연결납세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연결납세 대상 법인의 각사업연도 세무상 익금 및 손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전체 연결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면 이를 개별 법인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관계회사 간에 세부담에 관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개별 법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비례하여 나눌 수도 있다.



주의

지주회사 설립의 필요성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미국에 투자할 때 미국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직접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모회사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국내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납세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일단 미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동 지주회사를 통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연결납세가 가능하다. 연결납세를 하게 되면 적자가 나는 자회사와 흑자가 나는 자회사의 과세소득을 합할 수 있고, 자회사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소득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M&A를 할 때 지주회사로 하여야 한층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은 외국의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미국 진출기업 중 한국 본사의 미국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가 이에 해당된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세원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내국법인과는 약간 다른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과세방식

외국법인이 얻는 소득은 FDAP 소득(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과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FDAP 소득은 이자소득(Interest), 배당소득(Dividends), 사용료소득(Royalties) 등과 같이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고, ECI는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이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0% 세율(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인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대개의 경우 종결된다. 다만, 외국법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예: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IRC 881(c), 881(e))

외국법인이 ECI가 있는 경우(동 법인이 FDAP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번째 달 15일(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IRS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법인이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사유를 Form 8833에 기입하여 법인세 신고서(Form 1120F)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은 FDAP 소득으로서 30% 세율(외국 법인의 설립지 국가와 미국과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이 미국에서 지급되는 경우, 로열티는 무형자산을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미국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법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예: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IRC 881(c), 881(e)).

(2)사업소득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GI)이 있는 경우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번째 달 15일(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IRS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법인이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GI)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사유를 Form 8833에 기입하여 법인세 신고서(Form 1120F)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자본소득

외국법인이 자산을 매각하여 자본소득(Capital Gain)을 얻은 경우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는 주식, 금융자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의 설립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 다만, 미국 내 부동산 또는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연관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방식 또는 사업소득 과세방식에 따른다.

(4)부동산 양도소득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규정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FIRPTA 규정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물론 총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20일 이내에 Form 8288(US Withholding Tax Return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크지 않은데도 확일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하다 보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으로 보아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번째 달 15일(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IRS에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5)부동산 임대소득

미국 내의 부동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ECI가 없는 경우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a)부동산 임대소득을 FDAP 소득으로 보아 비용공제 없이 총소득에 30%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고, (b)부동산 임대소득을 ECI로 보아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ECI가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과 ECI를 합산한 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세액계산

외국법인의 납세의무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법인의 설립지 국가와 미국과의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한다.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세율이 규정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에는 최고세율(30%)로 원천징수를 한다. 현행 한미 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 로열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

서 적용되는 세율은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외국법인도 세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일반공제(Deductions from Gross Income),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s), 세액공제(Tax Credits)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의 경우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GI)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

외국법인이 FDAP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30% 세율(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인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종결된다.

외국법인이 ECI가 있는 경우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번째 달 15일(12월 말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Form 1120F(U.S. Income Tax Return of a Foreign Corporation)에 의하여 IRS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법인이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GI)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사유를 Form 8833에 기입하여 법인세 신고서(Form 1120F)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CI가 있는(다만,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외국법인이 FDAP 소득이 있는 경우 ECI와 FDAP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되, 이미 납부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ECI가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당해 사업연도 납부 예상세액이 \$500 이상인 경우 외국법인은 매 분기별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연간 세액이 \$200,000을 초과하는 법인은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EFTPS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은 Form 8109(Federal Tax Deposit Coupon)를 이용하여 쿠폰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산 제세



제11장 재산 제세

미국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등 개인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로는 (a)재산을 거래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 즉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거래세(去來稅), (b)재산을 보유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 즉 재산세(Property Tax) 등의 보유세(保有稅), (c)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하는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d)특정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IRS에 대한 납세자의 정보 보고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재산 양도시 또는 상속·증여시, 즉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에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이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세액 계산방식은 한국과 대체로 비슷하나, 몇 가지 점에서는 한국과 현격히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 재산세(Property Tax)가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주정부마다 다르며, 세액도 크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매년 부담할 재산세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자 국가인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세금이 있는데, 일정기준 이상의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인 시민권자나 영주권 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이상 세법상 미국인(정의는 8장의 ‘연방소득세’ 참조)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 출국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국적포기세가 그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고자 하는 재미동포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반드시 국적포기세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납세자가 해외에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금융계좌 또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그 정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성실한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세금보다 더 강력한 페널티(Penalty)가 부과되므로 세금신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는 정보 보고의무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세금으로 한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상 과세대상 소득의 한 종류로 양도소득(Capital Gains)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없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으로 종합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 양도소득, 장기 보유재산 등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므로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면이 많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이를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이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의 하나로 역시 종합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과세대상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Capital Assets)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을 개인적으로 매도, 교환 등을 원인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자

양도자가 세법상 미국인인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인 경우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세액계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양도차익(Capital Gains)을 계산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Basis)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취득원가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등이 포함된다.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원가(Carry-over Basis)로 하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받을 당시의 원가(Stepped-up Basis)로 한다.

미국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이하 STCG)으로 분류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이하 LTCG)으로 분류한다.

STCG는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합산하여 일반세율(2012년 귀속연도까지는 10%~35%, 2013년부터는 특별히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10%~39.6%)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LTCG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2012년 현재 최고 15%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납세자의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납세자의 LTCG에 적용되는 세율은 15%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1년까지는 일반소득이 많지 않아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0%~15%인 납세자는 LTCG에 대하여 면세(0%)가 적용된다. 즉, 일반 소득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LTCG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한편, 2013년부터는 특별히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LTCG에 대해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5%(2013년부터는 2012년 이전의 세율 10% 및 15%구간인 15%로 통합) 및 15%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각각 10% 및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손실 공제

자산을 양도하였는데 손해를 본 경우, 즉 양도손실(Capital Losses)이 발생한 경우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한다. 그리고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0이다.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상계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매년 \$3,000을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의 2011년 일반 종합소득이 \$50,000이라고 가정하고, 그 부부가 2006년에 \$20,000에 취득한 주식을 2011년에 \$10,000에 양도하여 \$10,000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3,000을 일반 종합소득 \$50,000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과세표준(\$47,000)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제 받지 못한 양도손실 \$7,000은 이월하여 2012년부터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하고(한도 없음), 그러고도 순양도손실이 남으면 연간 \$3,000을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

본인 및 가족이 실제 거주하던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했을 경우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부부합산 신고자는 양도소득 \$500,000까지, 그 이외의 납세자는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양도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 및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거주 주택에 대한 면세규정은 매 2년간 한번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비거주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임대한 경우 면세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of 1980)

미국은 FIRPTA 규정을 두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절차를 두고 있다. 외국인(Foreigner)이 미국 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매가액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20일 이내에 Form 8288(US Withholding Tax Return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원천징수 규정은 \$300,000 이하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IRC §1445).

한편, 부동산을 처분한 외국인은 매각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IRS에 매각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1040NR에 의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된다.



참고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금 및 부대비용

주택을 사거나, 팔거나, 보유하는데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1,000,000짜리 주택을 구입하여(이 중에서 \$500,000은 은행융자를 받음) 5년 후에 \$1,200,00에 양도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먼저 주택을 살 때 변호사비(\$1,000~\$2,000), Inspection Fee(\$500~\$1,000, 대지 또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검사하는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500~\$1,000), 은행융자 수수료(약 \$5,000), Title Search Fee(\$2,000~\$3,000, 소유권 및 담보물권 조사비용), 등기 수수료(약 \$200) 등의 명목으로 최소 \$10,000에서 최고 \$20,000까지 비용이 소요된다. 뉴욕의 경우 집을 살 때 융자를 받은 경우 추가적으로 주정부 및 시정부에 Mortgage Recording Tax(융자금액의 2.175%, \$10,875)를 내야 한다. 만약 주택가격이 \$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Mansion Tax(1%)를 내야 한다. 한국과는 달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Broker Fee)는 사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는다. 등기를 할 때 약간의 수수료는 있으나, 취득세 또는 등록세는 따로 없다.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 중 가장 큰 것이 재산세(Property Tax)로서 부담액은 카운티에 따라 다른데, 주택가격 대비 평균 2%(연간 \$20,000)가 소요된다. 또한 잔디 관리, 건물 수리 등에 연간 약 \$3,000,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TV·쓰레기 등에 대한 각종 Utility 비용 연간 \$5,000~\$10,000이 소요된다.

주택을 팔 때는 중개수수료(약 5%, \$60,000), 변호사비(약 \$1,000~\$2,000), 주정부 및 시정부에 대한 Real Estate Transfer Tax(1.425%, \$9,975)가 소요된다. 새로 분양한 주택의 경우 분양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Real Estate Transfer Tax 및 변호사비는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주택을 양도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방 또는 주정부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양도할 경우 부부합산 신고자는 양도소득(Capital Gain) \$500,000까지, 그 이외의 납세자는 \$250,000까지 연방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소유하면서 본인 및

가족의 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거주 주택에 대한 면세규정은 매 2년간 한번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상속세(Estate Tax)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후손에게 넘어가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의 경우 상속재산(Estate) 그 자체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유한 납세번호(EIN)가 부여되며, 유언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이 상속세를 계산하여 IRS에 납부한 후에 잔여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한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는 무한정 공제가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 시 이전하기로 한 재산, 취소가능신탁의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부적합한 증여 및 매도로 이전한 재산, 공동소유권의 피상속인의 지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Power of Appointment)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간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상속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거주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사망시, 또는 증여시 미국에 'Domicile'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체류일수 기준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Domicile'이 어디에 있는 지에 따라 거주자여부를 판단하며, 'Domicile'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Domicile'을 얻기 위한 법적능력(legal capacity), 실질적인 현존(physical presence), 현재의 체류의사(present intention) 등을 고려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사람들은, 이후에 이동해서 나갈 것이라는 명확한 의사가 현재 상황에서 없는 한, 어떤 장소에 삶으로써 - 심지어 잠시

살더라도 ‘Domicile’을 가지게 된다”, "항구적으로 머무르려는 의도가 없이는 domicile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단 domicile이 성립되면 그 domicile을 실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훗날 domicile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는 domicile이 바뀌지 않는다"는 등 ‘domicile’을 설명하고 있다.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시가(Fair Market Value)가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2012년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와 상속세법상 거주외국인에 대한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과 증여를 합하여 \$5,120,000이다(통합세액공제 금액으로는 \$1,730,800).

피상속인이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부동산, 동산, 주식, 사채, 조합지분 등)이 \$60,000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지 국가에서도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거주지 국가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이 하는데,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서 지정한 유언 집행인(Executor),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유산관리인(Administrator), 유언집행인이나 유산관리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자 또는 기관이 대리인이 된다. 대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번호를 신청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부채 변제 및 재산 분배를 수행한다.

세액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여기에서 장례비용, 유언 집행비용, 부채 등을 차감하고,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 기부금공제(Charitable Deduction), 주정부 상속세 공제(State Death Tax Deduction)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상속재산 가액을 산출한다.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이다. 즉, 상속재산이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비거주자인 경우 적격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을 제외하고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외국인인 경우로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제한된 일부공제(기부금공제,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공제 등)와 \$13,000의 통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1976년 이후 증여한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누진 상속세율(2012년의 경우 최고 35%까지)을 적용하여 잠정 상속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상속세액에서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납부 증여세 등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미국 시민권자와 상속세법상 거주외국인이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면 2012년의 경우 \$5,120,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 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또는 동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미국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체가 상속재산의 35%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 서류,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사본, 주정부 상속세 납부확인 서류, 재산평가 서류, 증여세 보고 서류 등이다.

주정부 상속세

미국의 많은 주 정부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하여 주정부 상속세 신고 및 납세를 요구한다. 현재 주정부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는 다음과 같다.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llinois,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Oregon, Rhode Island, Tennessee, Vermont, Washington.



참고 유연장 작성의 필요성

한국의 경우 유연장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유연장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다. 유연장을 작성하는 경우 유연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고, 유연장에서 지정한 유언 집행인(Executor)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므로 사망자의 뜻대로 상속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사망 전에 절세가 가능하도록 상속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유산관리인(Administrator)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상속이 집행될 수도 있다. 유언장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증여세

미국의 증여세(Gift Tax) 과세방식도 한국의 증여세와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수증자(Donee, 받는 사람)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 증여자(Donor, 주는 사람)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이 재산을 증여할 때는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 부담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과세대상

증여세는 증여자(Donor)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상대방, 즉 수증자(Donee)에게 재산을 수여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는 부분에 한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까지 부담하라는 논리가 배어 있는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증여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미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미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 외국인의 개념은 상속세법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위 ‘상속세’에 대한 설명 참조.



사례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례

한국의 경우 수증자(Donee,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중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증여자 거주지 | 수증자 거주지 | 재 산 소재지 | 미 국 증여세 | 한 국 증여세 |
|------------|------------|------------|------------|------------|
| 미 국 | 미 국 | 미 국 | 과 세 | 비과세 |
| 미 국 | 미 국 | 한 국 | 과 세 | 과 세 |
| 미 국 | 한 국 | 미 국 | 과 세 | 과 세 |
| 미 국 | 한 국 | 한 국 | 과 세 | 과 세 |
| 한 국 | 미 국 | 미 국 | 과 세 | 비과세 |
| 한 국 | 미 국 | 한 국 | 비과세 | 과 세 |
| 한 국 | 한 국 | 미 국 | 과 세 | 과 세 |
| 한 국 | 한 국 | 한 국 | 비과세 | 과 세 |

증여공제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자(Donor) 1인당 각 수증자(Donee)에 대하여 2012년 현재 \$13,000이다. 즉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13,000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13,000을 증여하는 경우(총 \$39,000)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2012년의 경우 \$5,120,000이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13,000)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비과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육비(수업료)를 직접 교육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연간 \$139,000(2012년 기준)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액계산

증여세는 건별로 또는 연도별로 분리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한 것을 합산하되, 1년 단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1년간 연간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의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단체 기부공제 등을 차감하여 연간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Lifetime Taxable Gifts)을 구한다.

여기에 누진 증여세율(2012년 최고 35%까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잠정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증여세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합세액공제(최대 통합세액공제에서 이전 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를 차감하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산출된다.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면 2012년의 경우 \$5,120,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 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신고 및 납부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경우 또는 증여자가 비거주외국인인 경우로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 자산을 증여한 경우 연간 증여세 면제액(\$13,000)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자(Donor) 1인당 각 수증자(Donee)에 대하여 \$13,000이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액(\$13,000)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증여(Split Gifts)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증여 보고

미국시민권자 또는 소득세법상 거주외국인이 소득세법상 외국인(foreign person) 또는 외국상속재산(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또는 \$14,139를 초과하여 외국 법인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증여가액의 5%(최고 25%까지)에 상당하는 Penalty를 부과한다.

재산세

재산세(Property Tax)는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소재하는 지방정부(카운티 또는 타운)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재원은 경찰서, 소방서, 공립학교, 도서관 등의 유지에 사용된다. 재산세 과세방식 및 세율은 미국 각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다.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 재고품, 자동차, 항공기, 선박, 주식, 채권, 회원권, 저작권 등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어느 정도 고정된 위치를 가지거나 과세관청에서 포착이 가능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세액계산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산평가는 대부분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하나, 실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한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시가는 대개 카운티 평가관(County Assessor)이 평가하고, 납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새로 구입하거나 건설한 재산은 실제 구입가격 또는 건설가격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부할 세액은 과세가격에 재산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세율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데,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볼 때 2% 내외이다. 카운티 또는 타운에 따라서 과세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세율은 높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저소득층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납부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부과방식으로 과세되며, 재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카운티 또는 타운에서 납세고지서를 재산 소유자에게 발송하며, 세금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2번 또는 4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부한 재산세는 연방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적포기세

미국의 경우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로서 미국에서 소득 또는 재산을 축적하여 혜택을 누린 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오기 전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의 탈세 또는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08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라는 독특한 세금을 신설하였다. 국적포기세는 일정한 조건의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 출국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

2008년 6월 16일부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그 포기일(이하 편의상 ‘국적포기일’이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이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12년 출국자의 경우 \$151,000)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고소득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 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세액계산

국적포기일 현재 전 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양도소득 \$636,000(2011년 기준)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5%)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일 또는 재산의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 연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세금납부

국적포기를 하는 자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서,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Form 8854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적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

유의사항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12년 출국자의 경우 \$151,000)을 초과하거나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인 자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에 있

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민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있는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 가치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를 계산한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국적포기세를 계산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나중에 동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당해 국가에서 취득가액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적을 포기하면서 재산도 함께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A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2011년 역이민을 갔는데, 국적포기일 현재 미국에 시가 \$1,000,000짜리 주택 1채(2001년 \$500,000에 취득), 한국에 시가 \$3,000,000짜리 상가 1동(1995년 \$1,500,000에 취득)이 있었다. 이 경우 A는 주택과 상가를 국적포기일 현재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주택 양도차익 \$500,000, 상가 양도차익 \$1,500,000 합계 \$2,000,000에서 \$636,000을 차감한 \$1,364,000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에 A는 미국에 있는 주택을 \$1,500,000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주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A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동 주택은 국적포기세가 과세된 재산이므로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가 \$1,000,000을 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500,00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016년에 A는 한국에 있는 상가를 \$4,000,000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A는 한국 거주자이고, 상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가액 \$1,500,000로 하게 된다. 따라서 A는 양도가액과의 차액 \$2,500,000에 대하여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상가 양도차익 중 \$1,500,000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적포기세와 한국의 양도소득세

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적포기일 이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

해외 금융계좌 보고제도(FBAR, 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금융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의 규정에 따라 1970년에 생긴 제도이나,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테러와의 전쟁,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IRS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FBAR가 중요한 이유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상 벌칙(civil penalty)이 매우 과중하다는데 있다. 고의가 있는(Willful) 경우 \$100,000 또는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을 민사상 벌칙으로 부과하므로 고의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계좌 잔고 전체를 민사상 벌칙으로 납부하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FBAR는 매년 보고해야 하고 민사상 벌칙을 매년 계산하므로 계좌 신설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보고하고자 하여도 그동안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이 과중하여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고내용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전년도(Calendar Year)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IRS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Form TD F90-22.1에 작성하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 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FBAR와는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금융계좌의 잔고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모든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FBAR 대상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Form 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III에서 Yes 또는 No 표시를 하여야 한다).

미보고에 대한 벌칙

FBAR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력한 벌칙이 가해지는데, (a)FBAR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b)FBAR 대상 금융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벌칙으로 나눌 수 있다.

FBAR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민사상 벌칙은 (a)고의가 없는 (Non-willful) 경우 계좌당 \$10,000, (b)고의가 있는 경우(Willful) \$100,000 또는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다. 주의할 점은 민사상 벌칙은 매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계좌 잔고가 적더라도 \$100,000의 벌칙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한편, 본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고의가 없는 경우’로 간주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한편, 소멸시효는 6년이다.

FBAR 대상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누락한 소득세, 이자상당액,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가산세(重加算稅) 및 형사상 처벌이 가해진다.



주의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좌인데, FBAR를 이행하여야 하나?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한국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FBAR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도 FBAR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재원으로 와서 보고하지 않다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보고하려고 하면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때문에 나중에 바로잡기가 힘들다. 일시적으로 개설한 금융계좌도 보고하여야 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통장에 아파트 월세가 들어오고, 잔고가 \$10,000이 넘는 경우 : 동 계좌에 대하여 FBAR를 이행하여야 하고, 아파트 월세는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 한국에 은행계좌를 새로 만들어 \$100,000을 송금한 후, 즉시 인출하여 (이자소득 없음) 아파트를 사고, 계좌를 폐쇄한 경우 : 연도 중에 \$10,000이 넘는 금융계좌가 있었으므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FBAR를 이행하여야 함. 다음 해부터는 금융계좌가 없으므로 FBAR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
- ▷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고, 매매대금 \$100,000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경우(이자소득 있음) : 은행계좌에 대하여 FBAR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득세 신고 시 아파트 양도소득 및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금융계좌는 없음) : 금융계좌가 없으므로 FBAR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해외 금융 자산 보고

해외 금융자산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고, 해외 재산의 유입을 통한 미국 내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해외 금융자산 보고제도가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FBAR 제도와 유사하나, 보고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납세자는 종전의 FBAR도 이행하여야 하고, 해외 금융자산 보고도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내용

2011년분부터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합하여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50,00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납세자이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는 보고의무자에 해당된다.

보고대상 자산은 모든 해외 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이며,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주식 또는 출자지분(Interest in a Foreign Entity),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투자계약(Contract Held for Investment) 등을 포함한다.

종전 FBAR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만 보고대상이었으나, 해외금융

자산보고에 있어서는 보고대상 재산의 범위가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되었다. 개인 납세자는 FBAR와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둘 다 이행하여야 한다.

미보고에 대한 벌칙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00에서 최대 \$50,000의 민사상 벌칙이 있다. 벌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는 FBAR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미신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미신고 세금이 있으면 이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그 외 형사상 처벌이 있을 수 있다.

제12장 원천징수



제12장 원천징수

원천징수(Withholding)는 특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Payer)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Recipient)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 편리하고, 탈세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납세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한 과세방식이다.

원천징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a)종업원(Employee)에 대한 원천징수, (b)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Foreign Entity)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분할 수 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국의 1)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FIRPTA 관련 원천징수, 그리고 3) 기타의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있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통상적으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세율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낮은 세율) 또는 원천징수 요율표(Withholding Table)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소득을 지급할 때 획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을 반영할 수 없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상 원천징수를 한 소득에 대하여 다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한다.

원천징수는 일종의 협력행위이지만, 사업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경우 또는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가산세(Penalty)가 부과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지게 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Penalty)가 부과된다.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종업원(Employee)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주(Employer)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대한 종업원 부담분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방 정부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고용주에게만 부과)의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데,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과 고용주가 부담할 몫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자유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등과 같은 자영업자(Self-employed)는 본인의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종업원 부담분 또는 고용주 부담분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Unemployment Tax 등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Employer)는 세금신고서를 위하여 IRS에 고용주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신규 종업원으로부터는 고용 즉시, 기존 종업원으로부터는 종업원의 인적신규형태의 변경(Personal Changes,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 또는 경제상태의 변경(Financial Changes,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1일까지)이 있는 경우, Form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새로 받아야 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종업원이 있다면, 이 종업원은 Form W-4를 매년 2월 15일까지 고용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orm W-4에는 인적공제 및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사항 등을 기재하며,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Form W-4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종업원에게 임금, 수당, 보너스 등과 같은 근로소득(Wages)을 지급하는 경우 IRS가 정한 원천징수 요율표(Withholding Table) 또는 정해진 퍼센티지에 의하여 연방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요율표는 미혼 또는 기혼 여부(Single Persons or Married Persons),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의 수, 소득 지급주기, 지급액 등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할 비율 등을 제시한다.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연방 개인소득세는 고용주 부담분 또는 종업원 부담분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기타 연방정부 세금과 함께 연방정부 계좌에 납부(Deposit)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분기종료 후 1개월(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이내에 분기별 원천징수 현황을 Form 941(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에 의하여 IRS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Deposit)한 세액을 차감하여 잔여 세액을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EFTPS)에서 전자세금납부(Electronic funds transfer)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수표 또는 현금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Form 941으로 신고하고 연방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1) Form 941을 신고하는 분기 또는 신고하는 분기 직전 분기의 원천징수 납세의무금액이 (Total Tax Liability) \$2,500 미만이며, Form 941을 신고하는 분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100,000미만인 고용주, 또는 2) 월 단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고용주로서 원천징수세액을 Accuracy of Deposit Rule에 따라 납부한 고용주.

연간 원천징수 세액이 \$1,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IRS로부터 승인을 받아 Form 944(Employer's Annual Federal Tax Return)에 의하여 1년에 한번 원천징수 현황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종업원 개인별 근로소득 지급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Form W-2(Wage and Tax Statement)를 종업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2월 28일까지 종업원 개인별 Form W-2를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종업원 팁에 대한 세무처리

서비스 업종의 경우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팁을 받거나, 고객이 결재를 할 때 매상과 팁을 함께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거나 팁에 대한 세무처리는 고용주가 담당한다.

팁을 받은 종업원은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Form 4070(Employee's Report of Tips to Employer)에 의하여 본인이 받거나 본인에게 배분된 팁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한다. 고용주는 종업원 팁에 대하여 일

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과 고용주가 부담할 몫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독자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요율표를 가지고 있으며, 동 요율표에 의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당해 주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정부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종업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느 주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주를 기준으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종업원이 1년에 한번 주정부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다른 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와 유사)를 받는다.

 사례 뉴저지 주의 경우

뉴저지 주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주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뉴저지 주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요율표(Withholding Table) 또는 정해진 퍼센티지에 의하여 종업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뉴저지 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매년 뉴저지 주정부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세율 1.4%~8.97%), 이 때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다. 만약, 종업원이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뉴욕 주에 거주하는 경우 동 종업원은 1년에 한번 뉴욕 주에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세율 4%~8.97%), 이 때 뉴저지 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뉴욕 주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개인소득세 협정(Reciprocal Personal Income Tax Agreement)을 맺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주에서만 주정부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뉴저지주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주가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하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종업

원이 Form NJ-165(New Jersey Certificate of Nonresidence)를 고용주에게 제출한 경우 고용주가 펜실베이니아 주의 세법의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 펜실베이니아 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Social Security Tax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연방정부 세금으로 노령자, 유족,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6.2%(2011, 2012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4.2%)를 종업원 부담분 Social Security Tax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Social Security Tax는 상한선이 있는데, 2011년의 경우 근로소득 \$106,800까지만 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한다.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가 부담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6.2%, 2011, 2012년의 경우에도 6.2%)의 고용주 부담분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Social Security Tax를 과다납부한 경우(복수의 직장에서 함께 \$106,800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에 발생) 종업원은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 시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Medicare Tax는 역시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것이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1.45%를 종업원 부담분 Medicare Tax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Medicare Tax는 Social Security Tax와는 달리 상한선이 없다.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가 부담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1.45%)의 고용주 부담분 Medicare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연방정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분과 함께 신고 및 납부한다. Form 941, Form 945, Form W-2에 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고용주는 다음해 2월 28일 까지 연방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종업원 개인별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의 부담내역이 기재된 Form W-3(Transmittal of Wage and Tax Statements) 및 Form W-2(Wage and Tax Statement) A페이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에 온 경우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을 서로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납부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에 온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18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 합산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을 출국한 후에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년을 경과하게 되면 만 60세 이후에 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한국에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미국에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합산신청(Claims for Benefits)을 하여야 한다.

한국계 기업의 주재원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전제 하에 기본 5년, 추가 3년, 최대 8년 동안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 받아 미국 사회보장청에 제출하면 된다.

실업세(Unemployment Tax)

실업세(Unemployment Tax)는 직업을 잃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재교육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실업세에는 연방정부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와 주정부 실업세(State Unemployment Tax)가 있다.

연방정부 실업세는 고용주가 부담하며, 종업원 1인당 연간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6.2%를 부담한다. 주정부 실업세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연간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주마다 다르다(2012년 뉴욕 주의 경우 업체별 고용과 해고상황에 따라 1.5%~9.9%). 고용주가 주

정부 실업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방 실업세를 최대 5.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한 연방 및 주정부 실업세는 고용주의 사업상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년 분기종료 후 1개월(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이내에 납부할 실업세가 \$50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납부(Deposit)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 31일까지 Form 940(Employer's Annual Federal Unemployment Tax Return)에 의하여 실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종업원에게 실업기금(State Unemployment Funds) 또는 장애기금(State Disability Funds)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업원이 납부한 기금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연방 개인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주의 **종업원 vs. 자유계약 사업자**

종업원(Employee)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나, 자유계약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기업이 종업원을 자유계약 사업자로 위장하여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RS는 세무조사를 할 때 자유계약 사업자로 분류한 자가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자유계약 사업자가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원천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회사가 자유계약 사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있어서 (a)회사의 조직도, 전화번호부, 이메일 계정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b)정기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c)회사의 결재를 받거나, 출퇴근 또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받는 경우, (d)회사가 컴퓨터, 책상,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e)회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 (f)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 내의 소식을 공유하는 경우 등은 형식상 자유계약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판정될 수 있다.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종업원의 경우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고용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자유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등과 같은 자영업자(Self-employed)는 자기 혼자 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 즉 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하여야 한다. 2011년의 경우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Social Security Tax는 소득 \$106,800까지 12.4%, Medicare Tax는 2.9%를 부담한다.

고용주 부담분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가 고용주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부담한 Self-employment Tax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영업자 본인의 개인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s), 보험금(Insurance) 관련 원천징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은 아니나, 회사(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퇴직 종업원에게 연부금 또는 양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IRC §3405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면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연부금 또는 양로연금을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IRA(개인연금),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에 근거하여 연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의 연부금(Annuities) 또는 양로연금(Pensions)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a)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b)비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르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며, 기혼자(Married Individual)로서 3명의 인적공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를 한다. 비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Foreign Person), 즉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법인(Foreign Entity)의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된다.

여기에서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이라 함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 등 세법상 미국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외국법인(Foreign Entity)이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Corporations), 파트너십(Partnerships), 신탁(Trusts), 상속재단(Estates) 등으로서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외국인의 미국 원천소득은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와 ECI 이외의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ECI는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 한편, ECI 이외의 미국 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외국인의 ECI 이외의 미국 원천소득에는 1)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소득, 2) FIRPTA 관련 소득 및 3) 기타의 경우 등이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통상 다음해 3월 15일까지 Form 1042(Annual Withholding Tax Return for US Source Income of Foreign Persons) 및 Form 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1)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FDAP 소득은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이자(Interest), 배당(Dividends), 사용료(Royalties), 근로소득(Wages), 할인발행차금(Original Issue Discount),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s), 보험금(Insurance) 및 무형자산 양도 관련 Contingent Payment 등이 있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 상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현행 한미 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 로열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이다. 다만, 비거주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조세조약에 의한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Form W-8BEN(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을 제출하여 본인의 거주지, 미국의 납세번호(TIN,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하나, SSN이 없으면 별도의 TIN을 IRS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소득의 실제 귀속자 등을 밝혀야 한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FDAP 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ECI가 있는 경우 두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건 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거주지 국가에 세금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동 근거서류가 없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근로소득(Wages)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다. 다만, 비거주자는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가장(Head of Household)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독신(Single) 신고유형을 가정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FDAP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미국내 사업수행에 해당하여 외국인도 거주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어디서 근무를 했는가가 중요하므로 미국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미국에서 받았든 외국에서 받았든 미국에 납

세의무가 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183일 미만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3,000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 미국에서 면세가 된다.

한미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근거하여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주재원에 대해서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할인발행차금(Original Issue Discount)

일반적으로 할인발행차금은 FDAP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할인발행채무가 만기상환 되거나 또는 만기상환 이외의 이유로 처분되는 때, 비거주자가 할인발행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경과이자도 FDAP 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천징수한다.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s), 보험금(Insurance)

비거주자에게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s), 보험금(Insurance)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IRC §3405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를 선택할 수 없다.

2) FIRPTA 관련 원천징수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에 따라 그 양도소득을 ECI로 간주하고 원천징수 한다.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는 1) 토지, 채굴되지 않은 자연자원 또는 수확되지 않은 농산물의 소유, 2) 부동산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진 건물 등, 개량물(Improvements)의 소유 또는 3) 토지를 개발 및 사용하는데 밀접하게 연관된 동산의 소유가 있다. 부동산을 간접 소유한 경우는 외국인이 미국부동산과다보유법인(U.S. Real Property Holding Company)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있다. 미국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회사가 소유한 미국부동산의 공정시가가치 미국부동산의 공정시가가치, 해외부동산의 공정시가가치 및 사업에 사용

되는 자산의 공정시가가치를 더한 값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회사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으로 FIRPTA가 적용된다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양도가액의 10%를 동 외국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후, 20일 이내에 Form 8288(US Withholding Tax Return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과 Form 8288-A(Statement of Withholding on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덧붙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IRS에 Form 8828-B(Application for Withholding Certificate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를 제출하여 부동산 양도가액에 10%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미화 300,000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였고 법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2) 미국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 주식을 처분했으나, 동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처분일 기준으로 과거 5년의 기간 동안 한 차례라도 5%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3) 처분된 자산이 미국 법인의 지분이며, 그 미국 법인이 미국 부동산과 관련된 지분이 처분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양도인에게 발급하였고, 당 미국 법인은 과거 5년 동안 미국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던 경우, 4)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 증명서에는 양도인의 이름, 미국 납세번호 및 거주지 주소가 적혀있는 경우, 5) 양도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징수가 면제됨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IRS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6)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이 면제되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등이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크지 않은데도 확일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하다 보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을 ECI로 보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시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3) 기타의 경우

자본이득(Capital Gains)

비거주외국인이 자본 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자본 자산이 미국 내에서 사업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면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미국 법인이 과세되는 것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그러나 그 자본 자산이 미국 내에서 사업과 연관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외국인이 미국에 183일 미만을 체류했다면 자본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자본 자산을 처분하였고 그 자산이 FDAP 소득이 아니며 FIRPTA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의 세율로 (한미 조세조약상 비과세) 원천징수 한다. 미국 세법에서 자본자산은 다음에 나열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1) 재고자산, 2) 납세자의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 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4)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자산 5)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6) 저작권, 문학, 음악, 또는 예술작품, 편지 또는 비망록,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특허권 또는 발명품은 제외)으로서 이를 만들어 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본자산으로는 주식, 금융자산, 개인용 자산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소득(Business Income)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미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동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은 ECI에 해당되므로 거주자 또는 미국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미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으면 사업소득을 얻더라도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만약,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파트너십 소득(Allocable Share of Partnership Income)

파트너십 소득의 경우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하는데, 파트너가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위와 같은 과세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IRC §1446에서는 파트너십에 ECI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 파트너가 비 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파트너십이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 소득(Allocable Share of Partnership Income)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따르는 다른 회사조직(Pass Through Entity)도 동일하다. 원천징수 세율은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외국 법인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의 ECI 소득의 원천징수는 파트너에게 그 소득을 지급 하지 않아도 해야 하며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ECI 소득에서 그 파트너에 게 할당할 수 있는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Effectively Connected Taxable Income, ECTI)을 매 분기마다 원천징수 하고 Form 8813(Partnership Withholding Tax Payment Voucher)과 같이 IRS에 납부한다.

파트너십은 Form W-8IMY, Form W-8BEN, 또는 Form W-9 등의 서식에 의해 파트너의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신분 및 개인 또는 법인의 신분을 IRS에 보고해야 하며 동 서식은 해당 파트너가 작성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혹은 파트너십의 과세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4번째 달의 15일까지 Form 1065(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의 파트너십 소득과 각 파트너에게 귀속 되는 파트너십 소득을 보고한다. 파트너십은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 인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 소득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Form 1065에 Form 8804(Annual Return for Partnership Withholding Tax)을 첨부하여 파트너십 소득의 원천징수 현황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트너십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혹은 파트너십의 과세연도가 종료된 날 로부터 4번째 달의 15일까지 비거주외국인 파트너 또는 외국법인 파트너 에게 할당된 ECTI와 해당 파트너에게 배분되어질 수 있는 세액공제금의

정보를 Form 8805(Foreign Partner's Information Statement of Section 1446 Withholding Tax)에 기입하여 IRS 및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파트너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IRS에 매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학생·교직자 소득

미국을 방문한 학생, 교직자, 연수생, 전문가 등이 과세대상 장학금 또는 교부금(taxable scholarship and grants) 등을 미국에서 지급받는 경우 미국에 ECI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학생의 학비와 관련비용(tuition and related expenses) 한도내에서 총소득에서 제외되며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한미 조세조약은 제21조(학생 및 훈련생)에서 미국세법에 우선하여 체제국에서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납부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연방정부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세액을 연방정부 계좌에 납부(Deposit)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원천징수 상황을 IRS에 보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Form 1042(Annual Withholding Tax Return for US Source Income of Foreign Persons) 및 Form 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해 3월 15일까지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의 의무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원천징수 현황을 분기종료 후 1개월(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이내에 Form 941(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에 의하여 IRS에 신고하고, 각각의 분기말까지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Deposit)한 세액을 차감하여 잔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원천징수 세액이 \$1,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IRS로부터 승인을 받아 Form 944(Employer's ANNUAL Federal Tax Return)에 의해 1년에 한번(다음 해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 현황을 보고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 세액이 연간 \$50,000을 초과하는 고용주는 2주 단위로(수~금요일 지급하는 경우 바로 뒤 수요일까지, 토~화요일 지급하는 경우 바로 뒤 금요일까지), \$50,000 이하인 경우 월 단위(다음 달 15일까지)로 전자납부(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함이 원칙이며, 연방정부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에 납부할 세액이 \$100,00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지난 분기 또는 금번 분기에 납부할 세액이 \$2,500 미만인 경우 분기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년 2월 28일까지 IRS에 W-2를 제출하여 그 해에 종업원에게 지급된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보고하여야 하며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W-2를 발송하여야 한다.

소득 지급자에 의한 소득 정보 보고(Information Return)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등이 미화 \$600 이상을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또는 이자, 배당, 주식 거래 소득, 사용료, 임금, 임차료, 연부금, 양로연금 등을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Form 1099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납세번호, 연간 지급액 등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동 소득을 매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총소득(Gross Income)에 합산하여야 한다. 한편 IRS는 금융기관 또는 일반 법인이 보고한 정보를 기초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다.

Form 1099에 의하여 과세정보가 IRS에 보고되는 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으며(일부 보고면제되는 경우 있음)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

받는 자에게 Form 1099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IRS에도 다음해 2월 28일까지 Form 1099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자(Interest Payments) : Form 1099-INT
- ▷ 배당(Dividends) : Form 1099-DIV
- ▷ 주식거래 소득(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 : Form 1099-B
- ▷ 사용료(Royalty Payments), 자유계약 사업자에 대한 대가(Commissions, Fees, or Other Payments), 임차료 또는 기타소득(Rents, Profits, or Other Gains) : Form 1099-MISC
- ▷ 할인발행차금(Original Issue Discount): 1099-OID

또한 연방정부에 Information Return을 제출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득 지급자(Payer)는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특정 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Recipient)가 Form W-9(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을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Form W-9에 자신의 납세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Recipient)가 지급자에게 납세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납세번호를 제시하거나, 소득 과소신고 또는 납세번호 허위제출 전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시스템에 의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우므로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28%의 단일세율로 예비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여야 한다.

소득을 얻는 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을 얻는 자가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하고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소득을 얻는 자가 (a)거주자 또는 미국법인인 경우, (b)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처리가 다르다.

소득을 얻는 자가 시민권자·거주외국인 또는 미국법인인 경우 동 시민

권자·거주외국인 또는 미국법인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을 얻는 자가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의 종류가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인가 또는 ECI이외의 소득인가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다르다. 이자(Interest), 배당(Dividends), 사용료(Royalties) 등과 같은 FDAP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반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ECI의 경우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정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제13장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제13장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특수관계기업(또는 특수관계있는 개인) 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특수관계란 모·자회사, 본·지점과 같이 지분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인해 일방 기업이 타방 기업에 실질적으로 종속(controlled)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모회사나 본점은 통상 다국적기업 전체, 본지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다르게 이전가격을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회사나 지점에 대하여 원재료나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거나, 용역제공 대가를 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브랜드 사용료, 기술 사용료를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모회사 또는 본점이 정한 이전가격으로 국제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회사나 지점 등은 높은 영업성과를 거두고도 재무상 영업 이익이 아주 미미하거나 심한 경우 영업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자회사나 지점 등이 거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무상 영업이익은 아주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결과 관련 특수관계 기업의 세금이 왜곡될 수 있으며, 심지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세무당국은 특수관계기업 간의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에 매우 공격적인 나라에 속한다. 미국 내국세법(IRC) §482에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며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IRS의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IRS는 2006년 9월 영국의 모 다국적기업의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여 사상 최고액수인 약 3조 4,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TV 등 첨단 고가제품의 대미수출이 증가하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브랜드파워가 커짐에 따라 점차 우리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이 커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특수관계기업 간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인 이전가격 세제,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세무 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상가격

일반적으로 두 기업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아무런 지배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관계라면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이전가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독립기업 간의 거래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고 한다.

이전가격 세제는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세제이다. 이전가격 세제는 조세회피 등의 고의가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거래와 조건이 동일한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찾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거래(Controlled Transaction)와 정상가격이 반영된 비교대상거래(Comparable Transaction)를 서로 비교하여 합리적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비교대상거래는 특수관계거래와 유사한 상황 하에 있는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선정한다.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두 거래 간의 중요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할 수 있다. 두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능, 위험, 계약조건, 경제적 여건, 자산 또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g. §1.482-1(d) 참조]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과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기업(independent companies)을 선정하여 합리적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 이익율을 산출한다.

기능(Function)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과 비교대상기업(Comparable Set)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R&D, 제품 디자인, 조립, 마케팅, 보증관리, 운송 및 보관 등 여러 기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 내 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미국 내 회사의 유통 관련 기능을 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현지기업이 수수료 판매(Commission Sale)를 하는지 또는 도매(Wholesale)를 하는지에 따라 비교대상기업이 달라질 수 있

다. 미국 현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 현지기업이 반제품 가공과정 만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원재료 조달부터 부품 생산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비교대상기업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유통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시장확대를 위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자회사가 부담하는 수준이 비교대상기업이 부담하는 수준을 초과하고 비교대상기업과의 마케팅비용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케팅 비용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와 같이 마케팅 비용을 조정하게 되면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자회사가 부담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모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증가할 경우 모회사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가격과세를 당할 수 있다.

위험(Risks)

재화 및 용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시장 위험, 연구개발 위험, 금융 위험, 신용 및 자금회수 위험, 재고자산 위험, 일반적인 사업상 위험 등이 있는데,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교대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유사해야 한다. 위험이 유사하지 않으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참고 해외진출 초기 영업손실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 초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영업손실은 일반적으로 사업전략상 시장침투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책정했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창업비 또는 마케팅 비용을 추가지출한 것 등에 기인한다. 이처럼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IRS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모회사 등 특수관계기업 간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전가격 과세를 위해 비교가능성을 검토할 때 사업전략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권고에 따라 IRS는 미국 내 자회사의 사업활동이 사업전략과 일치하는지, 사업전략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사업전략 이행 시 발생한 비용을 정당화할 만한 이익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창업 초기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사업전략 상 발생한 것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준비한다면 이전가격 과세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교대상기업이 그러한 사업전략을 이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가격 과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계약조건(Contractual Terms)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대상거래를 비교할 때는 각 거래계약 상의 대금지급조건, 수량, 내용연수, 보증 등의 계약조건들을 검토하여 차이가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상 대금 결제 통화를 원화로 하느냐 달러로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차손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주요 논쟁 사안이다.

경제적 여건(Economic Conditions)

구매자와 판매자에 있어서 대체시장, 지리적 시장의 유사성, 시장규모 및 구성 등 특수관계거래와(또는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거래를(또는 비교대상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여건들이 유사해야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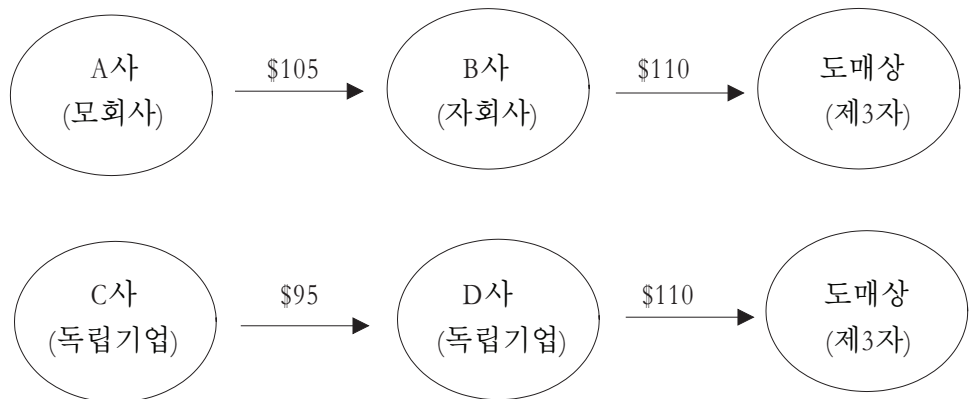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전통적이고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관계거래와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래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한 거

래조건 하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가격법, 원가가산법, 비교가능이익법, 이익분할법 등 대표적으로 5가지 방법이 있다.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예를 들어 한국 A사가 미국 내 판매 자회사 B사를 통해 에어컨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자. A사는 B사에 대당 \$105에 에어컨을 공급하고 있으며 B사는 미국 시장에서 대당 \$110에 판매하고 있다. 일본 C사로부터 에어컨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D사는 대당 \$95에 수입하여 \$110에 판매하고 있다. C사와 D사는 독립기업 관계에 있다.



만약 A사가 생산하는 에어컨이 C사에서 생산하는 에어컨과 제원(諸元), 성능, 제품 인지도, 거래조건 등 이전가격의 제반측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C사가 독립기업인 D사에게 판매하는 \$95이 정상가격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IRS가 B사에 대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한다면 제품의 고가매입이 부당하다고 하여 고가 매입분 \$10(\$105-\$95)을 손금 불산입(비용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B사의 과세 소득금액은 \$10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독립기업 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이라 한다.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이지는 하나, 제원, 성능, 제품 인지도, 거래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을 찾기란 극히 어렵다. 오늘날 기업은 수많은 종류와 사양의 제품을 취급하므로 실무적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M)이란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재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비교대상기업의 재판매 매출총이익율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제품 자체가 아닌 기업 활동(기능)에 중점을 두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제품의 동일성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앞의 사례에서 동일한 에어컨을 판매하는 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으나,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판매하는 비교대상기업의 재판매 매출총이익율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의 기능, 위험, 계약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분석대상기업(E사)과 비교대상기업(F사)의 매출총이익율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 구 분 | 분석대상기업(E사) | 비교대상기업(F사) |
|---------|------------|------------|
| 매 출 | \$110 | \$105 |
| 매 출 원 가 | \$105 | \$95 |
| 매출 총이익 | \$5 | \$10 |
| 매출총이익율 | 4.5% | 9.5% |

위 표에서 비교대상기업 F사의 매출총이익율은 9.5%(10/105)인 반면 분석대상기업 E사의 매출총이익률은 4.5%(5/110)에 불과하다. 결국 E사의 영업이익이 F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이 경우 독립기업 간의 거래

가격보다 높은 이전가격을 책정하여 E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간주하고 E사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즉 E사의 정상 매출총이익율을 비교대상 기업인 F사의 매출총이익율 9.5%를 적용하여 이전가격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E사의 정상 매출총이익은 \$10.5(\$110×9.5%)가 된다.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M)은 분석대상기업의 원가에 비교대상 기업의 통상 마진율을 부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주로 용역 제공업이나 제조업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수리에 인건비, 재료비 등의 원가가 \$100이 소요되었는데 마진율을 20%로 하여 총 \$120을 특수관계기업에 지급하였다고 하자. 만약 수행기능과 부담위험이 유사한 독립기업 간의 통상마진율이 10%라면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10만큼 소득이 이전된 것이다.



주의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대상거래의 차이 조정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대상거래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차이는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거래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재고부담 없이 상품을 제조하는데 반하여, 비교대상거래에서는 독립기업이 재고를 가지고 상품을 제조할 경우 당해 비교대상기업은 특수관계거래와 달리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재고위험과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원가가산법을 적용할 경우 재고위험과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가를 고려하여 차이조정을 하여야 한다. 차이조정 사례로는 회계기준 차이에 따른 조정,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래의 제거, 그리고 기능·자산·자본·위험 등의 차이에 따른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비교가능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거래순이익율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미국에서는 비교가능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CPM)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단위 거래의 개

별적 가격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률을 비교해서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외에 입수할 수 있는 재무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개별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와 같이 분석대상기업(G사)의 영업이익률이 1.91%이고, 비교대상기업(H사, I사, K사)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8.67%, 2.22%, 4.17%(3개 사 평균 5.02%)인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거래순이익률법을 사용하여 영업이익률 차이 3.11%(5.02% - 1.91%) 만큼 분석대상기업(G사)의 소득을 증액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의 기능, 위험, 계약조건, 경제적 여건 등이 유사하여야 한다.

| 구 | 분 | 분석대상 기업(G사) | 비교대상기업 | | |
|----|-------|----------------|--------|-------|-------|
| | | | H사 | I사 | K사 |
| 매 | 출 | 1,100 | 1,500 | 900 | 1,200 |
| 매 | 출 원 가 | 1,050 | 1,200 | 850 | 1,080 |
| 매출 | 총이익 | 50 | 300 | 50 | 120 |
| 매출 | 총이익율 | 4.55% | 20% | 5.56% | 10% |
| 판매 | 관리비 | 30 | 170 | 30 | 70 |
| 영 | 업 이 익 | 20 | 130 | 20 | 50 |
| 영 | 업 이익율 | 1.91% | 8.67% | 2.22% | 4.17% |

비교가능이익법은 이전가격 분석대상인 특수관계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판매업의 경우에는 이익률지표로 주로 영업이익율을 사용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가가산이익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가가산이익율의 경우 다시 분석대상기업이 임가공업체(Toll Manufacturing)인지 완전제조업체(Full-fledged Manufacturing)인지 여부에 따라 당해 원가의 구성을 달리하여 적용한다.

비교가능이익법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익률을 획일적

으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에어컨을 정상가격으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자회사가 인건비, 광고비 등의 판매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을 수 있는데, 비교가능이익법에 의하면 모회사가 제품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결정하였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가능이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기능, 위험, 계약 조건,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Berry Ratio

비교가능이익법 중 단순 중개업이나 단순 용역제공업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Berry Ratio이다. Berry Ratio는 매출총이익을 판매관리비(Operating Expense)로 나누어 산출한다. 판매관리비라 함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의미한다.

Berry Ratio는 사실상 원가가산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원가가산법의 경우 제조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Berry Ratio는 용역원가(판매관리비)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주의 **Berry Ratio 적용 시 유의할 사항**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Berry Ratio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Berry Ratio는 영업비용(판매관리비)이 증가하면 매출총이익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제조업은 생산량이나 자동화 정도에 따라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Berry Ratio는 재고부담이 없는 단순 중개업(예: 중개무역업)이나 단순 용역제공업 등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제품판매와 관련된 업종에 있어 Berry Ratio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OECD 이전가격 지침 2.101)

- 1) 특수관계거래에서 수행된 기능(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고려)의 가치는 영업비용에 비례(proportional)한다.

- 2) 특수관계거래에서 수행된 기능(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고려)의 가치는 판매되는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proportional)하지 않는다.
- 3) 특수관계거래에서 납세자는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이나 재무지표를 사용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다른 중요한 기능(예:제조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익분할법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적절한 배부기준(거래당사자 간의 상대적 공헌도 등)에 따라 배부하고,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방법이다.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산출되는 공헌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익분할법에는 비교이익분할법(Comparable Profit Split Method)과 잔여이익분할법(Residual Profit Split Method)이 있다.

비교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독립기업 간의 결합 영업손익 배분비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결합 영업손익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잔여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거래로부터 발생한 결합 영업손익에 대하여 (a)특수관계자가 자기의 일상적 업무의 연속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시장수익율을 반영하여 결합 영업손익을 먼저 배분한 후에, (b)잔여이익을 각 특수관계자의 특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익분할법은 거래당사자인 특수관계자가 각각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결합손익 실현에 각각 기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공헌도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정상가격 범위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상가격을 산출

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힘들다. 비교가능 거래 또는 비교가능기업 도출을 위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정상가격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므로 통계적 방법 등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하고 있다.

이 경우 분석대상거래의 가격이나 분석대상기업의 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주로 사분위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상위 25%와 하위 25%를 제거하고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나 이익률을 가지고 정상가격 범위를 정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가산세

미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정 시 그 원인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 부과하고 있다.

- ▷ 다음과 같이 심각한 가치평가의 오류(Substantial Valuation Misstatement)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정에 따른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a)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200% 이상 또는 50% 이하인 경우, (b) 당해 연도의 IRC §482에 의한 조정(순액기준)금액 총액이 \$5,000,000 또는 총수입금액의 10% 중에서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 다음과 같이 막대한 가치평가의 오류(Gross Valuation Misstatement)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정에 따른 세금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한다. (a)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400% 이상 또는 25% 이하인 경우, (b) 당해 연도의 IRC §482에 의한 조정(순액기준)금액 총액이 \$20,000,000 또는 총수입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

통상 이전가격 과세는 수개 사업연도를 한꺼번에 과세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도 커지기 때문에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회사 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과

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검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RC §482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적용)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다[Reg §1.6662-6(T)(d)(1) 참조].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문서(Transfer Pricing Study라고 함)를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미 국세청의 요구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가격 조정절차

이전가격 과세는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이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또는 과세당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장치로는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등이 있다.

대응조정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앞의 에어컨 거래 사례와 같이 미국에서 B사에게 \$10 만큼 과세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A사가 이미 \$10 만큼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늘어난 과세소득 만큼을 한국의 과세소득에서 줄여줘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이라고 한다.

상호합의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의 과세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대응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한국 국세청에서 대응조정(환급)을 할 경우도 있지만, 미국 국세청의 과세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상과정에서 당초 이전가격 과세가 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과 한미조세조약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어느 기업에 대하여 이전가격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상하는 것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라고 한다. 상호합의는 사안에 따라서는 협상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현재 한국 국세청은 매년 2회 이상 미국 국세청과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 등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는 미국 국세청 또는 한국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미국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과세위험 및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PA는 미국 국세청에만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받는 일방 APA(Unilateral APA)와 양국 모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쌍방 APA(Bilateral APA)가 있는데 이전가격 조사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쌍방 APA가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여러 나라와 이루어질 때는 다방(multilateral)의 APA를 체결할 수 있다.

APA 절차는 납세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APA 신청서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의 사업현황, 제시한 이전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분석, 비교대상기업의 선정과정과 정상가격 산출과정, 제안하는 정상가격 범위 등이 포함된다.



참고 APA는 납세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첫째, 납세자는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향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승인조건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위험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승인 내용에 대한 연장신청을 통해 장기간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다.

둘째, 납세자는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납세자는 APA 승인을 받을 경우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가격 문제를 사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선임, 소송비용 등 많은 금전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APA는 세무조사 대응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대응조정과 보상조정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는 전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이전가격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APA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전문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국제적 과세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아울러 상대국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APA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과세당국과 활발한 의사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전가격 관련 쟁점

특수관계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항목별로 어떠한 경우에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급보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지급보증이라 한다. 예를 들어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한국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지급보증 대가를 정상가격으로 받지 않는 경우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은 몇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있는데

그 중 편익접근법을 소개한다. 편익접근법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율과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한 이후 자회사가 부담하는 이자율과의 차이, 즉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따라 자회사가 누리는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발명권, 상표권, 노하우 등이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초과 수익력은 당해 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양도, 사용, 대여 등의 거래는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모회사가 무형자산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와 원가분담 약정이 없거나, 비용 공동부담이 없다면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로열티 등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여 이전가격 과세를 하게 된다.

용역거래

특수관계자 간에 제공되는 회계, 법률, 경영자문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인적용역에서부터 무형자산의 이전을 포함하는 고도의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이전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거래는 매우 다양하다.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지 않거나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재계산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수행한 주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회사 주주회의, 주권발행, 감독기구 관련 비용 등은 이전가격 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부

모회사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거나 정상 이자율에 미달하게 이자를 수령할 경우에는 비교가능한 독립기업 간의 자금대부거

래에서 수수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무역 거래 또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인 해외 자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 대부거래로 보고 정상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채권 또는 채무

채권 또는 채무를 상환 받거나 상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하는 경우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외상매입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기업은 1주일 내에 변제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은 6개월 후에 변제하는 경우 특수관계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공통경비

특정 경비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공통경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계열기업이 합동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전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통일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계열기업 전체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지 않으면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귀속이 분명한 경비는 그 귀속에 따라,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비는 매출액, 편익,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한다.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기업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고정사업장은 외국기업의 미국 내 사업활동에 대하여 미국에서 과세할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미국세청은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당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합산하여 과세된다.

미국세법에는 ‘고정사업장’ 과세라는 개념은 없고 그와 유사한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에 대한 과세 개념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한미 조세조약)에는 고정사업장 과세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과세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세법에 의하면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이 있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에 과세상 유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과세기준

미국 세법은 외국기업의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해야 한다(Engaged in Trade or Business in US)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 Engaged in Trade or Business in US

미국세법상 미국내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이 무엇을 말하는지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판례는 미국에서의 이윤추구활동으로서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행하든 관계없이, 동 활동이 일상적, 실질적, 계속적(regular, substantial, and continuous)이면 미국내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2)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미국 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연관된 소득은 미국 원천소득과 외국 원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으로서 국

내기업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후자는 원칙적으로는 ECI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ECI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과세된다.

미국 세법은 ECI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미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얻는 모든 판매소득, 용역소득, 제조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IRC §864(c) 참조].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미국 내의 지점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미국 내의 지점의 도움 없이 본국 사무실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지만 상품의 명목이 미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Title Passage Rule, Reg. §1.864-4(b) 참조] ECI에 해당된다고 본다.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당연히 ECI에 해당된다[IRC §864(c)(2), Reg. §1.864-4(c)(3) 참조].

투자소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ECI에 해당된다[IRC §864(c)(2) 참조]. (a)Asset Use Test :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사용(투자)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ECI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생긴 받을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ECI에 해당된다. (b)Business Activities Test : 미국 내의 사업활동이 소득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경우 그 소득은 ECI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특히 대여사업에서 발생한 사용료소득은 ECI에 해당된다.

외국 원천소득(Foreign Source Income)은 원칙적으로 ECI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IRC §864(c)(4)(A) 참조]. 그러나 외국 원천소득이라도 미국 내의 고정시설(Fixed Place of Business)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ECI에 해당되므로 미국에서 과세된다. 고정시설이란 납세자의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된 판매점, 공장, 사무실 등을 의미한다[Reg. §1.864-7 참조]. 여기에서 귀속이라 함은 (a)고정시설이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할 것, (b)소득이 고정시설의 통상적인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것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종류별 과세기준

위에서 살펴본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소득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예인 또는 체육인 소득

미국 내에서의 용역 제공도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경우 단 한 번의 공연이나 경기를 해도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된다(Rev. Rul. 70-543, 1970-2 C.B 172 참조).

다만, 일시적인 소액 용역 제공의 경우로서 (a)비거주자가 미국 내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b)비거주자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c)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3,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d)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미국인의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파트너십 소득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이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소속된 파트너들도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IRC §875(1) 참조]. 또한 특정 파트너가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그 파트너십도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onroy, Ltd vs. U.S(9th Cir. 1962) 참조]

(3) 대리인의 대리행위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상당히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대리인을 고용한 자)이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조세법원은 소유자가 스웨덴 사람이지만 부동산 매매를 포함하여 임대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이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 스웨덴 사람이 미국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Lewenhaupt vs.

Commissioner(Tax Ct. 1953) 참조].

비거주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a)미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b)미국 거주자인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c)주식, 채권, 특정 상품을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IRC §864(b)(2)(c) 참조]. 따라서 미국 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비거주자가 중개인 또는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여도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IRC §864(b)(2)(A)(i) & (B)(i) 참조].

(4)사용료 소득

해외에 소재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 소득이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ECI에 해당된다[IRC §864(c)(4)(B)(i) 참조].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받은 특허 또는 상표권을 미국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동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소득은 ECI에 해당한다. ECI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원천의 사용료(로열티 등)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5)이자 또는 배당소득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ECI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순한 금전 대여, 투자를 통해 수취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라고 부르며, 30% 세율(미국과의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기업인 경우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이러한 수동적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금융기관 또는 자기의 계산 하에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것이 주업인 회사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식 또는 유가증권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얻을 경우 ECI에 해당된다[IRC §864(c)(4)(B)(ii) 참조]. 예를 들어 한국계 은행이 미국 지점을 통하여 캐나다 기업에 대출하고 얻은 이자소득은 ECI에 해당된다.



참고 일시적인 판매활동에 대한 과세기준

미국 내에서 재고자산을 규칙·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품전시 또는 광고선전 등을 통한 약간의 판매활동에 대해서는 미국과 OECD 입장이 다르다.

미국 세법에서는 상품전시 또는 광고선전 등을 통하여 약간의 판매활동만 하여도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입장보다 고정사업장 범위를 다소 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v. Rul. 56-165, 1956-1 C.B. 849 참조). 이에 반하여 동 활동에 대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한미조세조약 제9조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어느 계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에는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공사장 등이 포함된다.

사업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보관·전시·인도, 광고,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과 같이 사업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장소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재화 또는 상품이 미국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거나 미국에서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보관·전시·인도를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외국기업이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a)외국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b)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동 외국기업은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지점세

지점세(Branch Profit Tax)는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해 신설되었다. 지점세의 신설 목적은 이익을 본국에 배당할 때 지점과 자회사를 세무상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면 지점세 과세대상이 된다.

1987년 이전에는 외국 주주 또는 본사에 배당 또는 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미국 국내기업(외국기업의 자회사)이나, 외국기업의 미국 지점이나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랐다. 즉 미국 국내기업이 외국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외국기업의 미국 지점이 외국 주주에게 잉여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았다.

1987년 이후에는 외국기업의 미국 지점이 외국 본점으로 지점소득을 송금할 경우 30%의 지점세를 부과함으로써 본국으로 이익배당 시 지점과 자회사를 세무상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었다.

지점세는 배당 상당금액에 3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IRC §884(b) 참조]. 이 경우에 법인소득을 미국 내의 적격자산에 재투자하면 배당 상당금액을 감소시켜 지점세를 축소시킬 수 있다. 미국 내의 적격자산이란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현금 및 자산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의 50% 이상이 한국 거주자인 법인, 상장법인, 정부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미국 지점은 지점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계 기업의 지점이 지점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Reg. §1.884-1, §1.884-5). 일부 기업의 경우 지점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을 모르고 자발적으로 지점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

한미조세조약 규정 내용 요약(미국 측면)

| 구분 | 조 | 주요 내용 |
|-----------|-----|---|
| 대상조세 | §1 | 연방 소득세 |
| 부동산소득 | §15 | 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 |
| 사업소득 | §8 | 미국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고정 사업장 귀속 이윤에 대해 과세 |
| 해운 및 항공운수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운항소득은 면세 •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내륙운송을 위한 트레일러·기타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같이 해운 및 항공운수에 부수되는 소득은 본 조의 소득에 포함되나, 컨테이너 내륙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 배당 | §12 | <p>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미국 거주자(법인)인 경우 다음 세율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수취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당 총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 일부 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 전체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 소유 ·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은행, 보험·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 시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50%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 • 그 밖의 경우 배당 총액의 15% |

| 구 분 조 | 주 요 내 용 |
|--------------------|---|
| 이 자 §13 | 이자가 미국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다음 세율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총액의 12% • 이자 수취인이 한국 정부, 중앙은행,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소유하는 기관 등인 경우 면세 |
| 사 용 료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가 미국에서 발생(사용)하는 경우 다음 세율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 영화필름(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 포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은 사용료 총액의 10% · 그 밖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서 제외 • 선박·항공기의 임대인이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선박·항공기의 사용이나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에 포함 • 사용료 대상 재산·권리(선박·항공기는 제외)의 양도 소득은 사용료에 포함 |
| 양도소득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 • 미국 고정사업장 및 사업용 동산 양도소득은 과세 •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와 그 선박·항공기 운항에 관련 되는 동산 양도소득은 면세 • 미국 소재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과세 • 위의 것 이외의 재산 양도소득은 면세 |
| 독 립 적 인적용역 소 득 §18 | 미국에서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개인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미국 체재 • 소득이 과세연도 중 \$3,000 초과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

| 구 분 조 | 주 요 내 용 |
|--------------------|--|
| 근로소득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활동이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에 체재 · 그 개인이 미국 거주자의 피고용인인 경우 · 보수가 미국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 그 보수가 \$3,000을 초과하는 경우 • 한국 거주자가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활동에 관한 보수는 그 개인이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 면세 |
| 민간퇴직연금 보험연금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유사 보수는 면세 • 별거수당과 보험연금도 면세 |
| 사회보장지급금 §24 | 한국 시민인 개인에게 미국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지급금과 기타 공적연금은 미국에서만 과세 |
| 정부기능 §22 | 한국 정부 또는 정부기능 수행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미국 내 제공 용역에 대해 한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한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보수(퇴직연금·보험·연금 또는 유사이익 포함)는 면세 |
| 학생 및 훈련생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교육, 수학, 연구 또는 훈련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발생한 송금은 미국 도착일부터 5개 과세연도 면세 • 교부금, 수당, 장려금, 과세연도 중 \$2,000 이하의 인적 용역 보수 면세 |
| 교 직 자 §20 | <p>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강의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 도착일부터 2년간 면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방문 직전에 한국 거주자 • 미국 정부·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 초청 • 동 초청기관에서 강의·연구 목적만으로 방문 •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초청 |

제14장 지방세



제14장 지방세

미국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Tax, Local Tax)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주, 카운티, 시, 타운 등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 및 Washington D.C.는 독자적인 세법 및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 카운티, 시, 타운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51개 국가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업 또는 거래가 여러 주에 걸쳐 있을 때,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와 거주하는 주가 다를 때 주정부 사이에 과세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세금에 따라 주별로 독자적인 배분방식이 있는 경우 그 방식에 따르나,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과세권의 배분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천지 과세원칙(Income Source Principle)에 따라 해당 주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경우, 즉 해당 주에서 소득을 지급받거나,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재산 또는 거래가 있는 경우 당해 원천지를 관할하는 주정부가 과세권을 갖는다. 또한 거주지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에 따라 당해 주에서 거주하는 자가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를 불문하고 당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정부가 과세권을 갖는다. 두 가지 과세원칙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주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인정한다.

지방세는 크게 소득세(Income Tax), 재산세(Property Tax), 판매세(Sales Tax)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있으므로 주별, 카운티별, 시별, 타운별 세금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방정부 세금의 경우 세법 규정이 세밀하고, 공제 또는 감면제도가 많으며,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방세는 세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세밀하지 못하고, 공제 또는 감면제도가 적으며, 거래세(去來稅) 또는 보유세(保有稅) 위주로 되어 있어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를 할 때는 미리 해당 주의 세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에 대해서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각 주별, 카운티별, 시별, 타운별 세금제도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상세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소득세

미국 대부분의 주 및 Washington D.C.는 독자적으로 주정부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es)를 부과하고 있다. 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Wyoming 등 7개 주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New Hampshire, Tennessee 등 2개 주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 시, 타운 단위에서도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미국 주별 개인소득세 세율

| 주 별 | 세율(%) | 주 별 | 세율(%) | 주 별 | 세율(%) |
|-------------|-----------|---------------|-----------|----------------|------------|
| Alabama | 2.0~5.0 | Kentucky | 2.0~6.0 | North Carolina | 6.0~7.75 |
| Arizona | 2.59~4.54 | Louisiana | 2.0~6.0 | North Dakota | 1.84~4.86 |
| Arkansas | 1.0~7.0 | Maine | 2.0~8.5 | Ohio | 0.618~6.24 |
| California | 1.25~9.55 | Maryland | 2.0~6.25 | Oklahoma | 0.5~5.50 |
| Colorado | 4.63 | Massachusetts | 5.3 | Oregon | 5.0~11.0 |
| Connecticut | 3.0~6.5 | Michigan | 4.35 | Pennsylvania | 3.07 |
| Delaware | 2.2~6.95 | Minnesota | 5.35~7.85 | Rhode Island | 3.8~9.9 |
| Georgia | 1.0~6.0 | Mississippi | 3.0~5.0 | South Carolina | 3.0~7.0 |
| Hawaii | 1.4~11.0 | Missouri | 1.5~6.0 | Utah | 5.0 |
| Idaho | 1.6~7.8 | Montana | 1.0~6.9 | Vermont | 3.55~8.95 |
| Illinois | 3.0 | Nebraska | 2.56~6.84 | Virginia | 2.0~5.75 |
| Indiana | 3.4 | New Jersey | 1.4~10.75 | West Virginia | 3.0~6.5 |
| Iowa | 0.36~8.98 | New Mexico | 1.7~4.9 | Wisconsin | 4.6~7.75 |
| Kansas | 3.5~6.45 | New York | 4.0~8.97 | Washington DC | 4.0~8.5 |

대부분의 주의 개인소득세 계산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 연방 개인소득세 계산방식과 대체로 유사하다. 세율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주는 단일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신(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Surviving Spouse) 신고유형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1년 현재 각 주별 개인소득세 세율은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주별 세율구간, 인적공제액, 세율 적용방법 등은 각 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주정부 개인소득세도는 납세자를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하며, 각각 다른 과세방법을 적용한다. 뉴저지 주의 예를 들면, 뉴저지 주에 항구적 주소(Domicile)가 있는 경우 또는 뉴저지 주에 거주 주택(Permanent Home)이 있고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하며, 뉴저지 주에 원천소득이 있는 자로서 뉴저지 주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뉴저지 거주자는 Form NJ-1040(Resident Return)를 작성하여, 비거주자는 Form NJ-1040NR(Nonresident Return)를 작성하여 전세계 소득(Income from Everywhere)에 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소득에서 뉴저지 주 원천소득(Income from New Jersey Sources)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한다. 거주자는 다른 주에서 납부한 주정부 개인소득세가 있는 경우 뉴저지 주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비거주자는 본인이 거주자 신분인 주에도 다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뉴저지 주에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뉴저지 주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게 임금(Wages)을 지급할 때 종업원에 대한 주정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뉴저지 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Form NJ-1040(Resident Return) 또는 Form NJ-1040NR(Nonresident Return)를 작성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뉴저지 주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참고 한국에서 얻은 소득도 주정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주정부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은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방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즉 한국에서 얻은 소득 등도 주정부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에 당연히 포함된다. 주정부 개인소득세의 경우 다른 주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와 유사)가 허용되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일정요건 충족시(예: 연방정부 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지 않고 비용공제한 경우)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주가 있다.

법인세

미국 대부분의 주 및 Washington D.C.는 독자적으로 법인소득세(State Corporate Income Taxes, 이하 편의상 ‘법인세’라 한다)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주는 S Corporation,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에 대하여 주정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Nevada, South Dakota, Washington, Wyoming 등 4개 주는 법인세가 없다.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 시, 타운 단위에서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파트너십에 대한 주정부 세금 이중과세

연방 세금에 있어서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체, 즉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S Corporation 등의 경우 연방 세금에 있어서는 사업체 단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 또는 투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가 없으나, 주정부 세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파트너십에 대한 주정부 세금의 경우 (a)연방 세금처럼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b)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c)파트너십 소득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파트너에 대한 주정부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는 파트너

십 소득(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Income)이 포함되므로 주정부 세금의 경우 파트너십 단계와 파트너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다.

대부분 주의 주정부 법인세 계산방식은 연방정부 법인세 계산방식과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California 주의 경우 조정사항이 많아 연방 법인세 계산방식과 상당히 다르고, Texas, Ohio 주의 경우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주는 단일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현재 각 주별 주정부 법인세 세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주별 세율구간, 중소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율, 세율 적용방법, 최저한세 등은 각 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참고

미국 주별 법인세 세율

| 주 별 | 세율(%) | 주 별 | 세율(%) | 주 별 | 세율(%) |
|-------------|----------|---------------|-----------|----------------|---------|
| Alabama | 6.5 | Kansas | 4.0 | New York | 7.1 |
| Alaska | 1.0~9.4 | Kentucky | 4.0~6.0 | North Carolina | 6.9 |
| Arizona | 6.968 | Louisiana | 4.0~8.0 | North Dakota | 2.1~6.4 |
| Arkansas | 1.0~6.5 | Maine | 3.5~8.93 | Oklahoma | 6.0 |
| California | 8.84 | Maryland | 8.25 | Oregon | 6.6~7.9 |
| Colorado | 4.63 | Massachusetts | 8.75 | Pennsylvania | 9.99 |
| Connecticut | 7.5 | Michigan | 4.95 | Rhode Island | 9.0 |
| Delaware | 8.7 | Minnesota | 9.8 | South Carolina | 5.0 |
| Florida | 5.5 | Mississippi | 3.0~5.0 | Tennessee | 6.5 |
| Georgia | 6.0 | Missouri | 6.25 | Utah | 5.0 |
| Hawaii | 4.4~6.4 | Montana | 6.75 | Vermont | 6.0~8.5 |
| Idaho | 7.6 | Nebraska | 5.58~7.81 | Virginia | 6.0 |
| Illinois | 7.3 | New Hampshire | 8.5 | West Virginia | 8.5 |
| Indiana | 8.5 | New Jersey | 9.0 | Wisconsin | 7.9 |
| Iowa | 6.0~12.0 | New Mexico | 4.8~7.6 | Washington DC | 9.975 |

주정부 법인세의 경우 먼저 특정 주에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이하나, 통상 영업활동과 당해 주 사이에 충분한 관계(Nexus)가 성립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당해 주내에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 있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충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법인이 특정 주에서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 주정부에 납세필증을 첨부하여 철수 신청서(Withdrawal Application)를 제출하고, 철수증명서(Withdraw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당해 주정부로부터 법인세를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고, 벌과금까지 추징될 수 있다.

다음으로 2개 주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득 중 얼마만큼을 특정 주에 할당(Apportionment)하여 과세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각 주는 여러 가지 할당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 자산총액,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정한 다음 당해 주에 귀속되는 이들 3개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영업소득을 할당하는 ‘공식(公式)에 의한 할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의 경우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2배 가중치), 자산총액, 임금총액의 합계액에서 뉴저지 주 내에서의 총매출액(2배 가중치), 자산총액, 임금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만큼 뉴저지 주에 영업소득을 할당한다.

영업소득의 경우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별로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비영업소득의 경우, 예를 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은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 소재지나 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별로 할당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에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주의 경우 영업소득과 비영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

주정부 법인세 신고절차도 연방정부 법인세 신고절차와 비슷하다. 법인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주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s) 제도가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일정한 시기에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점도 비슷하다.



사례

매출액 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정부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어떤 주는 매출액 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큰 경우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

Texas 주의 경우 영업허가세(Franchise Tax)를 부과하는데, 총수입금액(Gross Revenue)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달리 적용하며(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된 마진에 대해 도·소매업은 0.5%, 총수입액이 \$10,000,000 이하인 법인은 0.575% 및 기타 법인은 1%를 부과)이다. 총수입금액이 \$1,030,000 이하인 법인은 영업허가세를 내지 않는다. Ohio 주의 경우 Commercial Activity Tax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며, 매출액(Gross Receipts)을 기준으로 \$150,000에서 \$1,000,000까지 \$150, \$1,00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0.26%를 부과한다. Delaware 주의 경우 주내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세율 8.7%), 이와 별도로 법인 자본금을 기준으로 영업허가세(Franchise Tax)를 부과한다. 법인은 영업허가세 계산시 주식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Authorized Shares Method 및 액면자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Assumed Par Value Capital Method를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따른 최소 영업허가세는 각각 \$75 및 \$350이며, 최대 \$18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판매세

판매세(Sales Tax, Excise Tax, Use Tax)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금부담은 최종 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지지만, 세금납부는 공급자가 징수하여 주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판매세는 대부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주의할 점은 판매세의 경우 사업자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세금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IRS에서 납세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아야 하고, 판매세 과세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동 납세번호를 등록함과 동시에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주 정부는 사업자에게 판매세 면허증(Certificate of Authority)을 발급하며, 사업

자는 동 면허증을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판매세는 재화의 판매가격(Gross Sales Price)에 해당 주의 판매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판매세 세율은 주마다 다르고, 과세대상도 다르며, 특정 업종(식당, 호텔 등)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 등 5개 주는 판매세가 없다.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 시, 타운 단위에서도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예: 뉴욕주 뉴욕시) 2011년 현재 각 주별 판매세 세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주별 판매세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공제사항 등은 각 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참고

미국 주별 판매세 세율

| 주 별 | 세율(%) | 주 별 | 세율(%) | 주 별 | 세율(%) |
|-------------|-------|----------------|-------|----------------|-------|
| Alabama | 4.0 | Maine | 5.0 | Pennsylvania | 6.0 |
| Arizona | 5.6 | Maryland | 6.0 | Rhode Island | 7.0 |
| Arkansas | 6.0 | Massachusetts | 6.25 | South Carolina | 6.0 |
| California | 8.25 | Michigan | 6.0 | South Dakota | 4.0 |
| Colorado | 2.9 | Minnesota | 6.875 | Tennessee | 7.0 |
| Connecticut | 6.0 | Mississippi | 7.0 | Texas | 6.25 |
| Florida | 6.0 | Missouri | 4.225 | Utah | 4.7 |
| Georgia | 4.0 | Nebraska | 5.5 | Vermont | 6.0 |
| Hawaii | 4.0 | Nevada | 6.85 | Virginia | 5.0 |
| Idaho | 6.0 | New Jersey | 7.0 | Washington | 6.5 |
| Illinois | 6.25 | New Mexico | 5.0 | West Virginia | 6.0 |
| Indiana | 7.0 | New York | 4.0 | Wisconsin | 5.0 |
| Iowa | 6.0 | North Carolina | 5.75 | Wyoming | 4.0 |
| Kansas | 5.3 | North Dakota | 5.0 | Washington DC | 6.0 |
| Kentucky | 6.0 | Ohio | 5.5 | | |
| Louisiana | 4.0 | Oklahoma | 4.5 | | |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품 또는 할인(Trade-ins, Discounts, Coupons, Rebates, Returns, and Allowances) 금액에 대하여 판매세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므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재판매증명서(Resale Certificate)를 제출하여 판매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

재산세(Property Tax)는 통상 카운티, 시, 타운에서 부과하며, 세수는 경찰서, 소방서, 공립학교, 도서관 등의 유지, 관리 비용에 사용된다. 과세대상은 카운티별, 시별, 타운별로 약간 다르나,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 재고품, 자동차, 항공기, 선박, 주식, 채권, 회원권, 저작권 등이다.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하되, 과세형평을 위하여 시가의 일정비율을 과세시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일정비율 이상 과세시가를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평가관(County Assessor)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가 끝나면 그 때부터 새로운 과세시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세액은 과세시가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세율은 과세대상 재산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데,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볼 때 주별로 평균 0.2%에서 약 2.0% 수준이다. 재산세는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 신고방식이 아니고 정부 부과방식이다. 카운티, 시, 타운에서 고지서(Tax Bill)를 연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누어 납세자에게 보내주면 이에 근거하여 납부하면 된다.

뉴욕시 사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 카운티, 시, 타운 등에서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서는 뉴욕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뉴욕 주정부 또는 시정부에서 부과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판매세, 재산세 등이 있고, 그

이외에도 액수가 큰 세금으로 모기지 등록세, 부동산 이전세, 고급주택세, 사업장 임차세 등이 있으므로 뉴욕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세금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뉴욕시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거나,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주 정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 정부 개인소득세 세율은 신고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4.00%~8.97%이다. 또한 시정부에서도 따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2.907%~3.648%이다.

(2)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 또는 Corporation Franchise Tax)

뉴욕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뉴욕시에 원천소득이 있는 법인(S Corporation 포함)은 주 정부 및 시 정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C Corporation의 경우 주 정부 법인세 세율은 순이익의 7.1% 및 고정최저한세(Fixed Dollar Minimum Tax)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액(Gross Receipts) 규모에 따라 최소 \$25, 최고 \$5,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S Corporation의 경우 매출액(Gross Receipts) 규모에 따라 최소 \$25, 최고 \$4,500까지 세금을 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300에 미달하는 경우 Annual Maintenance Fee Requirement에 따라 \$3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 정부는 법인에 대해서 General Corporation Tax를 부과하고, 이때 시 정부 법인세 세율은 S Corporation 및 C Corporation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순이익의 8.85% 및 고정최저한세(Fixed Dollar Minimum Tax)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300의 고정최저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 정부 법인세는 법인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시 정부 법인세는 보험회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부과가 면제된다.

(3)Unincorporated Business Tax

법인이 아닌 Sole Proprietorship,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시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기 사업체의 뉴욕시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4%의 Unincorporated Business Tax를 부과한다.

(4) 판매세(Sales Tax)

뉴욕시에서 특정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판매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판매세는 공급자가 징수하여 납부한다. 판매세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함께 부과하는데, 통합 세율은 8.875%이며, 이 중 4%가 주정부, 4.875%가 시정부 몫이다.

(5) 재산세(Property Tax)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며,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2% 수준이다.

(6) 모기지 등록세(Mortgage Recording Tax)

은행융자를 받아 부동산을 산 경우 모기지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대출금 규모에 따라 대출금액의 2.05%~2.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기지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모기지 등록세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함께 부과하는데, 통합 세율은 2.05%~2.80%이며, 이 중 1.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정부 몫이다.

(7) 부동산 이전세(Real Property Transfer Ta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매매 또는 증여 포함, 상속은 제외) 시가를 기준으로 0.4%에 해당하는 주정부 부동산 이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전 대가가 \$1,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대가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고급주택세(Mansion Tax)의 명목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이전세는 시정부에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25,000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전대가가 \$500,000 이하인 경우 각각 주거용은 1%, 상업용은 1.4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전대가가 \$5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주거용은 1.425%, 상업

용은 2.6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용자나 채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고급주택세의 경우 용자나 채무는 공제되지 아니하며,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8)주식거래세(Stock Transfer Tax)

주식을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거래가격에 따라 주정부 주식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격이 \$5 미만인 경우 1주당 ¢1.25,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주당 ¢2.5,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1주당 ¢3.75, \$20 이상인 경우 1주당 ¢5, 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1주당 ¢2.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담배세(Cigarette Tax)

담배 공급자 또는 배급자(Vendor or Distributor)에게 시정부에서 부과한다. 주정부 및 시정부 통합 세율은 한 팩당 \$6.46이며, \$4.35은 주정부 몫이고 \$1.50은 시정부 몫이며 \$0.61은 선납 판매세이다.

(10)영업용 자동차세(Commercial Motor Vehicle Tax)

뉴욕시 내에서 운행되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부에서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세액은, 여객용 자동차의 경우 택시는 연간 \$1,000, 나머지 차량은 연간 \$400이며, 비여객용 자동차의 경우 총적재중량에 따라 \$40에서 \$300까지 부과된다.

(11)사업장 임차세(Commercial Rent Tax)

Manhattan 중심가에서 연간 \$250,000 이상 임대료를 주고 사업장을 임차하는 세입자(Tenant)는 시정부에 사업장 임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율은 6%이나, 35%의 기본임차료 공제(Base Rent Reduction)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세율은 3.9%이다. 연간임차료가 \$250,000에서 \$300,000인 경우 일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Manhattan에서 사무실을 얻고자 하는 경우 세액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2)주류면허세(Liquor License Tax)

주류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에 주류면허수수료(Liquor License Fee)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류면허세는 주류의 종류 또는 판매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뉴욕시에서 주류소매를 하는 경우 매년 시정부에 주류면허세(Liquor License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액은 주정부에 납부한 연간 주류면허수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3)호텔숙박세(Hotel Room Occupancy Tax)

뉴욕시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숙박비를 기준으로 주정부 및 시정부 판매세(Sales Tax) 8.875% 이외에 5.875%에 상당하는 시정부 호텔숙박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호텔 사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한다.

(14)주차세(Parking Tax)

Manhattan 내에서 요금을 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 시정부 주차세(Parking Tax) 세율은 Commercial Parking의 경우 18.5%이고 Residential Parking의 경우 10.5%이다.

제15장 상거래



제15장 상거래

회사 설립을 마치게 되면, 그 때부터 사업장을 마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사업의 형태는 업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이거나 상거래에 관련된 법률 이슈에 자주 접하게 된다.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물품 거래와 유가증권, 부채 보증 등을 관장하는 통합 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을 비롯하여 계약법, 부동산법 등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자유의사에 기한 사적자치(私的自治) 또는 계약자유(契約自由) 원칙을 중요시한다.

사적자치 원칙은 당사자가 관련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서로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 상거래에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지 않거나,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거나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적자치를 강조하다 보면 상거래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고객 또는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소비자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물 책임법 (Products Liability) 등을 비롯하여 모든 상품관련 소비자 보호 법체계가 있고, 서비스업 역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다.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위험 관리(Legal Risk Management)'는 실로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잘 나가던 사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려 큰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법적 고려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Be Accurate), 신중하고(Be Careful), 능통하여야(Be Informed) 한다.

상거래에 따르는 법률문제는 수도 없이 많아 이 책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Contracts), 상품매매(Sales),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채권추심(Collection)에 국한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계약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Contracts)은 매일 매일 접해야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 행위이다.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과정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집기를 사는 것도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도 상품을 사고 파는 것도 모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품에 대한 주문을 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상품의 질, 수량, 가격, 그리고 상품도착 일시 및 장소, 물건대금 지급일자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이며, 구매한 상품을 파는 것 역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하면 성립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게 되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주의 해외진출 초기에 흔히 하는 계약의 실수

한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 현지 사정에 능통한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다 보니 영업 책임자는 영어에 능통하고, 업계에서 발이 넓은 외국인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게 되는데, 지원자의 이력서만 보면 어떤 사람은 채용만 하면 곧바로 영업실적을 크게 올릴 것 같고, 회사가 성공할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이런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 고액 연봉에 장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경우는 인원채용, 계약체결, 사업운영 등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지원만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봉급의 반에 해당하는 실적도 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도 흔히 있었고, 봉급만 받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계약을 마음대로 해도 영어가 통하지 않아 제대로 관리할 수도 없었고,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 잡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다. 하지만 서면계약에 묶여 해고를 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고용기간 중 회사 내에서 마찰이 많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차별(Discrimination)을 이유로 한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고용의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해고 또는 종업원의 사퇴가 가능한 고용 At Will Employment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한국 본사에서는 업무를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로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고용기간 또는 근무조건이 확실하게 명시된 고용계약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프로구단의 선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며 고용계약을 상세하게 하면 할수록 계약내용 때문에 회사가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성립된다.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을 서명하여 통보(Offer)하고, 상대방이 이를 서명하여 수락(Acceptance)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은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구두협의 이후 일방이 서면으로 보낸 확인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계약은 서면 이외에 구두 합의 또는 거래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진열대에서 상품을 골라 계산대에서 가격을 지불하면 상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내용의 이행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거래, 채무보증, \$500 이상의 상품 거래, \$5,000 이상의 무형재산의 거래, 증권거래 등에 관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상대방에게 이행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서명은 꼭 수표에 사용되는 서명이 아니어도 충분하다.

계약의 수정 또는 취소

일단 성립된 계약이라도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원 계약에서 반드시 서면으로만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서면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다.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했던 사항이 쌍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변으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하여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어느 일방의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확인(Assurance of Performance)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의 답변이 없을 때는 계약 불이행 선언을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례

당사자의 무지를 이유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가?

A는 미국에 이민 와서 가게를 열기 위하여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주변 시세도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 말만 믿고 가게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친구에게는 수고비 조로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였다. 막상 미국에 와서 가게를 열고 난 후 A는 자기가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가 주변 시세의 4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나면 장사가 밀질 수밖에 없어 A는 가게 임차계약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무지를 이유로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낮출 방법이 없었다. 친구가 부동산중개인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A는 친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A는 임대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지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현지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계약의 효력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품매매의 예를 들면 매도자는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을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매수자는 받은 상품을 검사하고 계약과 부합하면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건 대금의 지불은 수표로 하게 되는데,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물건 대금은 법적으로는 미지불 상태이다.

계약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선취조건(Condition Precedent)은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사자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해제조건(Condition Subsequent)은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

사자의 의무가 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느 경우이거나 계약의 효력 및 당사자의 의무이행은 조건의 성취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참고

조건이나 단서를 적절히 활용하자!

계약은 미래에 할 일을 정하는 것이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며, 상황이 바뀌면 당초 계약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은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나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건이나 단서를 상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살 때는 어느 정도의 용자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다는 조건을 넣어야 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장을 임차할 때 인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사업 인수계약서를 쓸 때는 인수가격을 정할 때 전제로 했던 조건, 우발적 채무에 대한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확인을 거쳐 이행하는 것이 좋다. 외판원을 고용하는 계약이라면 필수적으로 매출액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고하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로 이행하여야 계약을 이행한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사소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상당한 수준 이행되고, 하자가 경미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의를 다한 경우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에 상당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이행을 보완하거나 가격을 차감한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사전에서 정한 의미를 기준으로 하고, 고도의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것은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미리 인쇄된 문구보다는 타이핑한 문구, 그리고 타이핑한 문구보다는 손으로 직접 작성한 문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계약 위반에 대한 치유

계약을 체결한 후 어느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취소, 이행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물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참고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방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방어는 ‘(a)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b)법적으로 서면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서면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c)계약 내용이 불법이거나 공공목적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 (d)상대방의 속임수 또는 강압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 졌다. (e)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계약 위반이 없다. (f)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바 없다. (g)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였고, 사소한 사항은 치유가 가능하다. (h)상대방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상품매매

상품매매(Sales of Goods)도 계약의 일종이며, 계약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상품(Goods)이라 함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되는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의미한다. 통합 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에서는 상품매매의 특성 및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계약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거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매매계약의 성립

상품매매 계약은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면 합의, 구두 합의 또는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성립될 수 있다. 통합 상법에서는 상품가격이 \$500 이상인 경우 서면계약을 하여야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강제(Enforceable)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품이 구매자의 특수 필요에 맞추어 특별 제작된 경우 구두계약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해도 팔리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상품매매의 경우 서면계약의 내용이 일반 계약보다 간단해도 문제가 없다. 당사자가 거래를하기로 합의하고, 수량만 정하면 충분하다. 가격, 품질, 배달 기간 및 방법, 반품,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있을 경우 품목의 특성,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법정에서 적절한 내용을 정해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간단한 방식으로 상품매매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즉 고객이 상점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른 후에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치르고 나면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주문을 하고, 매도자가 청구서(Invoice)와 함께 물건을 보낸 후에, 매수자가 10일 이내에 반품 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의 효력

상품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매도인(Seller)은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고, 매수인(Buyer)은 상품을 검사하고 계약과 부합하면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인도된 상품은 (a)매수인이 인도된 상품을 수락한다고 통보하였을 때, (b)적정한 기간 내에 인도를 거부하지 않을 때, (c)인도된 상품을 변형하는 등 매도인의 상품 소유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매수인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매매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적정한 기간(Reasonable Time) 내에 적절한 방법(Reasonable Manner)으로 인도된 상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검사는 매수인의 경비로 하나, 계약에 명시된 상품과 상이하여 인수를 거부해야 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쌍방의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상품이 거래 당사자의 과실 이외의 사유로 유실 또는 손상된 경우로서 매수인에게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전량 유실 또는 손상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일부 유실 또는 손상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액을 깎고, 매도인이 그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면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명의가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유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은 물건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험부담의 귀속

상품의 특성상 매매과정에서 유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으로 유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 또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부담 및 소유권의 귀속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상품의 운송이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운송조건에 따라 위험부담이 정해진다. FOB(Free on Board) Destination Point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부담을 지며, FOB Shipping Point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선적지로부터 운송비용 및 위험부담을 진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Shipping Point 조건의 경우 운임, 보험료 등은 물품가격에 포함되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물품을 운송회사에 넘기면 그 때부터 매수인이 위험부담을 진다.

상품의 운송과정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 물건이 확정될 수 있으면(Identifiable)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매수인은 물건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법적 명의이전 전이라도 확정 상품에 대하여 보험에 들 수 있는 권리(Insurable Interest)를 가진다.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치유

최종 소비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은 특별히 계약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에 부합하더라도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반품하여야 하며, 반품 과정에서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진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것은 매매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상대방의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예견될 때는(Anticipatory Breach) 상대방에게 계약이행확인(Assurance of Performance)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대한 적절한 답이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이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그 상품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매수인이 재정난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배달 중인 상품을 회수할 수 있고, 배달이 완료된 후에도 1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요구하여 회수할 수 있다.

매도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전체 계약금액과 상품을 인도하기로 했던 시기의 시가와와의 차액, 또는 전체 계약금액과 제3자에게 매도한 가격과의 차액 또는 달성하지 못한 수익금이다. 매수인이 상품인수를 수락하거나, 상품을 훼손하였을 때,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전체 계약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매수인의 경우 주문한 상품과 상이할 경우 적정한 기간 내에 하자상품(Nonconforming Goods)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하자상품을 그대로 쓰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경우나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이라는 매도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상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추후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적정한 기간 내에 수락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하자상품의 인수를 거부한 이후 매도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동 상품을 적정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상품이 쉽게 변형되거나 가치가 쉽게 감소하는 것이면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계약 이행 기간 이내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전체 계약금액과 매도인이 계약위반을 알았던 시점의 시가와와의 차액으로 하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Incidental Damages and Consequential Damages)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에 매도인이 예견할 수 있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물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로 인하여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상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은 책임의 근거는 보증책임(Warranty Liability), 과실책임(Negligence), 절대적 책임(Strict Liability) 등이 있다.

제조물 책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을 영위할 경우 소송 등에 휘말려 막대한 손해배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업종의 경우 제품결함손배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는데,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나면 별로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증책임(Warranty Liability)

제품에 대한 보증(Warranties)에는 (a)제품 명의에 대한 보증, (b)상품성에 대한 보증, (c)특정 사용목적 부합성에 대한 보증, (d)매도인이 서면으로 제공하는 보증 등, 4가지 종류의 보증이 있다.

매도인은 제품의 소유권이 완전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명의에 대한 보증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제품 명의에 대한 보증은 서면으로 일부 제한하거나 전면 부인할 수 있다.

상품성에 대한 보증은 상인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당연히 내포된 것이다. 상품성이 있다는 것은 상거래에서 반론 없이 유통될 수 있다는 뜻이며, 물건이 의도하는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특정 사용목적 부합성에 대한 보증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특정한 사용 용도를 알고 이에 맞추어 상품을 제작하거나 선택하였고, 매도인의 기술이나 판단에 매수인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매도인이 서면으로 제공하는 보증은 제품의 설명서나 보증서에 기술된 상품의 성능이나 특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을 말한다. 흔히 차량이나 가전제품에 따라오는 보증서가 이 범주에 속한다. 보증서에는 완전 보증(Full Warranty)인지 아니면 제한적 보증(Limited Warranty)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증책임(Warranty Liability)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명시적인 문구로 제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증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보증 위반으로 야기된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된다. 상품이 인명피해나 신체상해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회피는 비양심적인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과실책임(Negligence)

과실(Negligence)에 근거한 책임은 (a)법적의무(Duty)가 있어야 하고, (b)의무 불이행(Breach of Duty)이 일어나야 하고, (c)손실 또는 상해(Damages or Injury)가 있어야 하고, (d)의무 불이행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Cause in Fact)가 있어야 하고, (e)손실 또는 상해가 어느 정도 예견(Proximate Cause)될 수 있어야 하는 등 5가지 요소가 모두 주장되고 입증되어야 성립된다.

법적 의무는 제조업자, 중간상, 소매상, 대역업자 모두가 진다. 중간상과 소매상은 결함을 찾아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례는 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중간상과 소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제품결함보험의 수혜자로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받고, 또한 제조업자에게 보상책임(Indemnity)을 지울 수 있어야 거래를 한다. 여기서 의무란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유통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의무 불이행이란 보통사람이 비슷한 여건 하에서 사용했을 적절한 수준의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한편, 제조업자, 중간상, 소매상, 대역업자 등은 과실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or Comparative Negligence)이 있거나, 피해자가 위험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다 (Assumption of Risk)는 것을 입증하면 방어가 가능하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보증 위반으로 야기된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된다. 제품이 인명피해나 신체상해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회피는 비양심적인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제품의 결함에 의도(Intent)적 요소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이외에 벌과금

(Punitive Damages)을 부과할 수 있다. 의도적이란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그런 결과가 올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절대적 책임(Strict Liability)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 중간상, 소매상, 대역업자 등에게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절대적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적 책임의 요건으로는 (a)제품에 결함이 있고, (b)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결함이 사용자에게 위험하고, (c) 사용자가 제품을 변형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고, (d)결함이 상해를 유발하여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절대적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에 결함이 있어야 한다. 결함은 제조 또는 디자인의 결함 아니면 제품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경고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unreasonably) 위험한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보통사람이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다른 디자인이나 제조 과정 또는 기술이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하게 위험한 상태’라고 판시하고 있다. 제조 결함은 제조과정이나 기술로 인하여 다른 제조과정이나 기술로 제조한 제품보다 현저하게 위험한 경우에 발생한다. 디자인 결함은 제품의 구조나 부분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품 전체가 위험한 경우에 발생하며, 제품이 디자인된 대로 제조되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한 경우 또는 했어야 하는 경우 디자인 결함 책임이 발생한다. 경고 부족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에 발생한다.

어떤 제품은 의도한 대로 사용하면 부당하게 위험하지 않으나, 조금 다르게 사용(오용)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례는 제조업자가 이런 오용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처방약은 의도대로 쓰면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약은 흔히 집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다. 이 때 제약회사가 약병의 뚜껑을 아이들이 열지 못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경우 부당하게 위험하다거나 경고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은 나지 않는다.

절대적 책임 요건에 해당되면 제조업자, 중간상, 소매상, 대여업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더라도 책임(Strict Liability)을 져야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or Comparative Negligence)이 있다는 이유로, 제품의 구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다만, 제품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위험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입증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례

미국에서 소비자 소송이 흔한 이유

미국은 '소비자 천국'인 동시에 '소송 천국'이다. 이 두개의 요소가 결합하여 소비자 소송이 많다. 인명 또는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없어도 변호사와 성공조건부 계약(Contingency Contract)을 체결하고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다. 변호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사건 하나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변호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송으로 가면 배심원들이 약자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막대한 방어비용을 감안하여 큰 책임이 없어도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소송 사냥꾼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기업이 성공하면 수많은 소송에 시달린다. 회사 앞의 도로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다쳤다는 사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하여 목 디스크가 왔다는 사람, TV를 보다 어지러워 머리를 깎았다는 사람, 담배 불로 화재를 내놓고 전자제품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소송이 수없이 많다. 소송을 피할 수는 없다. 모든 일에 정확하고, 신중하고, 능통해야 하고,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채권추심

채권은 여러 가지 원천에서 발생한다. 우선 상품판매에서 발생하는 물건 대금에 대한 미수금이 있고, 금전 대출에서 발생하는 채권, 그리고 당좌수표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있다. 또한 제3자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는 채권도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 등을 통한 채권추심(Collection)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채권추심은 우선 채권을 증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물건대금의 경우 해당 청구서(Invoice), 선적서류(Bill of Lading), 상품을 인도하고 받은 영수증, 차용증서,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등을 근거로 채권을 증명한다. 부동산 담보나 동산 담보 등 저당권이 있으면 단순한 채권추심 소송과는 다른 형태의 담보차압 소송을 하게 된다. 부도 수표에 대해서는 부도난 수표를 근거로 한 채권 추심소송이 이루어진다.

채권 추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고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법정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어서 원고는 채권을 증명하고 피고는 가능한 방어책을 내세워 사실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채권추심의 경우는 사실이 비교적 단순하여 공방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실규명 단계 끝에 채권자가 흔히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받는 일이 많다.

그러나 채권추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정능력이 없거나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판결은 문서상의 승리로만 남을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정능력,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하여 소송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례 해외채권자의 채권추심의 문제

한국기업이 미국수입업자에게 DA로 상품을 선적하고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흔히 있다. 또는 미국내 수출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선납하고 상품을 못 받는 경우도 흔히 본다. 한국내 기업이 미국에 와서 채권추심을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채권추심 소송을 제기하는 주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 둘째 비록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더라도 사실규명단계와 공판 과정에 참여해야만 하고 채권 추심 소송을 포함하여 모든 민사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쉽게 2-3년 이상 걸리고 경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흔히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하다보면 종업원, 고객, 투자자, 거래 상대방,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분쟁이 발생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시간적, 경제적, 사업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가급적 분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 부주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분쟁 해결

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 등이 있는데,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과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비교衡量(比較衡量)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소송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사업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설사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협상(Negotiation)

협상은 당사자가 서로 만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협상은 신속하게, 별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좋다. 협상이 성공하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금전으로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방법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일 수 있다.

조정(Mediation)

조정은 당사자 간의 분쟁에 제3자(조정자)가 개입하여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는 유사한 절차인데, 조정은 그 결과에 당사자가 귀속되지 않으나, 중재는 재판과 같이 당사자가 귀속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조정자(Mediator)는 양 당사자가 합의 선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협회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조정 절차는 대개 조정자가 당사자를 각각 따로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의견을 조율한 후에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되면 당사자 및 조정자가 함께 만나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정자는 당사자가 의견의 합치를 이루도록 중간에 서서 도와주거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조정이 성사되면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정 참여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

중재(Arbitration)

중재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 제3자(중재자)가 개입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독자적인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당사자가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분쟁발생시 중재를 하도록 하는 계약이 있으면 중재 결과는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중재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중재자(Arbitrator)는 통상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 Inc., U.S. Arbitration and Mediation 등의 협회를 통해 구한다. 예를 들어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중재신청(Demand for Arbitration)을 하면 협회에서 5명의 중재자 후보 명단을 보내준다. 당사자는 5명 중에서 한 사람을 중재자로 합의 선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회에서 중재자를 선정한다.

중재는 중재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한 후, 독자적인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변호사, 전문가 등을 동원하여 본인의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다. 중재자는 명망이 높은 변호사, 전문가 등이 선정되므로 일반인이 배심원이 되는 재판보다 합리적인 중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하게(6개월 이내) 결정을 얻을 수 있고, 중재과정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기밀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사건의 본질을 중요시하고 증거에 대하여 탄력적이므로 증거능력을 이유로 엉뚱한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주의 분쟁은 중재를 거쳐 해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자!

고용계약, 공사계약, 납품계약, 서비스계약, 동업계약, 투자계약, 운송계약, 임대계약, 사업인수 등과 같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약은

할 때는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중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 및 비용 소요가 막대하고, 배심원 제도의 특성상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 기업에 불리하므로 중재를 거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중재결과에 당사자가 귀속되므로 소송과 같은 효력이 있고, 중재에 불복해서 소송을 해도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중재로 사건이 종결된다. 중재는 엉뚱한 사유로 기업이 장기간의 소송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소송(Litigation)

소송은 법원에서 양 당사자가 공방을 하여 다투는 절차이다. 소송을 위해서는 통상 변호사를 필요로 하며, 당사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법원에는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법원(State Courts)이 있는데, 일반 상거래에 관한 소송은 주법원에서 흔히 관할한다. 연방법원은 헌법, 조약, 연방법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데, 차별(Discrimination), 기본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파산 등에 관한 소송을 관할한다. 또한 서로 다른 주에 속하는 사람끼리 소송을 할 경우(소송가액이 \$75,000을 초과하여야 함) 특정 주의 주법원에서 관할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연방지구연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s)에서 관할한다.

소송은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당사자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끝까지 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거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실익이 없는 싸움이 될 수가 있다.



참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주의할 사항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 사람의 전문분야, 실력, 평판, 직업윤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받다 보면 특정 분야의 문외한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본인은 흔히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다. 소송은 일

련의 절차적 과정이기 때문에 문외한이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소송에서 지게 된다.

소송은 법정에서 상호 공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영어에 능통한 외국인 변호사(예를 들어 유대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변호사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변호사의 전문분야, 실력, 평판, 직업윤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영똥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쉽다. 의뢰인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변호사가 알아서 해 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외국인 변호사는 법적인 사항 이외에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이슈, 경험, 관습 등에 관한 조언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면서 전문지식도 뛰어난 유능한 한인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계약조문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미국의 모든 재판이 배심원 재판이라는 점이다. 특히 제품결함관련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그 지역 주민이고 피고 제조업체는 타주나 타국에 소재한 기업인 까닭에 배심원의 동정심으로 수천만달러 때로는 일억 달러를 넘는 막대한 배상액의 평결이 흔히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에 소재한 로펌중에서 해당 제품에 조예가 깊으며 제조업자를 많이 대변한 경력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제16장 부동산 매매와 임대



제16장 부동산 매매 (구입 및 처분) 와 임대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에 와 돈만 벌어가고 현지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 굴지의 다국적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생산 공장을 근래에 만들었고, 삼성과 LG 등 굴지의 기업들도 본격적인 생산 시설이나 대형 사옥, 창고에 투자를 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한국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한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미국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가용 주택, 생산 시설, 사옥, 또는 창고를 벗어나는 대규모 투자용 부동산 투자가 기대되기도 한다.

서론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값이 계속 오르는 때가 있고 반대로 계속 떨어지는 때도 있다. 한때는 보통 10년 주기를 두고 부동산가격이 등락한다는 말도 있었으나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여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부동산 값이 한참 오를 때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많고 (이것을 Seller's Market 이라 함) 값이 한참 떨어질 때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이것을 Buyer's Market 이라 함).

주택이든 상용 부동산이든 미국에서는 100%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예외이고 대부분은 은행 융자를 얻어 산다. 2008년 세계금융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던 Sub-prime mortgage 사태는 쉽게 말하면 주택구입가격의 거의 100% 까지, 자기의 경상수입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금을 융자해 주어 발생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구입한 주택을 금방 팔아 융자 받은 액수를 갚고도 돈이 남을 수 있었으나 이것이 전 주택시장에 팽배하면서 부동산 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누적되는 연체가 전 금융권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급기야는 세계적 불황을 야기한 것이다.

부동산법체계의 지역적 차이

미국의 주법체계는, 제퍼슨 대통령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들인 플로리다주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르는 남부 8개주는 대륙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들은 영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남부 8개주를 제외한 주에서의 부동산 매매에 관해서 알아 본다.

목표 부동산의 지정

통상 부동산은 주택, 상가, 사무실, 창고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구입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와 투자물건이 소재할 지역이 정해지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찾아다니며 상세한 리서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팔고자 하면 흔히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의뢰(List) 하게 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역협의회를 만들어 의뢰된 물건을 모두 모으고 참여하는 중계업자가 다 볼 수 있게 소위 Multiple listing에 물건을 올리게 된다. Multiple listing에 물건을 올리는 중개업자는 Listing Broker, 구매자를 데려오는 중계업자는 Selling Broker라 부르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Listing Broker가 건물주와 체결한 중개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중계업자 간에 나누게 된다.

Selling broker 는 구매인이 나타나면 제공할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건물과 대지의 면적,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 월세액, 임대기간, 부동산 운영경비 등이다. 이들에게서 얻는 정보로 건물의 수익성을 다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그리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임대계약과 회계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의 상태도 전문조사원을 고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매매계약시 이러한 조사를 하여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매매가 성립될 수도 있는 만큼 투자대상 주의 관행을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주의

Listing broker는 흔히 누가 팔더라도 매도인으로부터 중개료를 받을 수 있는 소위 Exclusive Contract를 체결하고, Selling broker 역시 Buyer가 어느 중개업소에서 사더라도 자기가 소개했던 부동산을 사게 되면 중개료를 받을 수 있는 Exclusive contract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브로커와 Exclusive contract를 체결하게 되면 중개료에 대한 책임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브로커 계약은 흔히 계약 만료일 이후에라도 자기가 소개한 물건을 매매하게 되면 중개료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흔히 있어 브로커 계약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모두 변호사들의 검토를 거쳐 체결한다. 부동산 매매 법체계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서 부동산 매매 경험이 충분히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매도인측 변호사가 계약 초안을 작성하여 매수인측 변호사에게 보내면 매수인측 변호사는 계약을 검토하고 계약 내용을 모두 고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상례이며, 한국식으로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자세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변호사와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거나 원하는 바가 있으면 매수인의 의견을 계약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시에는 대상 건물을 확인하고, 매매금액과 지불 시기를 쓰며 해당 거래에 적합한 조건들을 달게 된다. 흔히 실사 기간이 있고, 은행 용자 액수와 대출승인을 받아오는 기간이 있다. 아울러 건물의 물리적 결함을 조사하는 조건, 환경공해유무를 조사하는 조건, 입주자들에게 임대조건을 확인하게 하는 조건, 명의상 하자 사항을 찾는 조건 등 실로 많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수인 측에서 계약에 서명하고 흔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계좌(Escrow 또는 Trust account라고 함)에 입금하도록 매도인 변호사에게 보낸다. 매도인측 변호사가 계약서에 매도인의 서명을 받아 쌍방이 다 서명한 계약서를 매수인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매도인 변호사는 본인이 받은 10%의 계약금을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명의 이전시 까지 기다린다.

실사 단계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에 명시된 조건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간다. 우선 용자신청이 있겠고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Engineer inspection과 환경법 관련 조사를 하며 임대계약을 검토하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들기 위한 Title report를 주문하게 된다. 매도인 측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임대조건 확인서를 보내게 된다.

Title Insurance 는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는 명의 이전을 받은 후 명의상 하자가 발견되면 Title insurance 회사가 소송

을 막고 소송에서 지면 부동산 값을 배상하는 제도이다. Title insurance 회사는 당연히 후일에 책임 질 사유가 없게 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한다. 건물에 등기된 모든 저당을 찾아내고 매도인에게 걸려 있는 모든 저당과 패소 판결등을 샅샅이 찾아낸다. 건물에 계류중인 모든 위반사항(Violation)과 부동산세 납부 현황을 포함하여 후일에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 조사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보낸다.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몇년된 주차위반 사항까지 모두 찾는다. 이런 조사를 거쳐 명의 이전을 받으면 명의에 대한 문제는 흔치 않고, 명의 이전 관련 사기를 당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Title insurance가 Cover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건물의 zoning (Zoning)은 건물 Title insurance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권원보험과 무관하게 따로 토지용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임차 계약의 검토

기본적으로 임대용 건물의 매매에서는 임차계약의 내용과 임차인들의 재정상태가 투자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이에 대한 실사가 중요하다. 우선 임대계약은 하나 하나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주 임차인의 숫자가 많을 수록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일단 계약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임차인들로부터 계약에 상이함이 없다는 점과 건물주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해 확인서(Estoppel Certificate)를 받는 것이 좋다.

건물 상태의 점검

건물의 보수상태를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점검하고 계약이 허용한다면 긴급한 수리 내용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야 한다. 계약에 건물상태검사 조항이 없을 때는 계약 체결전에 검사를 하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뉴욕시의 주택용 건물은 6가구 이상인 경우 흔히 임대료 규제법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에 정해진 임대료가 해당 정부기관에 등록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공해 유무검사

그 외에도 상용건물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환경공해 (Environmental contamination)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비록 몇가구 정도의 주택이라도 환경문제는 알아보는 것이 좋다.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이미 알려진 공해 지역에 있을 때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근처에 전혀 공해 요인이 없는 경우라도 지하 연료탱크에서 연료가 새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이 흔히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닝 (Zoning)

끝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변형 또는 개발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이 위치한 타운의 조닝법 (Zoning ordinance)이 목표로 하는 변형/개발을 허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조닝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형허가 (Variance)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변형허가는 현지의 조닝 위원회 (Zoning board or Planning board)에 설계도면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여 공청회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명의 이전

계약에 명시된 모든 조건들이 실사를 통해 충족되면 명의이전(Closing)을 하게 된다. 흔히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쌍방의 변호사가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용자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은행을 대변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용자금을 받고, 자기 투자금액을 더해 잔액을 지불하고 권원보험 증서 및 명의 이전 서류 (Deed) 를 받아 해당 등기소에 등기하면 매매 과정이 완료된다. 이때 계약체결 단계에서 매도인 변호사에게 맡겼던 10%의 금액도 매도인에게 전달 된다.

부동산의 처분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은 상기 설명을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된다.

부동산의 임대

우선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는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모든 임대는 동산 부동산 구분 없이 모두 월세 임대뿐이다. 월세는 주거용과 상용으로 대별할 때 관할법에 큰 차이가 있다. 소비자 위주 법체계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주거용 임대는 상용 임대 보다 월등 법적 규제가 많다. 특히 뉴욕시는 전통적인 임대료 규제법이 아직도 남아 있고 법원 역시 임대료를 못내는 입주자에게 관대하여 상당기간 임대료를 못내도 그냥 남아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거용 건물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70, 80년대 한때 뉴욕시의 South Bronx 에는 1900년대 초기에 지은 멸절한 아파트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폐허가 된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건물 투자자들은 월세를 받아 도저히 건물을 유지하고 난방을 제공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건물들을 무더기로 폐허화한 결과였다. 아직도 뉴욕시에서는 건물주들과 임대입주인들이 연간 임대료 인상을 논의할 때 예리한 대립을 하고 있다.

법제도와 법원이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입주인에게 우호적인데 비해, 상용 임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물주에게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그냥 임대한 공간에 오래 남아 있기는 어렵다. 파산선고를 하면 모든 계류중인 소송이나 패소 판결도 일단 동결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밀린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쫓겨나는 것을 지연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렌트를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건물주가 동결을 풀어 달라는 청원(Motion)을 법원에 내면 동결이 이내 풀어지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다 할 것이다.

임대는 임대계약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임차한 공간을 비워도 임차료 부담이 감면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법인 설립이 매우 용이한 만큼 법인으로 임대계약을 하면 법인만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법인 밖으로 책임전가가 차단된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사주의 개인 지급보증을 받는다. 한국의 상장회사는 현지법인이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임차할 때 흔히 개인 지급보증을 하지는 않겠지만,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건물주가 현지법인을 상대로 강제파산 (Involuntary bankruptcy)을 신청하여 Media에 올리는 등 기대 밖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 임차계약은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에 명시된 위약 규정이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위약한 임차인의 법적 부담은 임대 기간 만료일까지의 계약상의 임대료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드는 경비(광고비, 중개료, 수리비, 변호사비 등)를 더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남은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공제한 액수라고 하겠다. 이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임차료가 위약한 임대계약 상의 임대료 보다 많더라도 차액을 위약한 임차인에게 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점차 오르고 임대용 공간의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부득이 위약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좋은 조건의 타협이 가능하다.

제17장 인력관리



제17장 인력관리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애를 먹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서 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혹자는 미국에서의 노동, 고용법에 관한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 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은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미국 노동, 고용법 규정에 관한 것 보다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인력관리부분에서 반드시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미국의 노동법(Labor Law), 고용법(Employment Law)과 한국법의 차이

임의 고용관계 원칙 (Employment-At-Will Doctrine)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이나 판례들이 90년대말 IMF 사태를 겪으면서,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긴급한 경영상 필요나 사정으로 인한 정리 해고도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고, 고용주나 종업원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아무 때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임의 고용관계 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이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는 한국법과 비교하면, 과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마음껏 보장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낙원과도 같은 미국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착오이다. 다음과 같은 각종 예외 사항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임의 고용관계 원칙의 예외 사항들

(1)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다. 대부분 계약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 같이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임의 고용관계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보통 종업원을 고용할 때, 계약서 대신, 고용 제안서 (Job Offer Letter)를 사용한다.

보통 “오피 레터”라 불리는 이 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연봉과 복지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한다면, 서명해서 보내달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덧붙여 “이 오피 레터는 일정 기간 당신에게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 계약서도 아니며, 당신과 회사간에는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명기한다.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오피 레터” 형식을 통해, 임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데서 오는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2) 노조 단체 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 있는가?

만약 노조가 존재하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면, 임의 고용관계 원칙은 없어지고, 단체협약에 따라야 된다.

(3)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에 저촉되는가?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인종 다민족 사회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강력한 각종 차별금지법을 갖추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미국 흑인들의 민권운동으로 1964년 제정된 “타이틀 세븐” (Title VII)이라 보통 불리는 미국 민권법이다. 타이틀 세븐 미국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또, 40세 이상에게 해당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신체상 불구나 질병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하는 법 등이 있다.

사실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각종 차별금

지법들이다. 한국적 정서와 문화로, 또 우리의 후덕한 인정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와는 언어, 문화와 정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인종차별, 성차별 등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한두 번 씩은 겪어본 것이 차별에 관한 클레임이다. 임의 고용관계라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승진시키고, 해고할 때, 혹시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4) 공공 이익과 복지 (Public Policy)에 해가 되는가?

예를 들어, 회사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련 관청에 고발했거나, 또는 상사에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했다면, 아무리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양심의 호루라기(Whistle blowing)를 분 사람을 보호해 주는 내부고발자 보호법들이 대부분 주에 존재하며, 이같은 법과 보호 관례들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5) 구두 또는 암묵적 고용계약 (Verbal or Implied Promise or Contract)이 있는가?

꼭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 역시 임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앞서 말한 “오피 레터”나 다른 인력관계 서류들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고용계약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면,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상 각종 예외사항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임의고용관계 원칙에 따른 고용주의 권한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임금과 근로시간 (Wage and Hour) 중심의 미국 근로기준법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필두로, 미국 근로기준법과 비교하면, 매우 종업원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은, 한마디로 임금과 근로시간 (Wage and Hour)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최저임금, 오버타임,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기록보관, 미성년자 노동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있는, 월차, 연차, 생리휴가 등 각종 휴가 규정, 퇴직금, 보험 등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미국 회사에서는 다만 우수한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가와 보험 등 각종 복리 혜택을 제시할 뿐이지, 법적으로 꼭 이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다. 다만,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법을 만들어,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엄격한 각종 차별금지법

앞에서 언급한대로, 미국은 각종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 한국도 최근 다양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차별금지법 집행 연방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EEOC”)와 유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어,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성희롱, 외국인 근로자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타이틀 세븐 민권법은 연방법이지만,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연방법보다 더욱 엄격하고 범위가 넓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적 정서와 문화로는, 종업원 채용 면접시 결혼여부, 자녀수, 출신지역, 종교 등 많은 것을 물어보며, 되도록 서로에 대해 잘 알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같은 질문을 했다가는, 채용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성차별, 종교 차별 등의 이유로 자신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질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

으로 교체하려 한다면, 이는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고소대상이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서 정리해고나 해고를 하려는 것이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각종 서류로, 업무평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신체적 불구나 질병 (Disabilities)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도 안된다. 에이즈나 HIV 등에 감염된 사람, 비만증세가 있는 사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등,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체적 불구 이상으로 이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넓다.

종업원 채용과 승진, 보수지급, 해고 등 각종 단계에서 이상의 각종 차별금지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에서의 인력관리상 가장 어려운 점이다.

주법(State Law) 중심과 배심원 재판(Jury Trial), 그리고 다양한 판례(Case Law)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며, 따라서 연방법과 주법이 따로 있다. 실제 어떤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재판을 하게 되면, 연방법보다 주법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 고용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연방법과 주법 중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법을 근거로 하기 마련인데, 대부분 주법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다 지켜야 하지만, 이중 종업원에게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주는 주법을 더 신경써 지켜야 한다.

대부분 고용법 관련 소송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는 한국인 고용주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대부분 고용주가 아닌 종업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배심원들이 심정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동정이 가는데다가, 덧붙여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 (또는 한국계) 고용주라고 한다면, 더 피해자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종업원 채용시, 만약 고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 중재 (Arbitration)를 통해 해결한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은 판례 (Case Law)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판례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같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도 달리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고용환경속에서, 새 판례들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법과 달리 고용법과 관련해서는 유난히 판례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력관리와 관련해 갖추어 놓아야 할 서류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

이상 한국법 환경과 비교해 미국의 노동, 고용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보았다. 이제 이를 토대로 고용주가 갖추어 놓아야 할 인력관계 서류와 인력관리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구인광고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해 보자.

구인 광고

구인광고에 “20대 미혼여성만 지원가능”이라고 하면 물론 안된다. 성차별, 연령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구인광고와 면접에서,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조건과 질문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채용시 서류

일단 채용 결정이 되면, 앞서 말한대로 “오퍼 레터” (Offer Letter)를 내 보내,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본은 종업원 인사파일 (Personnel File)에 넣어두어야 한다. 오퍼 레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 표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새 종업원이 맡을 업무와 관련해, 회사 기밀 (발명 특허, 비즈니스 전략, 고객정보 등) 유지 서약 (Invention, Confidentiality)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채용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또 퇴사후 우리 회사 직원이나 고객을 끌어가 지 않겠다는 약속 (Non-Solicitation), 퇴사후 경쟁업종과 업체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 (Non-Competition) 등을 받아 놓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위의 배심원 재판 부분에서 언급한대로, 만약 고용관련 분쟁이 발

생하면, 무조건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약속 (Arbitration Agreement)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이는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미국 이민법은 종업원 채용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보통,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 또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노동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사회보장번호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토대로 확인해, 이같은 확인을 했다는 것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한다. (Immigration Form I-9)

경우에 따라, 경력직을 채용할때, 상대방이 일정 기간 고용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고용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는 오퍼레터가 아닌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앞서 얘기한 각종 비밀유지, 퇴사후 직원과 고객 유치 금지, 경쟁업체 근무 금지,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인사관리 규정 (Employee Handbook)

인력관리와 관련해 구비해 둘 서류중 하나가 인사관리규정 (Employee Handbook)이다. 이에는 출퇴근 시간, 오버타임 규정, 휴가, 병가, 상벌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회사 규정집이라 할 수 있다. 꼭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마련해 두면, 회사 인사관리에 체계가 서고, 통일된 규정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 차별을 받았다는 클레임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

채용과 함께 사본 한 부를 주고, 잘 읽고 이해했다는 서명 (Acknowledgement /Receipt)을 받아, 인사파일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이 규정에는 또, 각종 차별이나 성희롱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강력한 방침 (Non-Harassment Policy)을 명시해 두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차별관련 분쟁시, 회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임금과 근로시간 기록 (Wage and Hour Record)

위에서 많이 언급한 차별관련 이슈와 함께, 한인 고용주가 신경써야 할 또다른 큰 법적 이슈가 있다면, 오버타임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40시간을 초과한 매 한시간마다, 정규적으로 받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한인 고용주들은 연방법과 주법에서 요구하는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기록 (Timekeeping Record)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아, 임금을 줄만큼 주고서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록보관 여부를 먼저 따져, 기록이 없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내야 되고, 또 기록이 없다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종업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어떤 이유에서든,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문제는 더욱 힘들어진다.

확실한 것은 모든 종업원이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매일 기록하게끔 하여, 매일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몇 시간을 일했고, 이에 따라, 정규 임금, 오버타임 등을 매주 세금 공제후 지급했다는 기록을 해 두는 것이다. 회사 규정에서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unpaid lunch time and rest time), 이 시간들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같은 시간 기록은 타임펀치 카드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기록 시스템, 또는 회사에서 준비한 카드에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오버타임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종업원이 오버타임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이 규정은 미국 근로기준법과 규정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꽤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다양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에서 오버타임 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을 (오버타임) 면제직원 (Exempt Employee), 대상이 되는 직원을 비면제 직원 (Non-Exempt Employee)이라 부른다. 면제 직원은 변호사, 회계사, 디자이너 등 전문직, 그리고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고, 부하 직원의 입사와 승진,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부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실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노동국 조사가 나오면, 하루의 구체적인 일과 (Job Duty Test)와 다른 직원들의 증언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 결정된다. 이외에도 컴퓨터를 다루는 직원, 대부분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는 세일즈 직원 등도 오버타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오버타임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벌 등 각종 기록 (Documentation)

종업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항상 기록 (Documentation)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누차 언급한대로, 차별금지법을 무엇보다 신경써야 하는 한인 고용주로서는, 종업원의 채용과 승진, 보수, 징계, 해고 등 결정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업무 성과와 근무 태도에 기초해 내려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지각과 결근이 잦거나, 회사 규정을 위반했거나, 상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마다 지체없이 경고장 (Warning Notice)을 서면으로 주고, 또 정기적인 업무 고과 (Performance Evaluation) 기록을 남겨 놓아, 향후 분쟁 시 회사 입장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문화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보다, 가능하면 말로, 잘해 보자고 하는 식이지만, 미국에서는 그같은 방식이 분쟁 발생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클레임 포기 각서 (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

종업원을 해고시킬 때,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향후 어떠한 종류의 고용 및 인사 관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싶다면, 클레임 포기 각서 (Release)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종업원이 회사 고용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클레임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회사에서 줄 법적 의무가 없는 일정액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많이 통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줄 법적 의무가 없는 일정액을 퇴직금이나 위로금 식으로 주고, 대신 포기 각서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이 포기 각서는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일정한 문구를 넣지 않으면, 각서의 효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18장 미국 비자



제18장 미국 비자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본인 및 종업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신분자격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 또는 창업을 계획하기도 한다. 아무튼 투자, 사업, 학업, 취업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

비자는 크게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와 이민비자(Immigrant Visa),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비이민비자는 B(방문비자), F(학생비자), H(취업비자), L(주재원 비자), I(특파원비자), E1/E-2(무역 또는 사업 비자) 등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정한 범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민비자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영주권’이며, 무한정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한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문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학생비자 등과 같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와서 머물다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장기 비자 취득을 통해 먼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입국비자를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목적이 취득한 비자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비자 유지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체류연장 신청이 거부되거나 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있다. 따라서 각 비자 종류마다 취득요건, 체류 가능 기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심사 때에도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신분상의 변동이 생기면 비자 유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시기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자에는 본 장 마지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류 목적에 따른 다양한 종류가 있다. 비자별 취득요건, 체류 가능기간, 연장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체류목적과 기간에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비이민

비자 중에서는 방문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투자비자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민비자 중에서는 취업이민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방문비자

방문비자는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단기간 방문하기 위한 비자이다. 방문비자로는 사업상 출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B-1 (Nonimmigrant Business Visa, 상용비자) 비자와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는 B-2 (Tourist Visa 관광비자) 비자가 있으며 입국 심사시 두가지 부류로 나뉘지만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때는 이를 따로 분류하여 발급하지 않고 같이 통합하여 B-1/B-2비자로 입국 사증을 발급한다. 미국에서 사업체 설립이 완료된 후, 회사에서 본인 또는 종업원의 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회사의 후원을 통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사업체를 설립하는 단계에는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 시작 단계에는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정보 또는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물색 및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입국 공항에서 미국 방문목적을 심사하는 이민관(“CBP”)이 입국 목적을 판단할때 사업상의 목적이면 B-1신분으로 체류기간허가서 (I-94)를 발급하며 관광이나 단순 방문목적으로 판단하면 B-2신분으로 체류허가를 부여 하게 된다.

B-1 비자

B-1 비자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상의 행위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 협상, 판매나 투자의 유치, 투자 또는 구매에 대한 논의, 투자 또는 구매의 집행, 회의 참석, 종업원 채용을 위한 인터뷰, 조사 및 연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B-1 비자로는 외국인 직원의 신분으로 출장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지만 미국회사의 사업자나 종업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1비자 신분으로는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만 미국에서 사업, 취업, 또는 보수를 받는 등의 영리행위가 허용되며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다.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심사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체류 신분을 허가받는다. 만약 그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 출장 사유가 뚜렷하고, 그 사유가 이민법 규정상 허용 될 수 있는 경우 체류 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한다. 또한 최근 국무성의 규정 완화로 인하여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준정부단체의 파견 공무원 경우)에는 1년까지도 체류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다. B-1 비자의 이점은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와는 달리 입국시 허가받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체류기간 이후 이민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 하였으나 이후 변경된 상황으로 인해 보다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합당한 사유를 뒷받침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종류의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B-1/B-2 비자는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게 되는데, 방문의 목적상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어지는 무비자 입국 및 90일 체류로서는 본인의 현재 방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무비자 혜택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이 추후 미국에서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님을 비자 심사 인터뷰시 신빙성있게 입증할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들(회사의 투자계획서, 미국 현지와 접촉하면서 주고 받은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 또는 사업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단기간 체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무비자가 허용하는 90일의 기간 내에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B-1 비자를 발급 받는데 도움이 된다.

B-1 입국 사증 (비자) 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이민국의 입국심사관이 I-94라는 체류기간허가서에 체류기간을 찍어 주는데, 입국 사증의 유효함이 입국심사 통과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입국심사관에게 입국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시할수 없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부,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제한적인 단기체류 허가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B-2 비자

B-2 비자(Tourist Visa, 관광비자)는 외국인이 여행 또는 다른 개인적인 단순 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발급받는 비자이다. B-2 비자 역시 B-1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한 무비자 입국에 비해 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씩 필요한 사유를 인터뷰시 충분히 설명 할수 있어야 B-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B-1/B-2 비자는 단순 방문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므로 여행 종료 이후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지·직업·소득이 있다는 증명, 왕복 비행기표, 여행일정 등)을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종전에는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2008년 11월 17일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사업, 관광들을 위한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에 한하여는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먼저 한국에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ESTA)에 접속하여 여행허가를 받으면 된다.

무비자로 방문하면 어떤 사유로도 비자연장이나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업인수 및 합병, 제품설치, After Service, 장기 교육 등 미국 방문 목적상 90일 이상의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무비자 입국보다는 B-1 비자 또는 B-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E-2 비자(투자자 비자) 신청에 앞서 사업체 물색이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흔히 90일 이상의 체류기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B-1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여행자들의 경우 ESTA에서 거부를 당할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B-1 비자, B-2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만기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과거 비자가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입국이 거부된 적이 경우,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ESTA에서 무비자 여행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자 신청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방문비자 거부사유

단순 방문비자(B1/B2)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비자 담당 영사의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 특히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부터 여행허가가 거부되어 차선적 선택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ESTA 거부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이 이민법상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비자가 발급된다. 한편 무비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방문비자 심사기준이 더 까다롭고 어려워 졌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데 왜 방문비자(B-1/B-2)가 따로 필요한지를 신빙성 있게 입증해야 하는 추가 조건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별한 목적 없이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이후에 장기체류 또는 신분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방문비자를 거부할 수 있다.

비자 거부 사유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규는 이민법 §212(a) 조항과 §214(b) 조항이다. 이민법 §212(a) 조항에 해당되는 비자거부 사유로는 이민 법규에 명시된 특정 범죄(미국 또는 타국 관련 규정에 의한 마약 관련 사범 또는 도덕성 범죄자)의 유죄 판결기록 또는 특정 법규 위반(질병을 숨긴 자, 문서 위조 또는 허위 진술자, 비이민비자로서 영구적인 입국을 시도한 자 등)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과거에 체포된 기록, 또는 과거에 받은 유죄판결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대로 비자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았음이 발각될 경우 영구적인 비자거부 사유로 간주 될 수 있다. 이민법 §212(a) 조항에 근거한 비자거부 사유는 거의 대부분 영구적인 결격사유가 되는데, 이 결격사유들에 해당하는 자들은 입국금지에 대한 면제허가(Waiver of Inadmissibility)를 이민국에 따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민법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거부 사유는 비자 신청인이 생활기반, 사회활동, 가족, 직업, 경제여건 등으로 보아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 이후 본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즉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일단 입국한 이후 장기 또는 영구 체류 등으로 신분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거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 비자거부 사유를 반증하는 근거들, 즉 본인에게는 현재 이민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일정기간 방문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이민법 214(b)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한번 거부된 사람이 방문비자(B-1/B-2) 또는 학생비자(F/M/J)를 재신청할 경우, 새롭게 바뀐 현재의 상황과 여건들로 인해 과거 §214(b) 조항에 의해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제공했었던 모든 부정적 상황들이 충분히 해소되었음을 증명해야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의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입국사증)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비자가 허용하는 여행목적과 실제 여행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입국거절 또는 강제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소지한 비자의 발급 요건을 잘 숙지하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모든 질문에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비자연장을 할 때 또는 해외여행을 할 때 본인이 실질적 상황이 이민법 규정상 정해진 비자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F) 소유자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거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가지고 체류해서는 안 되므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추후 신분 변경시 이 점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으로부터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 여행을 할 때는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atrol)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직 취업비자

미국에서 급료를 받고 근로행위를 하거나 사업활동을 하려면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으로부터 ‘취업비자 청원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이민국의 허가 없이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만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비자의 경우 신청회사에 취업하는 것만 허가하는 것이므로 신청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회사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 규정상 허용되는 체류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신청하거나, 취업비자 청원서(I-129 Petition)를 새 회사의 후원하에 다시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미국을 출국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취업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취업비자에는 크게 전문직 취업비자(H-1B, H-1C, H-2A, H-2B, H-3), 주재원 비자(L-1A, L-1B), 투자비자(E-1, E-2), 종교인 비자(R-1), 특출인 비자(O-1, O-2, P-1, P-2, P-3)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문직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그리고 투자비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내 회사의 전문직에 고용되는 경우 흔히 사용되는 비자이다. 미국 내에서 인력수급 상 외국인의 고용을 쉽게 허용하는 일정 전문 직종 종사자 또는 취업자들에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비자이다. 단순 방문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만나 H비자에 적합한 전문직 포지션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취업비자를 수속할 수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에는 H-1B, H-1C, H-2A, H-2B, H-3 비자 등이 있다.

H-1B 비자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공에 관련된 전문직에 취업하는 경우 사용하는 비자가 H-1B 비자이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에는 고용주에 대한 요건, 신청인에 대한 요건, 직종 또는 고용조건에 대한 요건 등이 있는데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1B 비자 청원서는 신청인이 아닌 고용주(회사)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주는 학사학위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업종, 그리고 신청인의 전공분야 또는 전문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H-1B 비자 신청인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4년제 학위 이상에 준하는 사회경력 소유자로서 자신의 전공 또는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이민국이 인정하는 4년제 대학 졸업에 인준하는 사회경력이란 해당 분야의 경력 3년을 대학 교육 1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12년 이상의 해당 분야내 전문경력이 있으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약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전공 분야와 연관되지 않은 직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6년 이상의 해당 분야내 경험과 더불어, 이민국이 인가한 교육과정 심사기관(Educational Equivalency Evaluation)을 통해 동등 학위 인증절차를 거치면 전공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다.

또한 고용주가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직책의 성격이 대학 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 조건을 필수로 하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의 일종이어야 하며, 직책에 부여될 업무의 내용이 신청인의 전공분야 또는 전문분야와 연관된 것이어야 하며, 급여를 포함한 기타 고용조건이 미국 노동청에서 해당 직종에 대하여 책정한 근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기업이 학부나 대학원 졸업자 중 특정한 전공분야(금융 분석가,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등)의 학위를 수료한 외국 유학생들을 미국인과 동등하게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하는 경우 취업자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H-1B 비자 발급이 비교적 쉽게 된다. 반면 외국 유학생이 처음 직장을 구할 때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위 또는 고용조건이 이민법 또는 노동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신청인이 전공한 분야와 취업하고자 분야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직책이 전문직이 아닌 단순히 초보적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일 경우, 또는 급료가 동종의 전문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자가 기각될 수 있다.

체류 신분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경우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의 근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자 신청자가 받을 급료가 노동청 통계자료에 의한 신청 지역 내 동일 직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이 받는 보편적 급여(Prevailing Wage) 수준 이상이어야만 H-1B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비자발급 이후에도 이 보편적 고용조건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국 또는 노동청 조사요원의 회사 방문조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H-1B 비자를 후원하는 소규모 한인 업체들 중 이민법 또는 노동법 상의 H-1B 비자 급여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고용주들은 적발시 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사례

H-1B 취업자 고용주의 H-1B 노동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이민법과 노동법의 조건에 맞지 않게 취업비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이민국과 노동청은 조사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H-1B 고용인에게 지불하고자 하는 시간당 급료가 노동청이 정해놓는 급료 기준보다 낮은 경우, 흔히 급료를 올리는 대신 H-1B 비자 신청서상 근무 시간은 Part Time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Full Time 근무를 시키는 경우를 본다. 이와같은 편법이 발각될 경우 고용주에게 건당 최고 \$35,000까지 과태료(Civil Monetary Penalty)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발각시 노동청 책정 급료보다 적게 지불한 급료(Back Pay)를 소급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비자 후원을 할 수 없게 한다. 실제로 최근에 Michigan 주에서 전체 직원의 15% 이상을 H-1B 직원으로 충당하던 한 고용주(H-1B Dependent Employer, 즉 H-1B 인력 의존 고용주라고 함)가 H-1B 고용인들의 급료를 평균적 급료보다 적게 지불한 사실이 적발되어 \$2,250,000의 Back Pay와 \$400,000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H-1B 비자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이다. 6년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취업한 기간, 즉 H-1B 취업자로서 미국 내에서 실질적

으로 거주하며 근무한 날짜만 계산한다. 따라서 6년의 기간 중 해외 여행을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Act of 2000 (AC 21) §106 조항에 의하여, 만약 H-1B 취업자가 6년 만기가 되기 1년 이전에 취업이민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또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때까지) H-1B 비자 신분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AC21 §104(c) 조항에 의하여 취업이민 신청을 한 지 365일이 넘었고, 이민비자청원서(I-140 Immigrant Visa Petition)가 이미 승인 되었지만 이민 비자 쿼터(Quota)상의 적체로 인해 영주권 수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비자 쿼터 해소 시점까지 H-1B 비자를 3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 자녀는 동반가족 비자(H-4)를 받을 수 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학생비자 없이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주의 H-1B 취업자가 감원이 되는 경우

H-1B 취업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H-1B 비자는 법적으로 출국 준비를 허용하는 Grace Period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H-1B 취업자가 감원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미국생활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으로부터 배려를 받아 퇴사 이후에도 마치 근무를 하는 것처럼 세금보고를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취업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민국 또는 노동청의 조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H-1B 취업자가 감원 이후에 미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신속하게 방문 비자로 비자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경신청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감원된 후 즉시 새 직장을 구하여 새 고용주를 통한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된 경우 새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부터 심사를 위해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는 기간동안 H-1B 비자 전환(Transfer)기간으로 인정되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원 이후에 새로 취업하여 다시 H-1B를 접수하기까지 공백기간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을 출국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신청한 H-1B 비자 청원서의 승인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승인 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H-1B 비자신청 수속을 거쳐 새로 받은 H-1B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1C/H-2A/H-2B/H-3 비자

H-1C 비자는 외국인 간호사가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서 미국 노동부가 인정하는 간호사 부족 지역에서만 후원할 수 있는 비자이다. 신청인은 외국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외국 간호사에 대한 미국 국가시험인 NCLEX-RN을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미국 4년제 간호대학 출신이 아닌 경우는 CGFNS(간호학과 영어회화능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H-1C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병원 규모로서 간호사 부족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병원은 미국 전역에서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H-2A 비자는 농장에서 또는 농업분야에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단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울 때, 농장주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고용주가 신청하여 계절적 또는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농업근로자에게 발급하는 단기 취업비자이다.

H-2B 비자는 농업 이외의 일반 업체의 고용주들이 일시적으로 단기 취업 인력을 미국 근로시장에서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후원할 수 있는 단기 취업비자이다. 고용주는 최대 3년까지 비자연장을 할 수 있지만, 1년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노동청을 통하여 규정에 맞게 구인 광고를 내어도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H-2A 비자 및 H-2B 비자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H-3 비자는 미국에서 산업연수 및 훈련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단기 취업 비자이다. 연간 3,000명의 인원제한이 있다. 연수생은 필히 연수 이후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이후에만 미국에서 다시 취업이나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연수 업종이나 분야에는 제한이 없지만 Training Program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취업이 주목적이라는 이유로 H-3 비자가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연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주재원 비자

L-1 비자(일명 주재원 비자)는 외국 회사가 미국의 계열 회사에 간부직 또는 전문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처음에 미국에 투자하여 회사설립을 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어쩔 수 없이 단기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며 필요 업무를 보게 되나,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L-1 후원을 통해 미국에 장기적으로 주재하며 현지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L-1 비자에는 L-1A 비자와 L-1B 비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L-1A 비자

L-1A 비자는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서 간부직으로 근무할 사람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며 체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자이다. L-1A 비자 신청인은 최근 3년 사이에 1년 이상 L-1 후원사의 본사 또는 계열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간부직(Executive and Manager)으로 근무할 자이어야 한다. 간부직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종업원을 지휘하는 직위를 말한다.

L-1A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은 외국회사의 미국 내 지사, 현지법인, 계열회사 등으로서 미국과 1개국 이상의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사업을 영위한다는 의미는 회사 조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L-1A 비자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미국에 새로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 보통 1년의 체류기간을 승인해 주며, 그 후부터 2년씩 세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설립한지 1년 이상이 되는 기존 업체들의 경우 보통 처음에 3년의 체류기간을 승인해 주며 이후 2년씩 두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L-1A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일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 받으면 직장에 대한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L-1A 비자 수속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소속 회사가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 (I-129 Petition)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I-797 Notice of Approval), 이 승인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여 L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L-1을 후원하는 각 직원의 케이스마다 매번 별도로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하여 회사와 신청인 자격요건을 모두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 한번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받고 나면, 이후 발생하는 당해기업 직원들의 L-1 케이스에 대하여는 일일이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미 승인된 청원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Blanket L Petition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Blanket L Petition 승인받은 기업의 신청인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여 신청인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만 통과하면 L 비자가 발급된다.

L-1B 비자

L-1B 비자는 간부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지닌 전문 직원이 미국 지사, 현지법인, 계열회사 등에서 장기적으로 상근하며 현지의 사업 영위에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비자이다. L-1B 비자 신청인은 최근 3년 사이에 1년 이상 계열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근무하는 분야에 대한 넓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이라 함은 당해 회사의 제품, 서비스, 장비, 기술, 경영, 국제무역, 조직 내의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를 말한다. 업계 내의 기준으로 볼 때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야 하고, 단순히 숙련되거나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L-1B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 비자 수속절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체류신분은 L-1A와 동일하다. 다만, L-1B 비자 소지자는 최대 5년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L-1B 비자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3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미국에 새로 사업체를 설립한 신규 회사의 경우 처음에 보통 1년의 체류기간만을 승인해 주며, 그 다음부터 체류기간 연장시 마다 2년씩 두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1년이

넘는 기존 회사의 경우 보통 처음에 3년의 체류기간을 승인해 주고 이후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주의 2012년 3월 15일 부로 발효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의 양국 추가 협상결과에 따라 L-1 비자의 유효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는 보도관련

이 보도는 양국의 통상 장관이 약속한 합의 의사록을 준수하여 미국 무부 규정에도 개정 공고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영사관에서 발급하는 L “비자”의 유효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데 대한 합의인 반면, L 비자 신분의 경우는 “비자”와는 별도로, 미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취업비자 청원서 (I-129 Petition)를 접수하여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신분”의 연장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이번 협정은 “L비자 체류 자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합의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L비자의 경우 입국사증을 의미하는 비자의 기간이 5년간 유효한, 소위 “5년 짜리 비자”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유효 기간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닌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L 취업비자 청원서 (I-129 L Petition)의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에 미국무성이 추가 합의한 L 비자 연장 조항과는 무관하게 L비자 소지자는 적절한 시기에 미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즉, FTA 추가협상 이전의 기준에 의해 신규 지사의 경우 1년, 설립한 지 1년이 넘은 지사의 경우 3년씩 주어지던 최초의 L 체류 신분 유효기간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L 비자상에 찍힌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L 취업비자 승인서에 명시된 신분 유효기간 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연장 청원서 (I-129 Petition to Extend L)를 다시 승인 받아야만 합법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비자”와 “체류 기간”의 차이점:

이민법상 실제로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비자”와 “체류기간”이라는 두 전문용어가 일상적으로 “체류비자”라는 모호한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체류기간”간의 차이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상으로 이 두 단어는 그 의미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이른 혼돈하는 경우 상당한 착오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 비자란 미국 밖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입국 사증으로, 영사와의 면접 심사 등 필요한 비자 신청 절차를 통과하면 신청자의 여권에 찍어주는 스탬프를 일컫는다. 비자는 외국인이 해외 여행 이후 미국에 다시 입국을 허가 받는데 필요한 입국 사증이며 비자 발급의 최종 관할권은 미 국무성에 있다.

한편,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이후, 합법적인 신분 하에 체류하도록 허가된 기간을 “체류 기간”이라고 한다. 이 체류 기간은 미 이민국에서 정해주며,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비자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I-94증서에 명시하는 체류 신분 유효 기간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한 신규 지상사 발령자가 5년간 유효한 L 비자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L 신분을 이민국에 청원하는 단계(I-129 Petition)에서 단지 1년간만 유효한 체류 기간을 승인받은 경우, 입국시 I-94카드에 최대 1년까지만 체류기간을 찍어주게 된다. 이 1년의 체류 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이전에 미 이민국에 L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I-94 기간을 연장받지 않으면 아무리 L 비자상의 유효기간은 4년이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변할수 있다. 또는 초기 1년의 L 체류기간동안 당해 L 회사의 사업 실적이 부실하거나 연장사유가 합당치 않다고 판정되어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무성에서 발급한 L 비자상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합법적 L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Blanket L Petition

많은 수의 주재원을 후원하는 대기업의 경우 L-1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회사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와 신청인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일일이 받게 되면 서류 준비와 비자 수속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 이민국에서 한번 회사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발생하는 직원들의 L비자 신청건에 대해서는 회사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이, 신청인 자

격요건에 대한 심사만을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Blanket L Petition 제도라 한다.

Blanket L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은 (a)1년 이상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b)다국적 기업으로서 미국과 외국을 합쳐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지사나 계열회사가 있으며, (c)미국 내의 연간 매출액이 \$25,000,000 이상이거나, 미국 내에 고용하는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지난 1년간 10명 이상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회사이어야 한다.

Blanket L Petition에 대한 승인을 받은 회사는 모든 L비자 신청건마다 개별적으로 이민국에 취업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Form I-129S(Nonimmigrant Petition Based on Blanket L Petition)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해외의 신청인에게 보내면, 동 신청인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후 신청인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만 받고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주의 **신규 회사가 L-1 비자 신청 시 고려할 사항**

L-1 비자는 한국회사가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간부 또는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는 비자이다. L-1 비자의 최소한의 기준은 회사 설립을 하고, 법인의 납세번호(TIN)를 부여 받고, 회사운영을 위하여 미국에서 사무실 임차를 하는 것이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먼저 1년간 유효한 신규 L-1 비자를 취득하여 간부 또는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사업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L-1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1년이 지난 L-1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 어느 정도의 사업실적과 현지직원 채용실적이 없으면 주재원 비자 신청이 기각되어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까지 방문비자로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L-1 비자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 L-1A 비자와 L-1B 비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크게 강화한 이후 신청회사가 한국 대기업의 지사라 하더라도 비자가 거부되

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자신청 준비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자 신청자의 직무내용이나 회사의 신청 사유 등은 다양한 평가요소에 의해 심사하므로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L-1 비자를 신청해 본 경험이 없는 회사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하여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투자비자

미국과 무역 및 운항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a)미국을 주요 대상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기 위하여, 또는 (b)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약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비자가 투자비자이며, E-1 비자(Treaty Traders Visa)와 E-2 비자(Treaty Investors Visa)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자가 과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소재의 회사에 한국 국적을 가진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투자비자의 경우 무역 또는 투자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이민국에 비자 청원서(I-129 Petition)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직접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여 E-1 비자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1 비자

E-1 비자(Treaty Traders Visa)는 미국에서 무역을 하는 외국인 회사내의 무역을 관리할 외국인 간부, 또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유한 외국인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E-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국적을 가진 회사라 함은 미국에 있는 회사(지사 또는 현지법인) 지분의 50% 또는 그 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의 국적을 판단할 때 영주권자는 한국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회사지분의 40%를 미국 시민권자가, 30%를 영주권자(한인)가, 나

머지 30%를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인 지분이 50%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국적을 가진 회사가 아니다.

둘째, E-1 비자 신청자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21살 미만의 자녀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 신청자는 외국인 회사에서 무역을 관리하는 간부 또는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소유한 직원이어야 한다. 여기서 간부라 함은 회사를 경영, 감독,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소유한 직원이라 함은 특수 지식의 소유자, 숙련된 기술자 또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직원을 말한다.

셋째, 미국에 있는 회사는 상당한 무역(Substantial Trade)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역(Trade)이라 함은 물품의 매매, 교환뿐만 아니라 광고, 디자인, 법률자문, 관광업, 금융, 보험, 통신, IT, 회계 등과 같은 서비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포함한다. 상당한 무역(Substantial Trade)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역량이 많아야 하고, 무역거래 횟수가 잦아야 하며,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무역이 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미국에 있는 회사의 무역량 중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가 지사(Branch)인 경우 한국 본사의 총무역량 중 50% 이상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직수출이나 직수입이어야 하며, 미국에 설립한 회사가 현지법인(Subsidiary)인 경우 미국 현지법인의 총무역량 중 한국과의 무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E-1 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취업비자와는 달리 특별한 학력요건 또는 근무기간 요건이 없다. 비자 신청인이 투자자 본인인 경우 직장 경력, 학력, 전공 등을 기준으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인이 직원인 경우 직원의 직장 경력, 학력, 전공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간부급으로 발급받는 E-1 비자는 L 또는 H 비자와는 달리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간부로 E-1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고용허가(Work

Permit)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스폰서(Sponsor) 자격을 가진 고용주가 있으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신청자를 합법적으로 동반하여 미국에서 체류하며 취학을 할 수 있다. 직원의 경우 E-1 비자를 무한정 연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회사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E-1 비자를 발급받은 직원의 경우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을 지나 오랫동안 미국에 연장체류하기 어렵다.

E-1 비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미국에 있다면 신분만 E-1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다. E-1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L-1 비자로 체류하다가 최장 체류기간(L-1A 비자 7년, L-1B 비자 5년)을 넘기게 되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 때, 조건이 맞으면, E-1 비자로 전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 투자비자(E-1, E-2)와 주재원 비자(L-1A, L-1B)의 차이점

투자비자 신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소유하여야 하나, L 비자처럼 비자 신청에 앞서 신청인이 당해 본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비자의 경우 꼭 자사 근무자가 아닌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 또는 회사 외부의 인력을 채용하여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주재원 비자의 경우 신청인이 한국국적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당해 회사의 한국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력의 자이어야 한다.

체류기간에 있어서 투자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회사 2년, 기존회사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최장 체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신규회사 1년, 기존회사 3년의 체류기간이 최초로 부여되고, 최장 체류기간(L-1A 비자 7년, L-1B 비자 5년)이 정해져 있다.

투자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가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I-129 Petition)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인이 직접 E비자신청서를 제출한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회사가 미국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하여 회사와 직책,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을 승인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신청인이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비자의 경우 이민국을 통한 대부분의 심사를 이미 거친 주재원 비자에 비해 대사관 비자인터뷰가 더 까다로울 수 있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도 더 높다.

E-2 비자

E-2 비자(Treaty Investors Visa)란 미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함으로서 받는 비자이다. 한국은 미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국가이므로 한국인이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미국의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인(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b)투자액수가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적인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c)투자액수가 같은 지역의 유사한 업종 기준에서 볼 때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해당되어야 한다. (d)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투자(Active Investment)를 해야 한다. 즉 투자금이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irrevocably committed). (e)투자 형태가 수동적 투자(Passive Investment) 또는 투기적 투자(Speculative Investment)가 아니어야 한다. (f)합법적인 출처((Lawful Source)의 투자자금임을 입증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인 경우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a)미국의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인(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b)신청기업이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완료했거나(funds must be committed) 또는 투자하는 과정(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에 있어야 한다. (c) 투자액수가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적인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d)미국의 사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E-2 비자 신청인의 자격요건, 체류 가능기간, 신청절차 등은 E-1 비자와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E-2 비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의문은 투자 액수에

대한 것인데, 법적으로 최소 투자액과 같은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민 관련 규정에는,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투자액은 다만 상당한 금액(Substantial Amount)이어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한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투자는 또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Funds at Risk)이어야 한다. 즉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액수가 상당한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과 시장등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금액 중 실제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투자금액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한 금액인지 등을 판별하게 된다.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한 투자인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단지 투자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를 충분히 초과하는 정도인지, 즉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고려한다.

E-2 관련 규정상 투자자금이 반드시 미국 밖에서 와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한국에 소재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미국에서 빌린 자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자금을 마련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에 소재한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만일 자산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국에서 자금을 빌리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보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자금뿐만 아니라 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가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특허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가 확정되어야 하며, 특허가 심사 중인 경우에는 투자로 보기 힘들다. 또한 특허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계약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투자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입증하라는 의미는 불법행위로 번 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증여받은 자금도 합법적인 자금으로 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증빙과 부모가 송금하는 자금이 불법으로 번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예를 들어 부모가 부동산을 판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입증하면 된다).



참고

비자의 종류

| 비자종류 | 용도 |
|-------|--|
| A1 |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A2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A3 | A1과 A2 비자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B1 | 단기 상용 방문 |
| B2 | 단기 관광 |
| B1/B2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 C1 | 미국 경유 |
| C2 | 미국 내에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
| C3 |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
| C1/D | 선원, 승무원 |
| E1 | 상사 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E2 |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E-3 | 호주국민에만 해당하는 자유무역 협정 비자 |
| F1 | 정규교육 혹은 언어 연수를 위한 유학생 |
| F2 |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G1 | 미국 내에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 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G2 | 미국 내에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을 가는 정부 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G3 | 미국 내에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G4 |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G5 |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비자종류 | 용도 |
|----------|---|
| H1B |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가 전공분야와 연관되는 전문직에 취업할 경우의 취업비자 |
| H1C | 정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 간호사 |
| H2A |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
| H2B |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근로 취업자(비농업 근로자) |
| H3 | 단기 산업 연수생 |
| H4 |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I |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J1 | 교환 방문객, 문화교류 방문자 |
| J2 |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L1A/L-1B | 동일 회사 내에서 미국 지사 근무자(L-1A : 간부직, L-1B : 전문 직원) |
| L2 |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M1 | 직업교육 유학 |
| M2 |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O1 |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 소유자 |
| O2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 O3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P1 | 경기에 참여하는 특출한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유명 연예인 |
| P2 |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 P3 | 독특한 전통 문화행사 또는 프로그램에서 공연 또는 참석할 예술인 또는 연예인 |
| P4 |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Q1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 R1 | 미국 내에서 종교활동 종사자 |
| R2 |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비자종류 | 용도 |
|------|--|
| S | 형사 범죄 증인 또는 강력 범죄 정보원 |
| T | 인신매매 피해자 |
| U | 가정폭력 또는 범죄 피해자 |
| V | 영주권자 배우자나 미혼 자녀로서 2000년 12월 21일 이전 영주권 신청이후 장기 대기자 |

영주권

영주권(Green Card)은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이다. 한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문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학생비자 등과 같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와서 머물다가 요건을 갖춘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미국에 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자녀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며 학비 용자 또는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더 많은 옵션들을 누릴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 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지난 몇년간 지속되면서 아무리 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 지원 자체를 받지 않는 직장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므로 미국에 취업하여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취득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a)가족이민, (b)취업이민, (c)종교이민, (d)투자이민 등이 있다. 미국의 현행 이민제도는 초청에 의한 이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요건으로 하며,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초청회사 또는 초청기관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민

미 현행 이민법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이민 초청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가족이민 초청 순위와 그에 따라

연간 할당되는 이민비자의 숫자를 규정하고 있다.

| 가족 관계 | 순위 | 쿼터(연간 이민비자 할당수) 제한 (2012년 기준) |
|--------------------------------|--|---|
|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 | 직계가족 초청 이민: 무순위 (Immediate Relative) | 연간 할당된 이민비자 수: 제한 없음. 영주권 신청 상시 접수 가능 |
|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 가족 초청 이민 1순위 (Family Based 1st Preference) | 연간 할당된 이민비자 수: 23,400 + 가족 4순위에 할당되어 사용되지 않은 잉여분 |
|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 | 가족 초청 이민 2순위 A (FB 2A) | 연간 할당된 이민비자 수: 114,200 + 연간 가족 초청 이민 전체에 할당된 총 비자 숫자에서 226,000개를 뺀 나머지 + 1순위에 할당되어 미활용된 잉여분 |
| 영주권자부모의 21세이상미혼자녀 초청 | 가족 초청 이민 2순위 B (FB2B) | |
| 시민권자 부모의 기혼 자녀 초청 | 가족 초청 이민 3순위 (FB3) | 연간 할당된 이민비자 수: 23,400 + 가족 1 순위와 2 순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잉여분 |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 가족 초청 이민 4순위 (FB4) | 연간 할당된 이민비자 수: 65,000+ 가족 1,2,3 순위에 할당되어 사용되지 않은 잉여분 |

가족 초청 이민 무순위의 경우, 즉 미국 시민이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연간 할당되는 순위별 이민비자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민비자 청원서(I-130 Petition)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수개월내 승인을 받으면, 이 승인을 바탕으로 즉시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무순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잘 알려진대로 연간 접수되는 신청건의 숫자가 연간 할당된 비자의 숫자를 매년 초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초청인이 이민비자 청원서

(I-130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를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로 부여받게 된다. 이 날짜를 “(비자 할당) 우선순위 날짜”라고 하는데, 현재 할당 가능한 비자의 수효가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차례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된다. 이처럼 연간 비자할당제에 의해 매년 누적되는 적체의 정도는 각 초청 순위에 따라 다르며,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은 매달 국무성에서 발표하는 “Visa Bulletin”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Visa Bulletin”의 해당 초청 순위에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가 발표되면, 영주권 신청인은 비로소 주한 미대사관 또는 이민국을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게된다. (국무성 Visa Bulletin 웹사이트 주소: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취업이민

무순위(Immediate Relative)를 제외한 가족 초청 이민은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2년 현황으로 볼때 최소 약 2년에서 최대 10년 이상까지 소요되는, 장기간의 기다림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빠른 영주권 수속을 우선시 하는 경우에는 선호되지 않는 편이다. 좀 더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신청인들이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한 이후에도, 영주권 후원이 가능한 미국내 업체의 지원을 통하여 취업이민을 함께 병행하기도 한다.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가 제시하는 직책의 종류나 취업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신청 순위가 취업이민 1순위 (EB-1), 2순위(EB-2), 또는 3순위 (EB-3) 등으로 나뉜다. 또한 각 순위 별로도 각기 다른 자격요건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좀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이 순위와 카테고리 별로 취업이민을 수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는 물론, 연간 할당되는 이민비자의 숫자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후원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이에 상응하는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사항 등 순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 이민 1순위(Priority Workers)는 미국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취업자 부류로서, 미국이 국익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이민을 허용하고 있는, 따라서 영주권 취득의 수속 기간 또한 가장 빠른 순위이다. 취업이민 1 순위는 신청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1) 예술이나 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ies)을 소유한 사람, 2) 저명한 교수나 연구가로서 대학, 또는 그 외 자격이 되는 연구소에서 정규직 직업을 보유한 사람 또는 3) 다국적 기

업 의 간부나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L-1A 비자 소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 세번째 카테고리 인 하여, 언제부터인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적당한 간부급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편법 사례들이 속출하자 미국회는 급기야 L-1 Visa Reform Act 라는 법률을 만들어 관련 이민법을 강화하였고, 미국에 지사를 세운 뒤 세금보고상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비자 연장이 힘들어지도록 조치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취업이민 2순위는 대학원 이상의 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 학위와 더불어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 취업을 위한 고학력자(EB-2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카테고리과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기술 또는 지식의 보유자들을 위한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로 나뉜다. 또 취업이민 3순위는 해당 직책에 관련되는 2년의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직(Skilled Worker) 카테고리과 경력 또는 학력상의 제한이 없는 비숙련직(Other Worker)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2순위와 3순위에 요구된 “노동청 허가 단계”(PERM: Alien Labor Certification)가 생략되기 때문에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큰 폭으로 절약된다.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해당 직업이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해당되며 따라서 외국인의 취업 초청이 미국 인력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노동국청이 심사하는 단계이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이 노동청 심사 절차를 건너뛰어 곧바로 이민국에 취업이민 비자 청원서(I-140 Petition)를 접수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2순위의 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업이민 수속 절차의 첫단계로서 노동청 허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에 언급한 대로 2순위와 3순위에 요구되는, 흔히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e) 신청은, 2005년 3월 28일부터 그 절차가 전산화되어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경우 약 3-4개월, 감사에 걸리는 경우 약

18-24개월까지 걸리게 된다. 취업이민 절차의 첫단계로서 연방 노동국(U.S. Department of Labor)에 신청하는 PERM 절차는 취업 이민을 스폰서하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 시키기 원하는 직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경력 또는 학력 조건들을 충족하는 노동인력이 미국 내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역 신문등에 게재하는, 구인광고 및 채용공고 등을 거쳐서 입증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또한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진정한 목적은 지역내 해당 직종에 대한 인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단지 영주권을 갈망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민법은 PERM 절차에 드는 광고비, 변호사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이 법적 의무는 2007년 7월 16일 부터 실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이 비용을 따로 요구할 경우 고용법 및 이민법 위반으로서 고용주는 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3-4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한 반향으로, 고용주가 PERM 규정상 요구된 모든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감사에 채택되는 비율 또한 같은 기간 44%의 폭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PERM 절차중 일부인 채용공고를 규정에 맞게 충실히 게재하였는지, 또한 공고에 따른 응시자들을 모두 빠짐없이 연락하여 면접 등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는 당위성이 있는 지를 자세히 판별하는 절차를 감사(PERM Audit)라고 하며, 감사대상은 전산 절차에 의해 무작위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전산 심사상 특이하게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눈에 띄는 경우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청 감사 절차를 성공적으로 거치는 가장 좋은 비결은, 고용주가 PERM 신청 절차에 돌입하기에 앞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민법 규정에 준하는 적절한 채용절차의 이행을 통한 지역내 채용 시도가 이미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불가능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국인 취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직종의 미국 노동력 부족이 충분히 확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규정 절차들에 고용주의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현실을 숙지해야 한다. 고용주가 단

순히 고용인을 “도와준다”라는 식의 막연한 이해만을 가지고 취업이민 초청에 착수할 바에는 아예 취업 이민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고용인과 고용주 서로간에 장기적인 피해를 면하는 길이다. 노동청 감사 결과 고용주가 직원 채용 공고에 지원한 응시자들의 자격여부를 제대로 빠른 시간내에 심사하지 않았거나, 이민 변호사가 대리 처리하였거나, 또는 고용주 또는 변호사가 응시자의 부적격 사유들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건성으로 처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고용주는 취업이민 초청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와는 별개로 연간비자할당제로 인한 순위별 적체 누적 현황에도 차이가 있다. 자격요건 수준이 낮은 3순위에 비해 비교적 자격요건의 수준이 높은 1순위나 2순위의 경우 연간 할당되는 비자의 수에 비해 사용되는 비자의 수가 적은 편이므로, 적체로 인한 비자 대기 또한 없는 편이다. 반면 자격 요건 면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사람이 충족 가능한 3순위의 경우 이민 비자 신청건수가 연간 할당되는 비자숫자를 매년 초과하고 있고, 초과 건들의 누적에 의한 비자 할당의 적체로 대기 기간이 수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취업이민 절차상의 간소함 여부나 비자 할당 적체 여부의 모든 면에서 취업이민 1, 2 순위와 3 순위 간에는 시간 소요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취업이민 3 순위의 경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면,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e)를 바탕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tition)을 승인받은 후에도 우선순위 날짜에 의한 비자할당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다. 우선순위 날짜는 노동청 허가 신청서가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날짜이며 우선순위 날짜가 돌아오는 현황은 미 국무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 국무성 Visa Bulletin 웹페이지: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따라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미국 내에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3순위 취업이민 신청인들은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가 돌아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 날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이민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 이민

종교 이민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비영리 종교 단체로서 면세혜택 인증을 받은 종교 기관에서 최근 2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자격 종교 종사자를 취업 이민에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자격 종교 종사자란 안수를 받은 목사나 승려 등의 사제들을 비롯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의 종교단체의 취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종교이민은 과거 발생한 많은 허위서류 또는 사실적발 사례들로 인해 현재 이민국에서 가장 엄격하고도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는 부류이다.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미국 영리기업에 \$1,000,000(실업률이 높은 특정 지역의 경우 \$500,000)을 투자하여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이다. 투자이민은 취업 관련 5순위(Employment-Based 5th Preference)로서 EB-5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족초청이나 다른 종류의 취업이민이 자격요건 또는 대기시간 상의 이유로 유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 일정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주권 취득방법이다. 그러나 투자한 사업체가, 최초 주어지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취득 이후 정해진 2년 사이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10개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의 연결이 힘들어 질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투자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소 \$1,000,000 이상을 투자 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한다. (a)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b)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체의 구조조정 결과로 새로운 사업체가 되게 하거나, (c)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자산규모 또는 직원 수를 투자가 있기

전에 비해 40% 이상 증가시키거나, (d) 지난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순자산 가치가 20% 이상 줄어 들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종업원 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네 가지의 일반적 투자이민은 (d)에서 설명한 경영난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명 이상의 새로운 취업을 창출해야만 2년 내에 성공적으로 임시 조건을 해제하고 10년짜리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즉 위 (a)의 경우와 같이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 2년 후 조건 해제 신청 당시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b) 또는 (c)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였거나 기존 사업체의 확장에 투자한 경우, 투자 시점의 고용 숫자를 기준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증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d)와 같이 경영난에 처한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2년 후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과 같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주 3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채용을 한 건의 고용으로 친다. 즉, 각각 주 20시간씩을 근무하는 두 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새롭게 채용할 경우, 이것은 한 건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반 투자이민은 \$1,000,000 이상의 금액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실제로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민국이 인가하는 투자유치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의 지역센터(Regional Center)가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하한선이 \$500,000로 하향 조정되며, 10개 이상의 신규고용 조건도 좀 더 용이한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투자 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직원 외에(direct employment), 투자 업체에 자재, 장비 및 서비스 등을 납품하는 관련 업체들에 의한 고용 창출(indirect employment), 또는 지역내 취업 증가로 인해 증대된 경제 생산 효과 등도 고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역센터(Regional Center)들이 운영하는 모든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제로 성공적인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간접 고용창출은 어디까지나 직접 고용 숫자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일럿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요구된 고용

창출이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임시 조건 해제를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직접 고용의 수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숫자가 합당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



참고 투자비자 (E-2 Visa)와 투자이민(EB-5)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을 혼동한다. 투자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자이다. 반면에 투자이민은 미국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미국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및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이다.

투자비자의 경우 투자액수 또는 고용창출 조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액수가 \$1,000,000(실업률이 높은 특정 지역의 경우 \$500,000) 이상이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의 풀타임(Full Time) 직원을 새로 고용하여야 한다.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종류별로, 또 신청인 자격별로 연간 할당되는 이민비자 쿼터(Quota)가 정해져 있고, 비자의 수에 비해 많은 신청으로 인해 할당에 적체가 있는 영주권 유형은 신청이 접수된 차례대로 비자의 수효가 돌아 가게 되므로, 영주권 취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급적 일찍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주권 심사에서 한번 거부되는 경우 그 이후에 비자 또는 영주권 심사에서 거부이력이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신청 시기 등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영주권 신청 문제는 이민자와 자녀들의 장래 계획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민 관련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9장 미국투자



제19장 미국투자

미국은 약 3억 1천만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며, 1인당 GDP가 약 \$47,000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엄청난 구매력을 갖춘 시장이다. 미국경제는 세계 GDP의 약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소비지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대량 소비시장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인 투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일부 주정부의 경우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미국의 법률,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시간적 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어떤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사전에 알고 대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은 법집행이 엄격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법률과 제도가 복잡 다양하므로 일을 도모할 때 항상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그에 관련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법령은 무엇인지, 외국인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있는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거나, 극단적으로는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법적 제한 또는 추가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거래가 빈번하다면 국제거래와 관련된 쟁점에 자주 부딪치게 된다.

투자절차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 또는 법인(자회사)을 설립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 | | |
|--|--|---|
| <p>①법인 설립준비 투자환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진출지역 및 투자형태·방법 결정</p> | <p>②사업계획 수립 자금, 설비투자, 생산, 판매, 인력 수급 등에 관한 계획 수립</p> | <p>③해외투자 신고 주거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등 제출</p> |
| <p>④법인명 결정 희망하는 법인명을 결정하여 법인 소재지 주정부에 등록</p> | <p>⑤법인 설립신고 법인 형태, 창립인, 이사진, 주식 수 등 법인 기본사항 주정부에 신고</p> | <p>⑥납세번호 신청 IRS에 납세번호 신청, 주정부에 납세번호 등록</p> |
| <p>⑦은행계좌 개설 현지은행에 지사/현지법인 은행계좌 개설</p> | <p>⑧자본금 송금 본사에서 지사/현지법인 계좌로 창업자금 송금</p> | <p>⑨주식발행 현지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주식발행</p> |
| <p>⑩사무실 임차 지사/현지법인 사무실 또는 사업장 임차</p> | <p>⑪영업 개시 Business License 취득, 인력채용 및 영업 개시</p> | <p>⑫결과 신고 주거래은행에 법인 설립결과 또는 사업실적 보고</p> |

위의 투자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설립준비단계이다. 설립준비단계에서 투자환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형태·방법에 대한 결정이 제대로 되어야 미국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

투자형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그 형태는 일반적으로 지사(연락사무소, 지점)와 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회사의 경우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다양한 사업조직 형태가 가능하다.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사업조직 형태가 가능하다.



참고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 파트너십 형태가 가능한가?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이 일반화되어 있다. 파트너십 형태로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 회사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이중과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한편, 외국인이 파트너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특례를 두어 파트너십 소득을 파트너에게 귀속시킬 때 파트너십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또는 법인세 최고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먼저 설립한 후에, 동 지주회사에서 파트너십을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형태로 시작하게 되며,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점(Branch)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하게 된다. 연락사무소, 지점, 자회사에 대한 투자절차, 적용 법률, 과세 방법은 약간씩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출할 지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 투자규모, 사업장 위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

(1) 개념 및 특성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말 그대로 연락업무, 시장조사, 정보수집, 연구개발 등과 같이 사업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가 국외에서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업무장소이다.

연락사무소는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과 거래활동은 본사에서 하게 된다. 연락사무소는 통상 지사나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하기 위하여, 또는 지사나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설립한다.

사업의 특성상 거래횟수가 적고, 1회 거래규모가 대규모인 사업의 경우 연락사무소에서 시장조사, 정보 분석, 거래선 연락 등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본사에서 의사결정 및 거래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연락사무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락사무소가 미국에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판정될 경우 본사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한국에서의 절차

한국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능한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정부투자기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0,000 이상인 자
-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000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0,000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비영리단체 포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금융기관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해외사무소설치신고서
-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 ▷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있는 경우)
- ▷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추천을 받은 경우)
- ▷ 기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무역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 해외사무소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함

지점

(1) 개념 및 특성

지점(Branch)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는 업무장소로서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Foreign Company)가 지점이다.

지점의 경우 설치 국가에서 세무신고, 회계감사, 회사법상 요구사항이 자회사에 비하여 많지 않고,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지점의 손실을 본사에 합산하여 본사의 이익금과 상계하여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진출 초기에는 통상 지점 형태로 사업을 많이 영위하게 된다.

미국에서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통상 일반 사업조직 설립절차를 따르나, 새로 사업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신고(Filing of Incorporation)는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장이 있는 주에 사업허가신청((Filing of Authorizatio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점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a)미국에서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소득(단, 본사가 한국인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고정사업장관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또는 미국 내의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b)본사에서 지점의 소득을 다시 본사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이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지점이 사업초기에는 편리한 측면도 있으나, 지점의 의무 및 법적 위험이 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지점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도 미국 IRS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지점설치를 위한 한국에서의 절차

한국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해외지점 설치가 가능한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0,000 이상인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금융기관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지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에 열거한 자 이외의 자가 해외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점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외지점설치신고서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있는 경우)
-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추천을 받은 경우)
- ▷해외지점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함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 ▷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은 제외
- ▷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 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換金)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를 이행한 경우는 제외

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이익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 전기이월 결손에 충당
- ▷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 ▷ 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외화예금에 예치

자회사

(1) 개념 및 특성

자회사(Subsidiary)는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각 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회사(Domestic Company)로서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이다.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장벽의 타개, 현지 국가의 생산요소 및 기술정보의 이용, 금융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미국에서 자회사 설립절차는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 사업조직 설립절차 또는 사업인수 절차를 따르게 된다. 자회사는 미국 국내기업이므로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모회사

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회사이므로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에 합산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동 배당금은 모회사의 소득으로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된다.

(2) 자회사 설치를 위한 한국에서의 절차

한국에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에 따른다.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해외자회사를 소유하는 방법은 (a)외국법령에 의하여 현지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b)이미 설립된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c)기 투자한 현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 사업계획서
- ▷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 납세사실 증명서
- ▷ 합작투자계약서(합작투자 시)
- ▷ 현물투자명세표(현물투자 시)
- ▷ 기타 외국환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서류를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현지법인 설립인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서류, 증권사본 및 개인기업 영위인 경우 사업영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류 포함)
- ▷ 현지법인투자현황표 : 해외직접투자 누계금액이 미화 \$500,000 초과

미화 \$1,000,000 이하인 경우

-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해외직접투자 누계금액이 미화 \$1,000,000 초과인 경우.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시스템에 투자자가 직접 입력하고, 입력서류를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
-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 보고서 : 청산 또는 현지에서 전액 양도한 경우 즉시 청산재무제표,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투자) 후 즉시 (현물출자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원본의 여백에 송금은행의 송금확인 필요)



참고

지점(Branch)과 자회사(Subsidiary)의 차이

지점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외국회사이며,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소득(단, 본사가 한국인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고정사업장관련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있음) 또는 미국 내의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지점 소득은 다시 외국본사의 소득에 합산되어 외국본사 소재지국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데,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본사에 지점 소득을 합산하여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국내회사이며,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자회사 소득은 본사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자회사가 본사에 배당을 지급할 때 동 배당소득이 본사의 소득이 된다.

지점이 유리한가? 자회사가 유리한가? 확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세금, 고객의 신뢰, 금융, 정부의 규제 또는 지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 보면 자회사가 미국 밖에서 소득이 많을 경우 미국에서 높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자회사가 불리할 수 있다. 지점의 경우 본사에 대한 이익송금이 자유로우나, 자회사는 배당으로 이익송금을 해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반면에, 지점의 경우 그 의무 및 법적 위험이 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점의 문제로 인하여 본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미국투자 관련 쟁점

외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 그 자체가 국제거래이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거래 또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외국본사와 미국 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수관계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투자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업종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 목적 또는 통신·에너지·운송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무선통신, 방송, 발전, 국내항공운송, 연안운송, 국방산업 관련 업종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종합무역법 제5021조(Exxon-Florio Amendment)에 근거하여 미국 내의 투자(인수, 합병, 공개매수 포함)가 국가안보 등에 해가 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종은 주정부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되나, 일부 업종은 연방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법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사실상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는 금융, 육상운송, 육류가공, 의약품, 담배, 주류, 소총(小銃) 관련 업종을 들 수 있다.

투자지역

투자지역은 통상 지역별 인구, 소득 수준, 교통, 고객 및 거래처 위치, 인력수급, 한인 상권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당해 주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나 세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현재 한국인의 대미투자는 주로 New York, New Jersey, California, Georgia, Alabama, Texas, Michigan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업종별로는 판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법인 형태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많고, 중소기업 및 개인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주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 무상제공, 세제혜택, 보조금 등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주별 인센티브 내용은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velopment Agencies(NASDA)에서 발간하는 'Directory

of Incentives for Business'를 참조하면 된다. 공식적인 지원 이외에도 주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수의 후보지를 정한 다음 직접 주정부를 접촉하여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정부 세금은 투자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연방정부 세금은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있고, 한미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어 이중과세가 없으나, 주정부 세금은 각종 공제혜택이 적고 이중과세 방지장치가 없어 의외로 세금부담이 높을 수 있다. 투자지역이 정해지면 가상의 과세소득을 전제로 하여 주정부 세금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당해 주에서 사무소나 영업장 운영, 재고관리 시설 운영, 종업원을 통한 고객유치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어느 주에서 설립되었든 법인세(State Income Tax) 또는 영업허가세(Franchise Tax)를 과세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하는 주에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인수 방식

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인수방식을 자산인수로 하느냐, 아니면 주식인수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 지는 인수대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액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세법에서는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매각(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법적인 이유로 주식매각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매수자와 매도자는 합의에 의하여 세무상으로 자산을 매각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IRC §338(h)(10)]. 이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매수시점의 시가로 할 수 있어 나중에 세금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자본금 형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형태로 투자할 것인지,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차입금)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효과가 다르다. 투자자금을 차입금으로 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자회사의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나, 자본금으로 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입금을 통한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이 자국 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과도한 차입금을 통한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금에 대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 기업(한국 본사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미국 자회사)으로서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경우 동 차입금을 자본금의 성격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를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도 달라진다. 이러한 제도를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라고 한다. 미국 세법상 확실적인 기준은 없으나, 손익구조, 부채비율, 차입금 종류, 사용처,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Thin Capital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IRC §385).

(2)Earnings Stripping Rule

미국 회사가 그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해외 특수관계회사로 부터 차입을 하거나, 특수관계회사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을 한 경우, 해당 차입금 이자에 대해 연도별 세무상 비용인정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Earnings Stripping Rule이라고 한다. Earnings Stripping Rule을 적용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IRC §163(j)].

Earnings Stripping Rule은 (a)대상회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해외 소재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하거나 해외 특수관계회사의 보증으로 차입을 하고, (b)3개월 이하 단기부채를 제외하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부채/자본)이 150%를 초과하며, (c)순이자비용(총이자비용 - 총수입이자)이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 즉 기준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미국 회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초과이자(순이자비용이 기준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부분)는 당해 연도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기이후로 이월되어 해당 연도의 이자비용 공제한도(기준 과세소득의 50%까지) 내에서만 공제된다.

(3)이자비용 공제시기(Deferral of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

해외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이자의 경우 발생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4)이자율이 낮은 경우(Low or No Interest Rate Loan)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자금대부에 있어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와의 차이에 대해 증여, 배당, 또는 급여로 간주한다(IRC §7872).

다만, 종업원, 주주, 자유계약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등에게 \$10,000 이하의 소액대출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있어서 이자율이 낮은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다.

(5)지급보증수수료(Guarantee Fee)

미국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 모회사 등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급보증 수수료가 시장 수수료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 한국 본사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미국 국세청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주의 **투자자금의 송금과 국세청 자료통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송금 자료를 전산에 의하여 자동 통보한다. 국세청 자료통보는 정상적인 세원 관리를 위한 것이며,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세청 자료통보를 피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송금하는 경우 오히려 한국과 미국에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하여야 자금출처도 생기고, 나중에 한국으로 재송금할 때도 문제가 없다. 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 자료통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 분 | 국세청 통보기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직접투자를 위한 송금 | | 다음 달 25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할 경우 ◦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 연간 \$1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 연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 체재비 송금 | | 전산망을 통해 자동통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10,000 초과 휴대 출국할 경우 | | 다음 달 10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해외 신용카드 \$10,000(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 외국에서 연간 외국통화 인출 \$10,000 초과자 | | 다음 해 2월20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해외 체재비, 유학경비, 신용카드 사용실적 합계액 \$100,000 초과자 | | 다음 해 3월말 |

* 주: 2012. 4. 30.이후부터 적용

세무회계 기준

미국 세법에서는 세무회계 기준을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개시 첫해에 선택하게 된다. 세무회계 기준을 한번 선택하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IRS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회계 기준을 선택하는 항목으로는 회계방법, 사업연도, 재고자산 평가방법, 감가상각 방법, LLC 또는 S Corporation에서 파트너십 과세방식 선택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세무회계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는 선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현금기준(Cash Basis) 또는 발생기준(Accrual Basis)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재고자산이 있는 업종 및 대기업은 현금기준을 선택할 수 없다.

원천징수

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 한미 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 로열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이다. 조세조약에 규정이 없는 소득은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법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예: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IRC 881(c), 881(e)).

미국에서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 우대세율(우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30% 세율로 원천징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일반적으로 한국 본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미국 자회사)에게 Form W-8BEN(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에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국 자회사는 미국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 동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월결손금

회사의 인수, 합병, 또는 분리가 있는 경우 그 이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월결손금(Net Operation Loss)의 승계 및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와 공제할 수 없는 경우를 비교하면 많은 세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세법에서는 과거 3년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할 당시의 이월결손금 잔액에 대해서 향후 연도별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있다(IRC §382). 공제한도는 초과한 당시 회사의 시가(주식가격 기준으로 산정)에 연방장기이자율(Federal Long-term Rate)을 곱한 금액이다. 동 규정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많은 회사를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인수에 들어간 금액을 금융기관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을 가정하여 그만큼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회사 인수 후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미국은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규정을 두어 외국인이 미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20일 이내에 Form 8288(U.S. Withholding Tax Return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IRC §1445). 총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FIRPTA 규정을 적용한다[IRC §897(c)(2)].

다만, 동 원천징수 규정은 \$300,000 이하 거주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에는 제외된다. 한편, 부동산을 처분한 외국인은 매각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한다. 즉,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Capital Gains)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파트너십 소득

파트너십 소득의 경우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의 소득(Allocable Share of Partnership Income)으로 분배하여 과세하는데, 외국법인이 미국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즉, 해외 자회사를 파트너십 형태로 만든 경우) 위와 같은 과세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IRC §1446에서는 파트너가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당해 파트너십이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 소득(Allocable Share of Partnership Income)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따르는 다른 회사조직(Pass Through Entity)도 동일하다. 원천징수 세율은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파트너십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Form 8804(Annual Return for Partnership Withholding Tax)에 의하여 원천징수 현황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매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환급(Refund)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

Bank Secrecy Act에 의거하여 모든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가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IRS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Form TD F 90-22.1(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의하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대상 납세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이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따라서 한국 법인의 미국 자회사,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도 FBAR 보고의무가 있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

2010년 3월 18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가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합하여 \$5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이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는 보고의무자에 해당된다.

보고대상 자산은 모든 해외 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이며,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주식 또는 출자지분(Interest in a Foreign Entity),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투자계약(Contract Held for Investment) 등을 포함한다.

종전 FBAR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만 보고대상이었으나, 해외 금융자산 보고에 있어서는 보고대상 재산의 범위가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되었다. 개인 납세자는 FBAR와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둘 다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

한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의 FBAR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한국에도 있다.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하여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면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년부터 시행) 신고하는 정보는 성명·주소 등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 보유계좌의 연중 최고잔고 금액 등이다.

여기서 해외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기관이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 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외국환 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도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라 함은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2년 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4%,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7%에 8천만원을 더한 금액,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에 2억 9천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12년 2월 2일 국조법 시행령 개정)

집필 및 편집

| | | |
|---------|-------|-----|
| 뉴욕총영사관 | 세무협력관 | 서진욱 |
| 삼일회계법인 | 회계사 | 정재국 |
| 삼일회계법인 | 회계사 | 이호덕 |
| K P M G | 美 회계사 | 박상환 |
| 뉴욕 | 美 변호사 | 강완모 |
| 뉴욕 | 美 변호사 | 김수지 |
| 뉴욕 | 美 변호사 | 민대기 |
| 뉴욕 | 美 변호사 | 박보용 |

감수

| | | |
|------------------|----------|-------------|
| 김·장법률사무소 | 변호사 | 최선집 |
| 법무법인울촌 | 세무사 | 이경근 |
| E & Y | 美 회계사 | 김혜영 |
| 뉴욕 | 美 회계사 | 한창연 |
| L A | 美 회계사 | 정동완 |
| General Electric | 美 변호사 | Lucy S. Lee |
| 국제세청 | 국제협력담당관실 | |

- * 본 책자는 미국의 창업·세금·법률에 관한 공개된 법령자료를 기초로 민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뉴욕총영사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본 책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유효기간을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책자의 내용 중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비 매 품〉〈Not For Sale〉